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 조사 보고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 1. 30.

주관연구기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연구 책임자 : 송소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공동 연구자 : 조미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김혜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박성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김연옥(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 . 3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조사개요 . . . 9

제2절 조사방법 . . . 9

제3절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 . . 12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인권침해 사례분석 . . . 21

제2절 실태조사보고서(50건) . . . 99

제4장 맺음말

제1절 정책제언 . . . 213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 . . 222

부록

조사항목 . . . 227

보안관찰처분 흐름도 . . . 234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 . 236

보안관찰 신고관련 주요 서식 . . . 270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보안관찰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현황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 죄목에 대한 위법 행위 등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벌집행 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법 제4조 1항)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 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하는 법이다.

보안관찰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법 제14조 1항)함으로써 부과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법 제5조).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아래(법 제17조) 사법경찰관리가 행한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이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종교, 가입단체 등을 신고(법 제18조 신고사항)한 후,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자신이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일시 장소 및 내용,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찰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거주 및 여행 예정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와 회합·통신을 금지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장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재범방지조치(법 제19조)를 할 수 있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벌칙조항(법 제27조)을 두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법 제27조 2항)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출소전, 출소사실, 변동사항 신고 등)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7조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보안관찰제도는 자신의 위법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재범”이라는 행위로 인한 처분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양심(헌법 제19조)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특히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범하고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1항)’과 충돌하며 다른 출소자에 비하여 사회적 신분에 따른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보안관찰대상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여행, 주요 활동상황 신고 등 신고의무로 인해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가 제약됨은 물론이고 교우관계와 재산 내역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프라이버시(헌법 제17조)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렇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안관찰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관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이 침해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제12조, 제17조, 제18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의 해제(갱신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도 처분대상자라는 지위는 영원히 지속되며 따라서 현재 처분을 받지 않고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시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형벌이 수반되는 신고의무를 지는 보안관찰처분은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2. 인권침해 조사 목적 및 필요성

보안관찰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92헌바28결정)는 1997년 11월 27일 “보안관찰처분은 대상자의 내심의 자유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무런 제도장치 없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이들이 법원에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소송 등은 피해당사자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보안관찰제도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면서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이 체포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강제적 조치에 해당해야 할 신고의무가 인신체포를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점 역시 신체의 자유를 가로막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들은 지위가 아직 처분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대상자에 불과한데도,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당하고 있고, 또한 법무부는 그 체포 당한 사유를 문제삼아 줄곧 보안관찰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보안관찰제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며, 여전히 수많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들이 체포 및 기본권 침해 위협 등에서 엄청난 심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건 발생시 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가 적극 대처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의 일회적인 대처로는 보안관찰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안관찰법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연구하여, 법·제도 개선 권고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보안관찰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보안관찰제도에 따른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조사개요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조사개요

제1절 조사개요

1. 조 사 명 :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2. 조사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3. 조사대상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자, 면제자, 처분취소소송자
4. 조사방법 : 피조사자 주도의 심층조사 및 조사항목에 따른 면접조사
5. 조사일정 : 2002년 10월 1일 ~ 2003년 1월 30일
6. 조사기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2절 조사방법

1. 보안관찰 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참여자가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이는 주로 보안관찰법 및 관련 법규와 보안관찰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보안관찰법에 대한 인식공유와 폭넓은 교감을 형성하면서 연구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 결과 총 27조의 전문과 9조의 부칙 및 시행령 등으로 이루어진 보안관찰법의 내용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 후, 기타로 분류하고, 각 부분에서의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의 고지여부, 사법경찰과 검찰의 태도, 보안관찰로 인한 침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기초적 틀을 마련하였다.

2. 기초적 틀에 대한 내용적 보완을 위해 보안관찰법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와 기초적 틀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3. 본 조사 목적 및 내용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 가운데 포커스 그룹을 선정,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는 피조사자 주도의 면접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의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얻어내지 못했던 점, 즉 피보안관찰자가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상 및 보안관찰법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도있게 산출할 수 있었다.

4. 위 문헌연구, 전문가 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당초 작성하였던 기초적 틀을 보완하는 가운데 「피조사자 실태조사서」와 「조사항목」을 작성하였다. 또한 이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조사자 5인을 선정, 심층적인 면접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항목의 구체성을 더했다.

5. 본 조사는 피해자들이 직접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한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사자들은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이미 선정한 피조사자 50인에 대한 사전조사 및 면접 조사시 조사자의 태도 등에 대해 집중 탐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피조사자의 원사건(보안관찰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건개요 및 사건 보고서 등을 검토했다. 이는 피조사자의 원사건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식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에 임하는 조사자의 자세 및 태도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판단 아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안관찰제도를 바라보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민감하게 접근하는 등 조사자로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데 유의점을 두었다.

6. 이러한 준비 끝에 50인에 대해 실제 조사를 시작하였는 바, 위 조사 실태서와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직접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피조사자의 보안관찰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개인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각 경우에 따라 인터뷰의 주안점을 달리하면서 보다 양질의 내용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피

조사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피조사자들 가운데 수명은 보안관찰 처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원사건에 대한 기억을 연상하게 하고, 나아가 당시 수사기관(경찰)의 고문수사 등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어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7. 특히 조사과정에서 조사연구자들은 피조사자들의 기억(증언)에만 의존하는 조사방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실태를 일면에서만 보는 것이기에 보안관찰로 인한 인권침해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를 입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그 자료들에 대해 3급기밀로 취급,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인해, 결국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보안관찰처분 관련 행정서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각 지점의 민원실을 통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방법이므로, 시간상의 제약과 개인의 처지, 조건으로 인해 일부에 대한 자료만을 입수할 수 있었다.)

8. 위와 같이 조사자들은 면접 인터뷰와 함께 피조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각종 보안관찰관련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피조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법은 조사의 정확성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위한 피조사자 1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시간 가량 되었다.

9. 한편 조사자가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조사자간의 정기회의를 통해 인터뷰 내용과 자료를 공유하고 인터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의사항 및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단독 인터뷰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법논리적인 관점과 실제 운영실태, 그리고 법적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1. 피조사자 색인표

고유 번호	나이	원사건 해당법률	신 분	출소년도	첫 처분년도	갱신히수	소송 여부	소송 결과	비고
1	70초반	국보4,7조	피처분자	1998	1999	1회			
2	4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9	2002	첫처분중	소송중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3	60후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86	1987	7회			
4	60중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88	1990	6회			
5	80초반	국보4,5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6	6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88	1989	6회			
7	50초반	국보4조	면제자	1985	1985	6회 갱신 후 면제			
8	50초반	국보4,5조	면제자	1991	1991	3회갱신후 면제			
9	6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88	1990	5회			
10	5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11	30후반	국보4,5,6 조	면제자	1997	1997	1회시 면제			
12	6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13	40중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6	1997	2회			
14	50후반	국보 4,6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소송	패소	
15	40초반	국보6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16	60후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3	1994	4회			
17	70초반	국보4,6조	피처분자	1985	1985	8회			
18	7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19	40후반	국보4,5,6 조	면제자	1996	1999	첫 처분시 면제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20	30중반	국보4,6조	피처분자	1998	1998	1회			

고유 번호	나이	원사건 해당법률	신 분	출소년도	첫 처분년도	갱신횟수	소송 여부	소송 결과	비고
21	70중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0	1991	5회			
22	60후반	국보4,6조	피처분자	1998	1998	2회			
23	40대초	국보 4,6조	처분취소자	1997	1999	1회	소송	승소	
24	60중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8	1998	1회			
25	60중반	국보4,6조	면제자	1995	1995	1회 갱신 후 면제			
26	70초반	국보4,6조	피처분자	1988	1989	3회			
27	70초반	국방경비법3 2,33조	피처분자	1995	1996	3회	소송	패소	
28	40중반	국보4,5,6 조	피처분자	1998	1999	1회			
29	40중반	국보4,5,9 조	처분취소자	1998	1999	첫 결정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30	60후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9	1999	1회			
31	30대후	국보4,5,6,9 조	피처분자	1995	1995	3회			
32	30후반	국보4,5,6 조	피처분자	2000	2000	1회			
33	30중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8	1999	2회			
34	40후반	국보4,6조	피처분자	1998	1998	1회			
35	40초반	국보5조	처분취소자	1997	1998	첫 처분시 취소	소송	승소	
36	20후반	국보6조	처분취소자	1998	1998	첫 처분시 취소	소송	승소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37	40중반	국보4,6조	피처분자	1999	×	×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38	4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9	1999	1회			
39	30초반	국보6조	처분대상자	2001	×	×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40	40초반	국보5조	처분취소자	1997	1998	첫 처분시 취소	소송	승소	
41	30초반	국보6조	처분취소자	1998	1999	첫 처분시 취소	소송	승소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42	30후반	국보4,6조	처분취소자	1998	1998	첫 처분시 취소	소송	승소	
43	50초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86	1986	8회			

고유 번호	나이	원사건 해당법률	신 분	출소년도	첫 처분년도	갱신횟수	소송 여부	소송 결과	비고
44	60초반	국보4,5조	피처분자	1996	1998	2회			
45	30후반	국보4,5조	처분대상자	2001	×	×			신고의무 불이행 기소
46	70후반	국보4,7조	피처분자	1998	1999	1회	소송	패소	
47	30후반	국보4,5조	처분취소자	1998	1999	첫 처분시 취소	소송	승소	
48	40후반	국보 4조,6조	피처분자	1998	1998	1회			
49	40중반	국보4조	피처분자	1998	1998	1회			
50	30중반	국보4	피처분자	1998	1998	1회			

<일러두기>

1.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을 생략하였으며 대신 고유번호를 지정하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례 분석에서는 각 사례에 대해 위 고유번호를 사용했다. 그의 피조사자의 신분과 인적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밝혔다는 점을 일러둔다.

이는 보안관찰법에 따른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사에 참가한 피조사자들이 이를 이유로 혹여 겪게 될 수 있는 인권침해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2. '나이'에서 초, 중, 후반 설정의 기준을 0~3까지는 '초'로, 4~6까지는 '중'으로, 7~9까지는 '후'로 정하였다.

3. '원사건 해당법률'은 보안관찰해당범죄가 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보'는 국가보안법을 의미한다.

4. '신분'에서 '처분대상자'는 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신분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피처분자'는 피보안관찰자를, '면제자'는 보안관찰 면제자를, '처분취소자'는 처분결정이 내려졌으나 소송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이를 의미한다. '처분취소자'의 경우, 좀 더 명확한 신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맞겠으나,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의 구별을 위해 임의적으로 처분취소자로 분류하였다.

5. '비고'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이들에 대해 그 이유를 적시하였다.

2. 피조사자 선정 방법

1) 본 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선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 가운데 각 유형을 모두 포함 하였다. 즉, 처분대상자, 피처분자, 면제자 등의 유형과 소송여부에 따라 승소 및 패소 등의 유형을 골고루 산출하였다.

2) 이를 위해 원사건의 성격 상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아 보안관찰대상자가 된 이들을 상대로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한 사전 조사를 한 후, 현 보안관찰처분상 신분상태 및 인터뷰에 응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3) 피조사자 50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자로서 형기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안관찰법의 제정의 근본적 목적이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모두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기에, 국가보안법 이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자들을 포함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3.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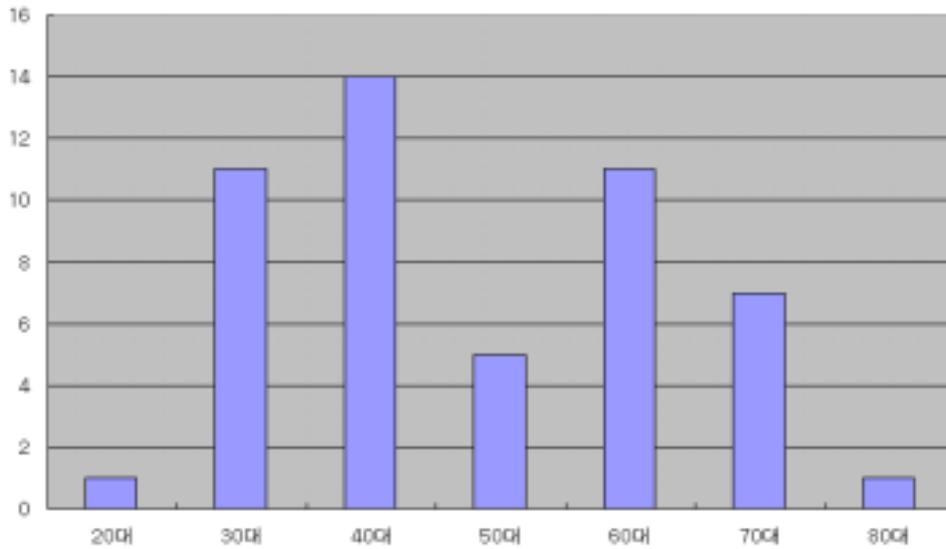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50명을 연령별, 처분에 따른 신분별, 갱신회수별, 첫처분 결정년도 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분석은 뒷장에서 이뤄지므로, 여기서는 통계적 수치만을 다루기로 한다.

먼저 피조사자의 나이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니 4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60대가 각 11명이며, 70대 7명, 50대 5명, 20대와 80대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3~40대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피조사자를 신분별로 분류한 결과 피보안관찰자가 3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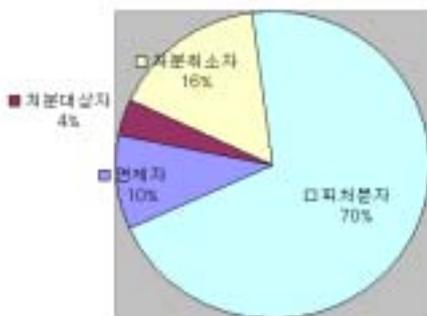
을 보였으며, 면제자 5명, 처분 대상자 2명, 처분취소자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확한 의미에서 처분대상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처분 취소자로 일괄 분류하였다. 한편 피조사자 50명 가운데 처분(또는 기간갱신 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는 12명(1명은 소송진행 중)이며, 그 가운데 8명이 처분 취소판결(원고 승소)을, 3명이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령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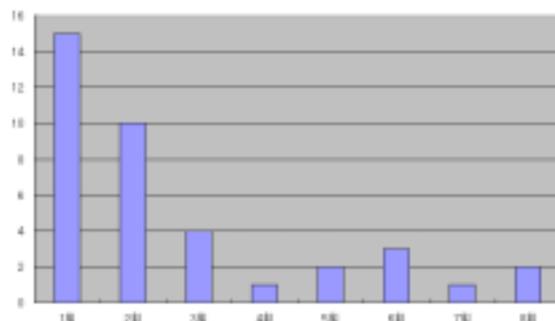


또한 갱신횟수를 살펴보면 1회 갱신이 1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회 갱신 10명, 3회 4명, 6회 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5회, 8회 각 2명, 4회, 7회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2> 신분별 분류



<표3> 갱신횟수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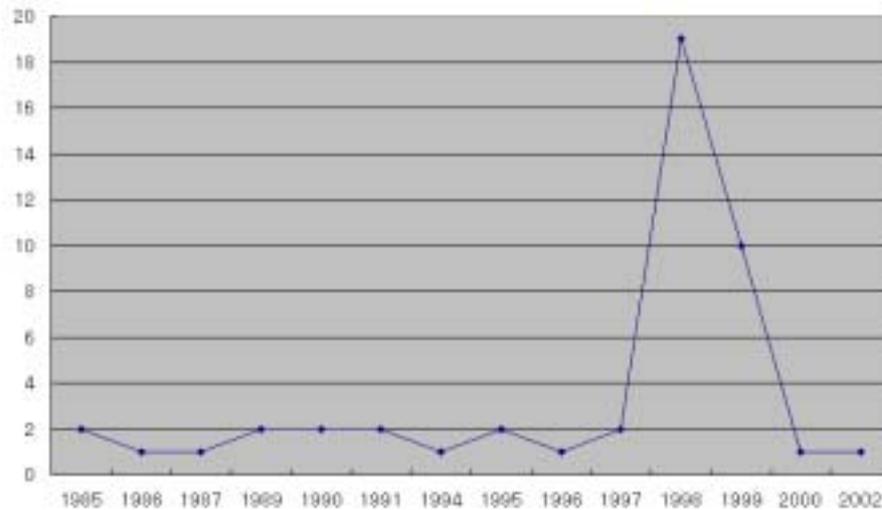


한편 첫 처분 결정년도 별로 분류한 결과, 1998년 1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999년 10명, 1989년 2명, 1985년, 1991년, 1995년, 1997년 각각 2명, 그리고 1986년, 1987년, 1990년 2명, 1994년, 1996년, 2000년, 2002년에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출소일과 대비해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출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첫 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상에는 출소이후 첫 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인해 심지어는 3년이 지나서 처분결정이 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소 이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출소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체포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표4> 첫처분 결정년도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 1절 인권침해 사례 분석

제 2절 실태조사 보고서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 1절 인권침해 사례 분석

본 보고서가 다룰 내용은 보안관찰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이다. 이 장에서는 보안관찰대상자 5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 인권침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서술방식은 먼저 보안관찰법 등 보안관찰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해설한 다음, 각 법규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운영실태 상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 절은 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요건,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절차, 3. 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갱신, 4. 보안관찰 처분내용, 5. 취소소송 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안관찰 처분에 따른 인권침해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관찰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즉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자체의 연구는 포괄하지 않는 점을 밝혀둔다.

I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요건

1. 법규해석

(1) 보안관찰해당 범죄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일컫는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2조에 열거되어 있듯이,

①형법상 내란의 죄 중 내란목적의 살인죄(형법 제88조), 이 죄의 미수죄(제89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제90조), 외환의 죄 중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간첩죄(제98조) 및 이상 죄의 미수죄(제10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제101조).

② 균형법상 반란의 죄 중 반란죄(제5조), 반란목적 군용물탈취죄(제6조), 및 이상죄의 미수죄(제7조), 예비·음모·선동, 선전죄(제8조), 이적목적의 죄 중 이적목적반란불보고죄(제9조2항), 군수 및 군용시설제공 이적죄(제11조), 군용시설등파괴이적죄(제12조), 간첩죄(제13조), 일반이적죄(제14조), 및 이상 죄의 미수죄(제15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제16조).

③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제4조) 및 이 죄의 미수, 예비, 음모죄. 자진지원죄(제5조 1항, 그 중 제4조 1항 6호 해당행위, 즉 선전, 선동, 허위사실 날조유포 행위는 제외), 금품수수죄(제5조 2항) 및 이상 죄의 미수죄(제5조 3항), 예비죄, 음모죄(제5조 4항), 잠입탈출죄(제6조 1항, 2항) 및 이죄의 미수죄(제6조 4항), 예비, 음모죄(제6조 5항), 편의제공죄 중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죄(제9조제1항) 및 이 죄의 미수죄(제9조 3항), 예비·음모죄(제9조제3항, 제4항)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안관찰법 부칙 2조1)는

이 법 시행당시 구 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제87조(제86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및 제88조(제86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 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제17조 제4항을 제외한다)·제21조 제1항·제25조 및 제28조(제17조 제4항·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예비·음모·미수범을 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 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제1조의 미수범, 예비, 음모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 및 제7조, 구 국방경비법²⁾

- 1). 보안관찰해당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부칙 제2조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들은 이미 오래 전 폐지된 법률상의 범죄들이다. 구사회안전법 제정전에 폐지된 법률들이 포함된 것, 그리고 이법 제정 이전에 범행하여 처벌된 자를 포함한 것 역시 소급금지 위반이다. 보안관찰이라하여 소급처벌금지 원칙의 적용을 피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법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논문, 1999. 62-63쪽 참조.
- 2). 이와 관련하여 1998년 10월, 국방경비법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김선명 씨 등은 “구 국방경비법은 미군정 당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나 미군정청에 의해서 제

제32조 및 제33조, 구 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를 위반한 범죄를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망라시키고 있다.

나아가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법 제3조)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의무사항

한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처분을 받기 이전의 신분임에도 일정한 형식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즉 출소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가 그것이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출소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법 제6조 1항 전단)

또한 법 시행령(제6조 1항)에 따르면 이때 신고할 내용은,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 사실의 요지, 판결법원, 판결연월일, 죄명, 적용법조, 형명, 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정·공포된 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법률조항은 무효 또는 부존재이며 이에 근거한 재판 역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수감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구 국방경비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형을 복역한 사람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부칙 2조2호 중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벌불소급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1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2001. 4. 헌법재판소는 “비록 구 국방경비법의 제정, 공포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기는 하나 그 유효한 성립을 인정함이 합리적”이라며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의 성립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거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9·86, 99헌바36(병합) 참조, 2001. 4. 26.

11. 법 제20조제3항(국내에 가족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거소제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이 신고서를 5부 작성하여야 하는데, 교도소등의 장은 이렇게 작성된 신고서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 1부씩 송부하게 된다.(시행령 제6조2항) 나머지 2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³⁾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규칙 제5조2항) 하도록 되어 있다. 교도소 등의 장은 이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개월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3항)

2) 출소사실 및 변동사항 신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1항 후단)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 출소교도소, 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시행령 제9조 1항)

또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출소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2항 전단) 다만,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규의 문제점

(1) 대상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3). 국가안전기획부는 98년 4월 24일, 국가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안전기획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항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대상자신고서를 왜 안기부에 송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보안관찰대상자가 된 이에 대해 이중 삼중의 감시체제를 갖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안기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칙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1) 헌법 제13조 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보안관찰처분 요건에 새로 행한 범죄가 다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이 법 상의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⁴⁾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형 집행이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재범’한 이유로 처벌(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닌, 동종의 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하여 처벌하는 것임에 분명하다⁵⁾.

2) 또한 보안관찰법은 형기 합계 3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단 한번의 보안관찰해당범죄를 행함에도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보안처분의 부과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을 위해서 일정 횟수 이상의 과거 범죄전력을 자료로 삼는 사회보호법⁶⁾ 등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보안관찰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11. 27.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등 위헌소원

5). 한편 ‘보안처분’ 자체가 형벌과 목적, 기능상 중복되므로, 두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한 마찬가지로 이중처벌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보안처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복귀와 사회보호라는 목적은 이미 형벌에 대해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벌에 의한 목적달성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필요 등을 내세워 국민의 일원인 범죄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중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신양균, 형벌과 보안처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사상과 정책, 1989.9. 32쪽)

6). 사회보호법은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호감호, 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사회보호법 제2조 (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5, 1996·12·12>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대상자는 적어도 2번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한다.

찾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보호법 등에서는 보호관찰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두고, 그 기간의 갱신을 두지 않는다. 단,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기간을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사회보호법 제2조) 그런데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갱신을 무제한적으로 가 능하도록 한 점 등 차별적인 요소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문제점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신분임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법 27조 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시행령(11조)에 의하면, “관할경찰 서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관할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동태보고’를 위한 동태파악의 대상이 되 어 있다.

1) 먼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지워지는 신고의무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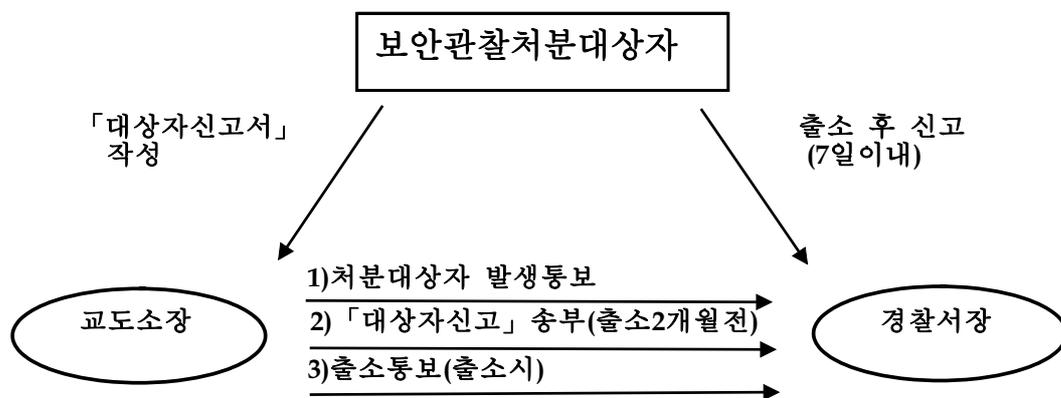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전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출소 후에는 출소사실 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들은 내용이 서로 중복될 뿐 아니라, 경찰의 행정작용으로 얼마든 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불필요한 의무부과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출소전 신고는 그 내역을 살펴볼 때, 굳이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형 관련 등의 서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출소후 신고’ 역시 출소전 ‘대상자 신고’ 내용과 과다하게 중복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후

7). 이와 관련하여 보안관찰법의 실제적 존재 의미에 대해, 1회의 해당범죄(주로 간첩죄)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간첩죄로 인하여 최소한 두 번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문제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서도 해결 가능한데, 단 한번의 간첩행위자는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에 보안관찰법의 실제적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듯 “단 한번의 간첩 행위자를 보안처분대상자로 삼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일반이론에 거역되는 일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래의 범죄 위험성보다 과거 범죄의 ‘죄질’에 더 중점을 둬으로써 형식은 보안처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형벌을 추구하는 편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종대,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반민주적 법률의 폐해를 위한 공개토론), 법과사회 창간호, 1989

신고'에 대해 “주거지 확인에 중점”이 있다고 하였던 바, 바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출소후 신고’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안관찰법 및 같은 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전에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 3항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발생통고를 받게 되고, 2) 역시 출소예정일 2월전에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1항 전문 전단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를 받게 되며,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직후에는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의 제8조에 의한 출소 통보를 받게 된다. <그림 참조>



따라서 경찰서장은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를 전후하여 2회에 걸쳐 대상자 발생통고 및 출소 통보를 받을 뿐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본인으로부터도 출소전 신고를 받게 되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으로 하여금 ‘출소 후 신고’를 하라는 것은 불필요하고도 과잉한 처사이다. 따라서 출소사실 신고의 의무를 강제하는 목적은 다른아닌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자료의 확보 목적 이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전에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로 신고하였던 장소에

거주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사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현실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그 대상자가 자신의 관할구역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시행령 11조 소정의 동태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 안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⁸⁾”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출소 후 신고는 단순히 “주거지 확인에 중점”이 있는 것 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 의사를 현실적으로 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⁹⁾이다.

2) 다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¹⁰⁾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헌법 제12조 1항). 출소 후 ‘출소사실 신고’가 대상자의 출소사실 파악 및 주거지 확인이라는 국가의 행정작용상의 목적이라고 할 경우, 출소 사실신고는 국가의 행정편의를 도와주기 위한 협조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법익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에 비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사회보호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등 헌법 제12조 1항의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들 중 보안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의 보안처분대상자에게 형벌이 수반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건 없건 동향 파악은 물론 무조건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¹¹⁾이다.

8). 법무부장관, 현재 2001.7.19. 20000헌바22,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의견서

9).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출소사실 신고’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후 신고는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파악하고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출소일 등의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 신고를 통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상 내지 윤리가치를 표현하게 하거나 이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안관찰법상 신고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2000.11.7. 를 참조하라.

(3) 경찰의 '동태보고'의 문제점

보안관찰법상의 규정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위 신고 의무 외 다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 시행령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라는 조항(제11조)이 있는 바,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죄를 범한 때, 사망한 때,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국외여행을 할 때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점이다. '우려가 있는 때'라는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법경찰관의 무제한적인 동태파악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때로는 '동태파악'을 넘어선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조사결과, 많은 피조사자들의 증언에서도 증명되는 바, 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지도나 재범방지 조치에 상응하는 내용의 간섭을 일삼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답했다.

3.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 보안관찰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출소이전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자신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 출소후 출소사실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피조사자 50인은 모두 처분결정이 나기 전인 대상자 신분이었을 때, 경찰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조사자들은 특히 자신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경찰의 불시의 방문이나 연락을 받고 매우 당혹스러워 했으며, 그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처분결정이 나기도 전에 지도를 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사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 개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출소 후 안정을 되찾

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위 의견서

아야 할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불만을 가중시키는 장치가 되고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 출소후 출소신고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은 출소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되고 교도소 등의 장은 출소 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책임이 있다¹²⁾.

조사결과, 50개의 사례 중 17건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 출소 후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출소 후 경찰로부터 “출소사실을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게되었다.

<사례 9> 출소 전에 그런 이야기(출소사실 신고)를 들은 적이 없다. 출소후에 수차례에 걸쳐 경찰이 일하는 곳에 와서 나를 보고 갔지만,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출소 1년반이 지난 후, 출소 직후에 머물렀던 수양관 사람들 안부가 궁금해서 우연히 그곳에 전화를 했더니, 원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경찰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수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곧 바로 수양관에 가니,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다. 그때서야 경찰이 나에게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23> 출소전에 교도소에서 내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출소신고를 하라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출소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출소신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며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며칠후, 출소한 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이 집으로 찾아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우편으로 다시 보내온 적이 있다.

그런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뒤따른다

12).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소사실 신고, 변동사실 신고)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7조 (신고의무의 고지))

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고의무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법 제27조)으로 체포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이를 이유로 지명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이 부분은 출소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례 39> 출소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고, 출소 후 집으로 등기우편이 와서 알게 되었다. 물론 출소 전 날, 공안담당교도관이 무슨 양식서를 주면서 그 내용을 쓰라고 한 적이 있다. 나중에 법을 통해 그것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라는 것을 알았다. 출소 후에 경찰이 부모님과 나에게 찾아와 출소 신고서를 쓰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자신들도 신고의무 고지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보안관찰법을 적용하여 신고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후 나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체포,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또한 어떤 이라도,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나면 생활에 대한 새로운 설계로 기대에 차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출소하자마자 찾아온 경찰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게 될 때, ‘안정적’ 신분 취득이라는 목표점은 두말 할 나위 없고, 불안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겪게 될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사례 35> 출소하면 설사 그들이 몰래 감시를 할지언정, 겉으로는 일상생활이 정상인과 같을 줄 알았는데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그 전보다 더욱 불안정한 신분을 지니고 있으니 나는 물론 가족들이 너무나 불안해 했다.

(2) 출소사실 신고의 문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경우, 출소후 “출소사실을 신고하라”는 경찰의 종용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방문하여 신고할 것을 종용한 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가족들에게 신고를 시키라고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다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신고를 강요하였다. 심지어는 대상자가 출소하기 전부터 가족들에게 “나오면 데리고 와서 신고하라”고 한 사례도 나

타났다. 가족들을 동원하여 양심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또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이들에게 출소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내리거나, 출소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재판사실로 여권발급이 되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출소신고를 과도하게 강제한 사례

<사례 1> 출소 직후부터 경찰들이 1달에 1~3번 정도 담당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신고하라며 “출소신고를 거부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줄 알아라. 다른 대상자들은 다 신고했는데 왜 당신만 특별하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하나 없다”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로 대했다. 그래도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1차례의 경고장을 보내왔으며, 며칠 후에는 3명의 형사가 타자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신고양식서 작성을 요구했다.

<사례 41> 출소 이후 출소신고 거부를 이유로 두 달 동안 경찰관이 여러 차례 집으로 전화하고 방문하여 가족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했다. 특히 어머니는 그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내 일로 괴로움을 당하셔서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신 것 같아 늘 마음에 사무친다.

2)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고하라고 강제한 사례

<사례 8> 경찰이 출소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새벽 5시 반이나 밤 12시 등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2학년 딸아이가 “아빠, 또 들어가?”, “아빠, 무슨 일 있어?”라고 물으며,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 했다. 처음에는 출소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출소신고를 계속 거부하다가 아이들이 내가 또 잡혀갈까봐 불안해하는 등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처와 상의를 했다. 그래서 출소 3개월 후에 부인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출소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사례 34> 경찰이 전화도 없이 내가 없는 집에 찾아와서 시부모님을 만난 적이 2번

있다. 그때 담당 경찰이 시부모님께 “당신 며느리가 보안관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계속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해서 시부모님이 위협적으로 느끼셨다.

<사례 2> 경찰이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걸 알고 집으로 찾아와서 “아드님은 출소신고를 해야 된다.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작은 형한테는 전화를 해서 “요즘 ○○씨, 뭐하느냐”, “학교는 잘 다니느냐”, “요즘 어디서 지내느냐” 등의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사례 31> 출소하자마자 경찰이 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해서 “아드님이 출소신고를 안 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빨리 출소신고 하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애원을 하셨고, 결국 한달 후에 출소신고를 했다.

<사례 37> 경찰이 출소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밤중에도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다. 경찰이 자꾸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아빠 어디 가셨냐”고 묻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볼까, 아이들 기죽을까 걱정을 한 적이 있다. 집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경비실로 전화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낸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전화를 했다. 하루는 아이들과 외출하려고 나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들과 마주친 적이 왔다. 그때 딸애가 나를 막아서면서 경찰한테 또 잡으러 왔냐고 소리치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사례 35> 출소 전에도 담당경찰이 부모님 집으로 전화와 방문을 수 차례해서 내가 출소하면 출소신고하게 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가 출소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 버리자, 경찰이 부모님에게 “다시 구속될 수 있다”며 위협하였으며, 결국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서서 나의 출소사실을 알리고 진술서를 작성하셨다.

3) 출소 이전 가족들에게 미리 통보하여 신고하게 한 사례

<사례 27> 출소 전에 경찰이 가족들을 만나 “다른 일을 못하게 하라”고 협박을 한 것

같다. 출소신고부터 형님이 대신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 가족과 경찰, 양쪽에서 나를 감시해서 힘들었다.

<사례 28> 내가 출소하기 전부터 경찰이 가족에게 “보안관찰처분대상자니까 출소신고를 해야한다. 안 할 경우 사법처리가 된다”는 등의 고지를 했다. 그래서 출소 2일 후에 가족의 성화에 못건뎀 경찰서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4) 신고하지 않았다고 신고의무 불이행죄로 체포, 기소한 사례

다음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안관찰법상 6조, 27조 위반으로 체포, 기소된 사례이다. 특히, <사례 36>의 경우, 아버지가 전화로 신고사실을 알렸으므로 달리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법원은 “서면형식”의 신고만 신고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례 2> 출소한 후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음에도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 등교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36시간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지만, 기소되었고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중이다.

<사례 41> 출소한지 1년 1개월이 지난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집 앞에서 11시가 넘은 늦은 밤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인 나 한사람을 붙잡으려고 형사 두 명이 양 팔을 붙들고 이웃들이 다 보는데서 경찰서로 끌고 갔다.

<사례 45> 출소 후 8개월여가 지난 후였다. 하루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벌금을 내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이 갑자기 나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며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곧 관할경찰서로 넘겨져 47시간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중이다.

<사례 39> 출소 후 약 9개월 정도가 지난후, 체포되었다가 3시간 후에 풀려났다. 이 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사례 36> 출소 전에 출소신고나 의무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 다만 출소 다음 날, 교도소 보안주임이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 있다”는 말만 해 주었다. 이 말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는 7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나의 출소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하셨다. 그런데, 경찰은 그제서야 출소신고를 하라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왔다. 나는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출소한 사실을 알렸으므로, 출소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으므로 거부할 생각이었다. 출소 후 한달여가 지나고 경찰에 의해 체포당했다. 이 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소사실 미신고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 벌금 100만원형을 내린다”는 약식명령서를 보내오자,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형식상 서면신고만 신고로 인정한다며,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5) 출소신고 하지 않았다고 벌금형을 받은 후, 벌금대신 노역장을 산 사례

이처럼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보안관찰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에서 벌금을 내지 않고, 대신 노역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례 19>는 이미 처분이 면제되었음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죄로 기소된 후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노역을 살았다.

<사례 19> 출소신고를 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6, 27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백만원, 2심에서는 2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에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처분이 면제된 상태였는데, 벌금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례 37>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벌금 30만원이 확정되었다. 대통령 선거 4일전, 파출소 순경이 집으로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나는 벌금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그 순경이 집 앞으로 와서 당장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순경은 이미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내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나는 출두기한(2주 뒤)까지 출두하여 노역을 살겠다고 말했으나 막무가내였고 하는 수 없이 출두하여 노역을 살았다.

6) 출소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재판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여권이 미발급된 사례

<사례 2> 출소신고를 거부하고 있을 때 여권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거부당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 왜 여권신청이 안되는지 이유를 물으니, 검찰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해 놓았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재판중이라서 불허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의무 불이행의 최고형은 벌금 1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되는데, 이 건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결국 정치보복의 성격을 갖는 과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3) 신고이후 과도한 동태파악의 문제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의무는 교도소 내에서 대상자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출소전 신고와 출소 후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알리는 출소신고 및 변동사항신고의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된 사례 중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해당되는 사법경찰관리의 지도 및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막연하게 적시되어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떤 피조사자의 경우, ‘대상자’와 ‘피처분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례 17의 경우, 남쪽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경찰이 그가 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림으로써 생계를 이어갈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박탈한 사례도 나타났다.

1) 처분 전, 처분대상자 신분인데도 지도 등을 당한 사례

<사례 5>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데 담당경찰로부터 “8.15 대회등 통일행사에 가지마라”, “범민련 중앙위원 총회 등 범민련 행사에 가지마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례 14> 출소 5일 후에, 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하러갔더니 “집회나 인권단체에는 가지말라”, “출소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

<사례 28>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해서 사회적응도 잘 안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씩 연락을 해서 “~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가협 주최의 집회나 모임은 가면 안됩니다”라고 강요했다. 처음에는 두렵기조차 했다.

<사례 11> 출소사실 신고 후, 처분결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경찰이 한달에 한번 정도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지 물어보거나 미행을 하는 것 같았다. 특히 출소 이후 민가협 수련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경찰에게 수련회에 참석했는지 묻는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

<사례 34> 출소 후 처분결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5월이 되어서 민주열사를 기리고 참배하기 위해 망월동 묘역에 다녀왔다. 그런데 경찰이 전화를 걸어 “왜 망월동에 갔느냐?”, “누구와 만났느냐?”, “누가 왔었느냐”며 꼬치꼬치 물어보았다.

<사례 7> 보안관찰처분 결정 전부터 “집회에 나가지 말라, 안 지키면 다시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것이 무서워서 옳지도 않은데 따르고 했던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

2) 처분 전임에도 경찰의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

<사례 17> 출소 후 목장에 가서 일을 시작한지 한달 가량 되었을 때, 담당형사가 목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 경찰이 목장 주인에게 “이 사람은 사상이 불순하고, 독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해서 쫓겨난 적이 있다.

<사례 41> 내가 둔한 편이어서 직접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안관찰법 상 출소신고의무 위반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자료를 보니 7~8cm정도 되는 경찰 자료집에 출소 후 내가 누구와 만났고, 무엇을 했으며, 어디에 갔다가 몇 시에 돌아왔는지가 나도 기억 못할 정도로 상세히 적혀있었다. 또한 옆집 사람에게 나에 대해 탐문수사를 해 얻어낸 내용들도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면 건너편 벤치에 사복경찰이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곤 했고 우리가 자리

에서 일어서면 그제야 일어나서 간 적이 있다.

<사례 11> 한번은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우리동네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데, 경찰이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걸 알고, 나를 보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되도록 동네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경찰이 동태파악을 하는 것도 싫지만 그로 인해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사례 39> 담당형사가 내가 살고 있는 자취 집으로 찾아와서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 집에 (나에 대한 설명)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에는 잘 들어오나” 등을 물어보며 동태파악을 한 적이 있다.

<사례 43> 담당경찰이 내가 출소한 직후에 장인어른을 만나 내 상황을 다 이야기해서 처가댁으로부터 부인과 이혼을 요구받았으며 결국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한 적이 있다.

<사례 35> 당시 운영하던 식당으로 경찰이 찾아온 후, 그 후로 3개월마다 2~3회 더 들러서 일상에 관한 것을 묻곤 했고,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니까 1년 정도 관찰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보안관찰처분청구서가 왔길래 “그 동안은 처분자도 아닌데 왜 찾아와서 귀찮게 했느냐”며 화가 나서 따져 물었다.

<사례 2> 출소 후 복학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대학의 학생처장을 만나 복학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후에 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측에서 경찰의 동태파악 기록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학생처장을 만난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례 20> 처분 전에 한달에 한번 정도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느냐고 물어봤고, 응대를 안하면 몇일에 한번씩 전화를 하기도 했다. 전화를 해서 “결혼은 안하냐”, “직장 알아봐 줄까”등 현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했다.

II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절차

1. 법규해석

(1) 조사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법 제9조) 또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시행령 13조)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사 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제출 요구

또한 조사는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도 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법경찰관리 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조사 내용은 검사의 경우와 같다.

(2) 청구

보안관찰처분 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법 제8조) 처분청구서에는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법 8조 3항)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8조 4항) 한편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법 제13조 1항)가 있다.

(3) 심사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출한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법 10조)

법무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법 제 10조 1항 2항 3항)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 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법무부 장관은 보안관찰처분 등의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영 제15조 1항) 일반적인 심사기간의 제한은 없다.

(4) 심의 및 의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아래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법 제12조)

위원회는 심의, 의결의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보안관찰처분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

(1) 보안관찰처분에서 관할권의 문제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보안관찰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 관할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견해는 보안관찰처분은 사법부 관할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안처분은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형벌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견해¹³⁾,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 현실의 문제점 즉, 법의 지배에 의하여

13). 이승호, 우리나라의 보안처분류 제재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1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는 법문화가 안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보안처분을 일반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¹⁴⁾이므로 보안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하여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해석에 따라 사법부 관할 사항이어야 한다¹⁵⁾는 견해가 그것이다.

결국 보안관찰처분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며, 형벌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을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의 사법부 관할 원칙을 부정하였다. 즉,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기관"이며, 보안관찰처분의 자유제한 정도를 고려하면 위 위원회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내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¹⁶⁾.

그러나 "자유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위 판결에 의하면 현재는 "구 사회안전법이 보호관찰처분·주거제한처분·보안감호 처분을 두고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및 각 처분의 위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화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자유박탈의 처분까지 명할 수 있게 하였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상의 보안관찰처분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제한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형사벌로서의 제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상의 의무부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과거 사회안전법상 시설내에 수용한 '보안감호'처분에 비해, 현재의 보안관찰처분은 구금시설 밖의 사회 속에서 감시한다는 차원이므로 훨씬 약화된 형태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내용이 경한 것이라고 해서 이를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러한 논리라

14).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기본원리와 우리 법제를 중심으로"(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5)

15).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법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논문, 1999, 63-67쪽

16). 헌법재판소,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등 위헌소원, 현재 1997.11.27.

면 형벌 가운데 경한 형태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부과도 구태여 법관에게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안관찰도 형사제재의 일종인 이상, 행정처분으로 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법무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부의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고 위원회 과반수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원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은 없다. 또한 이는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아닐 수 없다.

3.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1) 청구원인 사실 및 결정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문제

이는 앞서 언급했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과 출소의무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처분이나 갹신의 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복할 권리 역시 침해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안관찰제도가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은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보안관찰제도의 목적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결과, 검사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조사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자신의 보안관찰처분 청구원인에 대해 검사의 조사내용을 유추하는 등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갹신을 위한 조사시 경찰과 검찰의 태도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7). 신양균, 형벌과 보안처분, 사상과 정책, 1989.9

이러한 조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안관찰처분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의 질문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을 위한 조사시, 경찰이나 검사는 보안관찰대상자에게 원사건과 관련된 질문이나 사상 전향여부를 묻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과거를 억지로 상기시키고 불안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이 조사과정이 대상자의 북한관, 정치관을 지나치게 캐어 물음으로써 결국 사상검열의 과정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검찰 또는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여전히 과거 원사건의 잣대에 평가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여전히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41> 출소신고를 하지 않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아직 피보안관찰자도 아니었는데 젊은 담당검사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대했다. 심지어는 “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다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의무를 어겼어”라며 격하고 심한 표현을 쓰고 함부로 대해서 ‘이미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3~4년 전 원사건으로 조사받던 때와 하나도 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12> 출소 후 경찰서로 자진출두하여 출소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원사건에 대한 것을 자꾸 물어서 굉장히 불쾌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해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갔는데 검사 서기가 또 원사건에 대해 물어서 너무 괴로웠다. 이미 끝난 원사건을 들먹여서 나를 다시 죄인취급을 하고 그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은 나를 고문하는 것과 같다.

<사례 15> 1차 갱신을 위한 조사에서 “만약 북이나 일본에서 사람(공작원)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물어보았다.

<사례 13> 검찰에서 보안처분과 갱신을 위한 조사를 3회 받았다. 괴로운 것은, 분명히 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2회 갱신조사에서도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물어서 나의 과거를 들춰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과거 사상에 대해 물

으며 “지금의 생각은 어떠냐”, “함께 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하는가?” 등을 묻고 이에 “그 때의 내 생각에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이제는 꺼내기 싫은 대답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무척이나 싫다. 또 “친구들이 뭐하는지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캐어 묻는다. 사람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빨갱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어놓고 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출소 후 나는 과거의 일을 잊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지내는데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만 가면 과거의 사람이다.

<사례 27>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던 중에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검사 서기가 “나가서 사먹고 오든지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

Ⅲ 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갱신

1. 법규해석

(1) 결정 및 취소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의 부과 또는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린다.(법 제1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고,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할 수는 있다.(법 제14조 2항)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 날인하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2항)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17조 2항, 시행령 21조)

또한 취소의 청구, 심사,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16조)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요건 및 갱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법 제4조)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법 제5조1항)

그 기간 중 행정 소송을 통해 결정이 취소되거나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보안관찰처분은 종료하고, 피처분자의 지위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로 돌아간다. 이때 대상자의 지위로 복귀한 자는 법 제6조2항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이 의무는 사망 시까지 영구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7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법 제5조2항) 갱신할 때는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규정이 적용된다.(법 제16조 3항)

(3)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11조)

1. 이 때 일정한 요건은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인 있을 것

면제결정의 절차는 2가지 방법이 있는 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과 검사의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먼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위 3가지 면제요건을 갖추었을 때, 면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조 1항) 신청방법은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1항)

1.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2. 주민등록 등본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다음으로 검사는 위 요건 가운데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1조 3항)

한편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법 제11조 6항) 그러나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1조 4항)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1조 5항)

2. 법규상의 문제점

(1)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1) 보안관찰처분은 이미 자신의 행위로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안관찰처분은 부과되는 의무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듯 기본권 제한이 심대한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그 요건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성의 객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¹⁸⁾”고 판시 하였고, 이는 현재도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2) 그러나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라는 점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의 객관적인 입증가능성”을 배제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를 확장함으로써 처분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요건의 해당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엄격한 해석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은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추측에 불과한 개념일 뿐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들에서 보더라도, 법무부는 그 개연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 및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18). 대법원, 선고 97누2696 판결, 1997. 7. 25.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¹⁹⁾.

그러나 양심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먼저 “재범위험성”은 행위에 의해 구체화된 위험성이 아니라 추측된 위험성에 불과함에도,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반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면, 그 양심표출행위가 전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합법적인 정치의사표현 또는 다른 사상범과의 만남 등- 자유박탈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⁰⁾.

요컨대 보안관찰처분은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니라 “내심의 반사회성”을 평가하며 부과되므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²¹⁾.

이 점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갱신조항의 문제점

보안관찰처분은 2년을 단위로 하여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상 상한과 하한이 모두 정하여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절대적 부정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할 것이다. 즉, 보안관찰법 상 갱신조항은 그 성질상 사상범에 대해 평생동안을 공식적 감시 및 통제장치에 두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미 형벌을 치룬 이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과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한번의 위법행위로 감시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둔 채, 법무부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나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결국은 기어이 사상을 교정하겠다는 발상인 것²²⁾이다.

19). 헌법재판소, 92헌바28 결정, 1997.11.27. 선고

20).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21).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범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논문, 1999, 111면

22).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근본목적에 대해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한 주장으로 신양균, 위 글 39쪽 참조.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제재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법이 자행하는 불법에 다름아니다. 보안관찰법이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은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3) 면제결정 요건의 문제

1) 보안관찰법상 면제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요건 가운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보안관찰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면제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무부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면제결정 자체가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규정상으로 보건대, 면제결정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면제를 받더라도 보안관찰처분 상태와는 확연히 다른 생활이나 심리적인 안정성을 꾀하기는 어렵다.

2)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위한 요건으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하는 서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먼저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준법정신이 확립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 자의적 잣대에 의해 판단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 지극히 추상적 개념인 것이다. 특히 ‘법령을 준수하는 서약서’ 즉 준법서약서²³⁾는 양심의

국민들의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기능을 불신하고 비인간화를 조장하고 공적 통제에 의한 사상감시 체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라고 주장했다.

23).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2년 4월25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시법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할 자신의 고유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엠네스티는 지난 대통령 선거전,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권고 사항 중에 “준법서약서가 합헌이며 조기 석방을 위해서는 이 서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권고했다. 준법의무는 도덕적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준법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설령, 법을 위반하였다면 그때 처벌하면 될 것이니 국가가 미리 개인에게 내면을 표현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면제'를 미끼로 준법서약과 준법정신의 확립을 요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하여 '면제'신청을 기각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²⁴⁾이다.

(4) 처분 결정시 피청구자에게 결정의 이유를 고지 하지 않는 점

1)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결정의 이유를 붙이고, 기명, 날인하는 문서로써 한다.(법 제15조 2항)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17조 2항, 시행령 21조)

그러나 보안관찰법 관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결정의 사유를 고지한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피보안관찰자에게 송달된 결정문에는 “피청구자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타당하다고 인정됨”이라는 1쪽짜리 문서만 송달되고 있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이 피청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점은 피보안관찰자의 알권리, 불복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이유, 근거로 하여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는지, 또는 처분 기간을 갱신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

24). 한편 준법서약제에 대한 위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은 준법서약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서제도는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는, 국가가 개인의 내심의 신조를 사실상 강요하여 고백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양심실현 행위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내심의 신조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사 이를 내심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칙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석방심사규칙이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향후의 준법의사를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입법목적상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석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규칙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한편 재범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면접 등 다른 일반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규칙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 일부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받아보고, 그에 첨부된 검사의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원인사실일 뿐이라서 어떤 연유로 결정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5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6호,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법원 역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의 갱신처분의 사유를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서에는 그 의결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때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고, 따라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²⁵⁾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해도, 국민의 알권리, 행정구체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경우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사유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더구나 처분 결정의 이유를 타인이 아닌 당사자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처분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점은 오히려 보안관찰처분의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처분의 취지가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피처분자로 하여금 어떤 사유가 구체적으로 재범의 위험성 요소인지를 고지해야 할 것인데도, 그것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처분자는 재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

25). 서울고법 제4특별부, 2001누8140 보안관찰처분취소, 2002,4,12.

탈 당하는 것²⁶⁾이라고 할 것이다.

3.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재범의 위험성, 자의적 판단으로 일관

보안관찰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은 추측된 위험성에 불과할 뿐이다. 법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표지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재범의 위험성”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크게 1)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처벌받은 사건을 또다시 문제삼아 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 2)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3)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4)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5)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6) 기타 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제한하는 경우 7) 개인의 주변환경을 문제 삼은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보안관찰처분 요건에 대해

① 출소신고를 거부하였다

출소신고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 제27조 2항·제6조 1항 위반죄로 체포, 기소되어 재판 받았음에도 이를 또다시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출소신고를 거부한 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어떠한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출소신고를 거부한 것은 곧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6>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출소신고를 거부했으며...”

26). 위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변호인의 준비서면 참조

<사례 41> “출소사실의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재판 중에 있으며...”

특히 아래의 사례는 출소신고를 거부한 것 뿐만 아니라, 이 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위험성의 표지가 되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이다. 그러나 묵비권 행사는 헌법 12조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그것을 근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례 2> 보안관찰처분취소 사건의 법무부장관 준비서면(2002.11)에 의하면 “출소 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안관찰처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회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고의로 불응하였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보안관찰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여 사상에 대한 굳은 신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행동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원고의 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② 원 사건이 중하여 장기복역을 했다

실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아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재범의 위험성으로 보고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 13조에 보장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상자 모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피처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령, ‘원사건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의 표지를 삼았다면, 공안당국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겠으나 원사건이 중하여서 ‘장기복역’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요컨대, 그가 복역한 형량이 “중한” 죄에 비해 ‘단기복역’하였으니, 보안관찰처분이라도 해야 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는 국가의 형벌제도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 다름 아닌 처사이다.

<사례 9> “범정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사례 14> “범정이 중하여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사례 28> “...죄질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사례 46> “죄질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③ 행형 성적이 좋지 않다

수형생활 자체가 원 사건에 대한 처벌이고, 행형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함에도 이것이 또다시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행형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과 재범의 위험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특히 “행형성적이 좋지않다”는 그 이유로 재소자들은 교도소 등에서 징벌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또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수감 중 소내 민주적 운영이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다.

<사례 32> “수감 중...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공안사범 동일사동 수용 등을 요구하며 식사 및 입실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사례 2> “행형성적이 좋지않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648여식을 불식하였다...”

2)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처분 사유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주된 근거는 주로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거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모순되는 점은, 사상전향을 했음(또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등을 내세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① 전향과 준법서약서를 거부하였다

27).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양심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이다. 법무부는 강○○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준비서면>(2002.11.6)에서 “...양심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억압된 욕망들이 무익식에 살아남았다가 의식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저항 심리적 자기공격성 즉 죄의식일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고가 재판당시 자신이 주장했던 사상에 대하여 추호의 죄의식도 없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그 사상이 변경되지 않고 범죄행위당시나 재판당시나 이 사건의 처분 당시에도 공히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핑계 삼아 자신의 사상을 계속 침묵하지 말고 원고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라면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내 보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상전향 또는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경우는 곧바로 그 점이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이 된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 정부당국에 의해 이미 폐지되었다. 그런데 사상전향제가 폐지된 이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난 사례들에서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분결정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위법한 처사이다²⁸⁾.

<사례 2>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하지 않았고…”

<사례 19>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등…”

<사례 36> “재소중에도 전향을 거부하고…”

<사례 24> “…사상전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② 전향서와 준법서약을 제출하였으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례 22> “간첩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안관찰의 필요가 있음…”

<사례 9> “양심선언을 통해 고문과 구타에 의한 강제전향으로 자신은 비전향자라고 주장하고…”

<사례 14> “수감생활 중 비록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출소 후에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사례 43> “교도소 복역시 전향을 거부하다가 형기종료일이 임박하여 전향을 하였고, 이 건으로 복역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 48> “자신의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있고…”

<사례 18> “…형의 소식을 알고 싶었던 것이 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자들과의 만남에서 학담을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이 처벌받은 것이 마치 강압수사에 의해서 허위자백을 하였기에 처벌을 받고 있다

28). <사례 42>의 경우,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가 작성,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사례42>가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요건으로 “전향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무부가 사상전향이 여전히 유효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지, 준법서약은 사상전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준법서약을 작성한 것은 이익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는 식의 항변을 하는 점... 범죄사실 대부분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례 11> “대상범죄의 죄질이 중하여 재소중 전향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처벌받은 점과 또다시 보안관찰법으로 제재를 받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

③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일반적으로 준법 ‘정신’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때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심에 따른 선택이며, 특히 이와 관련해 보안관찰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기에 이를 또다시 위험성의 표지로 삼아서는 안된다.

<사례 4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 검찰과 경찰의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점 등...”

<사례 35>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3)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 요건에 대해

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에 불과한 점...이므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²⁹⁾을

29). 서울고법 제4특별부 판결, 2001누8140 보안관찰처분취소, 2002.4.12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불순세력과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4> “북한을 동경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사례 8> “북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수회 불식한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사례 11> “교도소내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전향 후 가석방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등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불식투쟁을 벌이며...”

<사례 14> “수감생활 중...십여회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였고...”

<사례 15> “수감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4차례 단식을 한 사실이 있고, 출소 후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례 27> “수감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사례 36>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출범식 보장 및 이적단체 지정 철회 등을 주장하며 2회 단식농성을 한 바 있고...”

<사례 46> “북역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회 불식하였으며...”

<사례 1> “원 사건과 관련된 각종 활동 및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례 47> “북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한 사실이 있고...”

<사례 41>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사례 23> “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와 장기수석방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였고...”

<사례 40> “수형기간 중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하며 6회에 걸쳐 불식 등 교도소 내 소란행위를 한 바 있고...”

<사례 35> “수형기간 중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하며 구호제창 2회, 불식 2회 등 교도소 내 소란행위를 한 바 있고...”

<사례 24>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례 48> “국가보안법 등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등 불순세력과 접촉 가능성 및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② “북한은 의식주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고 진술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은 보안관찰처분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사과정에서 대상자가 한 발언등을 문제삼아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자신의 내면속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인데, 특히 이 과정이 지나친 사상검열의 과정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검사가 처분원인으로 제시한 내용들 가운데는, 그 발언에 보안관찰에 해당하는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위험성의 표지를 증명할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반정부적 발언이거나 또는 검찰쪽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례 36>의 처분 취소소송 시 법원은 “(원고가) 검사 앞에서 북한은 의식주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거나,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의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징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안관찰법 2조 3호의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³⁰⁾”는 판결을 내리며 처분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대상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48> “북한체제에 대하여 순수성과 주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회라며 동경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등 불순세력과의 접촉 가능성 및 재범의 우려가 농후...”

<사례 36>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입건된 데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알릴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사회로 의식주에 있어 평등한 것이 좋은 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보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사례 4> “북한의 주체사상,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주장을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30). 서울고등법원, 99누2323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 1999.10.6.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점”

③ 수감중 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불식하였다

교도소내 처우문제 해결을 위한 단식은 교도소라는 제한적인 곳에서 기본권 실현을 요구한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 뿐 그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 32> “수감 중…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공안사범 동일사동 수용 등을 요구하며 식사 및 입실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④ 각종집회에 참석하였다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의 출입 제한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집회나 모임의 참가 등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정치집회 등의 참가가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 3> “범민련 ○○ 부의장,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최근까지 각종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례 9> “장기수복송송환추진위 모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에 참가하는 등…”

<사례 27> “장기출소자 환영집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례 1> “출소후 피보안관찰자들과 계속 회합하면서 재야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민가협 목요집회, 98 민중대회 등)에 참석하는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례 49> “출소자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⑤ 수감중 자서전을 발간하였다

자서전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자서전을 발간한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경우가 있다. 자서전을 발간할 경우, 어떠한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한채 그 행위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대상자의 출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것이다.

<사례 49> “수감 당시 자신의 자서전을 발간한 경력이 있고…”

4)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 처분요건에 대해

①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있다

혼인의 유무로 가족관계나 생활의 안정, 불안정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발상이다. 특히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를 들어 '생활의 불안정'을 판단한다. 대단히 자의적인 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 12>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례 29> “처의 이혼요구 등으로 가족관계가 불안정하다”

<사례 48> “전처와 이혼한 후 아직 재혼하지 않고 있으며...”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자들이 동거중이다

혼인의 유무 뿐 아니라 아래의 사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끼리 혼인한 사실마저 문제 삼은 경우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사례 40> “같은 ○○○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원고들이 동거 중이다”

③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불안정하다

대상자 대부분은 오랜 수감생활로 단기간에 경제적인 안정이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데 경찰은 '보호(법 20조)'를 하기보다는 출소 초기부터 집이나, 어렵게 구한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으로 오히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직업 및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을 해소하기 보다는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의 출소자의 경우, 아래의 사례처럼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거나,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곧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60대 중반> “정부의 생활보조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례 27 *70대 초반> “출소 후 직업도 없이…”

또한 아래의 경우는 특정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특정 직업을 가지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적인 발상이다.

<사례 9>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북 전주, 김제, 남원 일대에서 막노동에 종사하며 건축현장 노동일, 고물수입일, 배발 관리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고…”

<사례 40> “…원고들은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 4> “…단신으로 기거하면서 공원으로 종사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고”

④ 처의 수입에 의존하여 하류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로인한 경제적인 불안정도 감수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보안관찰법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라면 가장 우선하여 이 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 요소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판단이다.

<사례 8>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노동수입으로 생계유지, 하류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례 11> “주거가 불안정하며 생업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사료된다”

<사례 14> “원고가 출소 후 가족들과 함께 비교적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으나 고정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처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사례 25> “출소 후 처 명의로 된 13평 주공임대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처가 생활비를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활이 극히 어려우며…”

<사례 32>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유치원 교사인 처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사례 46> “처의 수입에 의존하여 하류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사례 48>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부모집에 기거하여 생활하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범의 위험성의 이유로 삼고 있는 사례가 있다.

<사례 43> “일본인 무역회사 한국지사 대표로 근무하며 본인의 수입과 의사인 처의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수시 일본으로 여행하여 불순분자들과의 접촉가능성이 있고, 재야 인사, 보안관찰대상자들과의 접촉이 있는 등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또한 학생 신분으로 자력으로 학비를 해결하고 있는 이에게도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래의 사례는 “후원자 또는 후원회의 정체”라는 주장을 펴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례 2>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학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후원자 또는 후원회가 있어 그에 의하여 학비 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후원자 또는 후원회의 정체에 대하여 밝혀진 자료가 없어 활동내용이 불투명하다.”

5)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요건에 대해

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히 추상적인데다가 해당범죄와 관련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 집회참여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지 않은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일단 모두 재범의 필요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 4> “52세의 나이로 활동능력이 있는 점...”

<사례 28> “40세로 활동능력이 왕성하며...”

<사례 29> “39세로 활동능력이 왕성하며...”

그런데, 위의 주장 대로라면 70세가 넘는 고령의 대상자들에게는 보안관찰처분을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70세 이상인 사람이 7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초반 1명, 70대 6명)

반면 아래의 경우처럼 사회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등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48> “장기복역으로 사회적응이 부진한 채,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② 출소기간이 일천하다

대상자 대부분의 보안관찰처분 근거에 “출소기간이 일천”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출소 후 일정기간 내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항존한다는 논리로, 출소 후 얼마를 경과해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며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다.

③ 가석방 기간중이다

가석방 기간중이라는 점을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모순된 근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기간내에 재범을 하게되면 남은 형기까지 복역해야 하므로, 오히려 재범을 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기간일 것이다. 특히 최근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 중에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사례29>,<사례42>)가 있으므로 가석방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사례 4> “가석방 기간 중...”

<사례 29> “가석방 기간 중이고...”

<사례 46> “가석방 기간 중이고...”

④ 인터넷 사용을 잘 한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이용을 잘한다는 이유가 재범의 위험성의 표지로 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다.

<사례 28> “인터넷 사용을 잘하므로 북과 연락을 쉽게 취할수 있어서…”

⑤ 공범들이 출소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다른 피보안관찰자나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접촉 이상의 차원에서 회합하였다거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즉, 같은 조직사건의 ‘공범’끼리 만남을 갖는 것이 재범의 우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근거가 희박함에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그 ‘공범’을 만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범이 출소’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두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례 13> “공범으로 함께 했던 ○○○이 출소하는 등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동종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

<사례 40> “박노해 명상수필집 ‘사람만이 희망이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 출소자 환영대회에 참석하는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례 41> “공범인 이○○이 보안관찰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사례 42> “공범인 안○○를 따르고 있다”

<사례 28> “공범들이 출소하여 재범우려…”

<사례 43> “사업, 동업 등으로 타 보안관찰자와 수시접촉하는 등으로 미루어…”

<사례 3> “단식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피보안관찰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위와 달리 피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만났다가거나 또는 본인이 공개적인 활동을 한 것도 재범의 위험성 범주에 든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례 19>의 보안관찰처분³¹⁾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인권운동 등 관련하여 활동상황이 노출되어 따로 관찰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보안관찰처분

31). <사례 47>의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시 법무부는 의견서(2000.2.22)를 통해 “남한에서 걸으려는 통일이나 민주화니 외치며 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재야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는 보안관찰의 지속적인 실시로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소판결을 내렸다.

<사례 32>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기자협의회 모기자)을 10여회 접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례 11> “…출소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부를 접촉하였다”

<사례 4> “민가협·인권위원회등 재야단체에 출입하여 문제인사들과 수시 접촉…”

6) 법적 권리를 제한한 보안관찰처분 요건에 대해

① 재심청구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 불만을 표시한다

법무부는 대상자가 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원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유사시 위해활동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 행위 자체를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에 명시된 특별소송절차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심청구할 권리를 부정하는, 지나친 권리제한이라 할 것이다.

<사례 25> “현재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등 표면상 위해활동은 발견되지 않으나, 유사시 자진하여 위해활동을 하거나 위해분자의 활동에 동조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므로…”

<사례 46> “경찰의 고문 수사에 의하여 간첩으로 몰려 평생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공공연히 발언하면서 재심청구를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②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보안관찰법 제 23조에서는 “법무부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했을 경우, 원고 승소판결(처분취소판결)이 났을 때는 처분 취소가 되지만 패소판결(처분취소청구 기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기간갱신 청구 및 결정시 이를 근

거로 “보안관찰처분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표지로 삼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는 사례가 있다.

실제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권리구제 수단인 ‘취소소송’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소송을 꺼려하는 이들은 이 소송에서 만일 패소할 경우, 이것을 이유로 기간갱신 처분결정이 난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취소 소송한 것을 문제삼아 그것을 재범의 위험성 요소로 보고,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취소소송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이며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근거는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례 46> “보안관찰 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11.24 패소 처분한 점...”

7) 개인의 주변 환경을 문제삼은 보안관찰처분 요건에 대해

아래의 사례는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릴 때,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주변환경, 즉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객관적’ 환경 자체를 문제삼아 이를 재범의 위험성으로 삼고 보안관찰처분을 내린 경우이다. 특히 대상자의 가족관계(가족력)을 문제삼은 것은 연좌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위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① 현 주거지는 간첩접선 및 침투간첩 은신, 간첩 거점확보 등에 용이하다

아래의 사례는 대상자가 살고있는 주거지를 문제삼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을 내린다면 인적이 드물고, 북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자라면 모두 피처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 24> “현 주거지는 민가와 떨어져 있어 인적이 드물고 경북 ○○○ 소재 ○○○ 자연휴양림에서 강원도 ○○○ 방면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간첩 접선 및 침투 간첩 은신, 우회침투 간첩 거점 확보 등이 용이하고”

한편 위 <사례 24>의 경우에는 현 주거지의 위치문제 뿐 아니라 근처에 공동체 생

활을 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대상자 자신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음에도 경찰 및 검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이 경우는 주거지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례 24> “현 거주지 인근에 엘리아 복음선교회라는 유사종교를 신봉하는 ○○○○가 있어 동 단체에 좌경의식화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②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가족 등 타인의 (북과 관련된) 전력이나, 북에 가족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것으로 본 사례도 있다. 북에 가족이 있는 한, 이들은 계속하여 갱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4>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연고관계도 불량하며...”

<사례 6> “이북에 가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월북할 수 있다는 것 등...”

<사례 9> “북한에 처 ○○○(65세), 자 ○○○(44세), 자 ○○○(41세)등이 거주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유사시 재북 가족 및 배후 인물과 접선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사례 17> “북에 가족이 있고”

<사례 18> “재북가족이 있어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특히 아래의 사례는 가족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은 것으로 이는 연좌제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 8> “부 ○○○이 여순반란 사건에 가담하여 처형당하고, 형이 일본 거주 중 자진 월북하는 등 연고관계도 불량하며...”

<사례 23> “아버지인 ○○○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간첩침투가 용이한 곳에 살고 있으며...”

<사례 14> “부친이 남파간첩이어서 북한에 친척들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IV 보안관찰처분 내용상의 문제

1. 법규해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는 모두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7조 2항에 의거,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1)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

1) 원시신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소제공을 받은 자(법 제20조제3항)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1항)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24조 1항 1. 국외여행관계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 갱신일자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 거소 제공을 받은 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정기신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2항)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3) 변동사항 신고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원시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소제공을 받거나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3항)

4) 주거지 이전 및 여행신고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거소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2항)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 이전예정지, 이전예정일, 이전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2. 국외여행의 경우 - 여행대상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내여행의 경우 - 여행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기타 필요한 사항

5) 신고의무 불이행시 형사처벌

정당한 이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27조 2항)

한편 신고방법은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

하 "지·과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

(2) 지도 및 재범방지 조치

1) 지도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법 제19조 1항)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② 지도의 방법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1항)

2) 재범방지 조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9조 2항)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것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이때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2항) 사법경찰관은 위 조치를 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3항)

재범방지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4항)

3) 처벌조항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7조 3항)

2. 법규상의 문제점 분석

(1) 신고사항의 광범위성, 추상성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안관찰자는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 가족, 직업, 종교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 마다 자신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 원시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여행 목적부터 심지어 동행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듯 보안관찰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경찰이 행정력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과도하게 신고내용을 설정해 둔 것으로, '재범 방지'라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과잉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 제27조 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그 신고 내용과 방법 등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신고내용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또한 자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2) 먼저 원시신고를 살펴보면, 그에 포함되는 내용은 '출소전 신고' 등을 통해 사법경찰관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출소전 신고' 내용 외에 원시 신고에 새로이 포함되는 것은,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관할경찰서 및 신

고일자이며, 국외여행 관계 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이미 확보했을 경찰에게 다시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이 “원시신고”는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이 아니라, 피처분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상기시킴으로써 향후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서약 같은 장치로 해석되는 것이다. 또한 새로이 신고해야 할 내용 가운데, 직장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신고하게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3) 다음으로, 정기신고의 문제이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신고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규정의 추상성도 문제이거나 너무나 광범위하다.

예컨대 ‘주요활동 사항’은 사람의 가치체계나 혹은 직업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범위 또한 대단히 막연하여서 신고가 어떤 유의미성을 지니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경찰의 잣대에 의해 광범위하게 피보안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할 뿐이다. ‘3개월간의 모든 여행사항’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활동내용, 여행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피처분자의 제반 활동반경을 제약하겠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기신고가 결국은 피보안관찰자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는 점이다. 3개월마다 주요활동을 신고하라는 것은 결국 피보안관찰자로 하여금 매일 자신의 일상을 기억하고, 신고할 내용을 정리하라는, 즉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강제하고 제약하라는 강요인 것이다. 실제로 조사자 가운데서는 어떤 활동(일)을 할 때마다 이것은 신고할 내용인가 아닌가를 갈라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증언한 이도 있었다.

또한 통신,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 장소, 내용을 신고하게 한 것은 감시와 통제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게 하는 법, 결국 사상감시 체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기신고의 내용 중에는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야말로 경찰에게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최소한 이 점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4) 다음으로, 주거지 이전 및 여행신고 부분을 살펴보면, 10일 이상을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거주예정지, 여행 예정지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그 신고

영역이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행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 여행의 목적이나 동행자에 대한 파악을 선행함으로써, 여행 전반에 대한 경찰의 감시 또는 조치사항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여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사전에 여행을 신고한 사례에서는 경찰이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2) 지도 및 재범방지 조치의 문제

1)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피보안관찰자에게 행하는 지도와 재범방지조치는 그 내용의 광범위함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지도'는 피보안관찰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하여 보안관찰법상 형벌 등의 강제조치가 가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피보안관찰자에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³²⁾. 그러나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게 한 것이나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항상"이라는 점 역시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지니는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법경찰관리의 기준과 성향에 따라 때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지도의 방법으로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외에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피보안관찰자 본인 뿐 아니라 실제 가족이나 지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로 인해 '지도'가 피보안관찰자의 사회 재적응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생활의 불안정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음으로 재범방지 조치는 보안관찰처분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과도한 사생활 개입이 빈발하도록 하는 주원인이 되는 규정이다. 시행령에서는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32).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물론 이 법 상에서는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보안관찰법 상 '지도'는 그 성격상 '행정지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범방지조치의 규정을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지니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은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 통신을 금지하는 것과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또한 집행권자의 판단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행위들로 인해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예컨대 집시법, 폭력 등)에 따라 충분히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단순한 회합에 대해서도 ‘만남’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고, 또한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조차 과도하게 금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법경찰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로 인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3. 운영실태를 통해 본 인권침해

(1) 지도 방법의 문제

사법경찰의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보안관찰법 제 19조 1항에서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한다는 것과 시행령 제 25조 1항에서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관찰 및 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사법경찰의 지도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법경찰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 운용에 있어 사법경찰은 지도의 최소한의 한계인 ‘협의 및 협조, 신뢰와 협력’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은 채,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친지로부터 피보안관찰자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가족 외 고용주나 이웃 등의 주변인물에게 피보안관찰자에 관해 묻거나 수사협조를 강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얻어낼 수 없는 성질의 정보를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 공권력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물들로부터 쉽게 얻어내겠다는 극단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는 피보안관찰자들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입게 될 명예훼손, 불안감 및 일상생활의 파괴 등의 인권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인물 탐색

<사례 4> 하루는 내가 ○○○ 선생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하자, 집 주인이 자기도 그쪽에 불일이 있다며 함께 동승을 했다. 결국 집 주인이 ○○○ 선생 장지까지 따라와서 내가 “통일애국인사 ○○○ 선생 정신이어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담당경찰한테 보고를 해 준 적이 있다. 그 일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장례식에 왜 갔어요?”라고 말하며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한 적이 있었다.

<사례 28> 인터넷 사용을 이유로 갱신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니고 있던 성당의 신자들한테까지 찾아와 “요즘 뭐 하고 지낸다고 하더냐?,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더냐” 등의 이야기를 묻기도 했다.

<사례 13> 집을 옮기려고, 밤에 주인 아주머니와 이사 문제를 상의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담당경찰이 전화해서 “왜 말도 안하고 이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그 때 집주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렇게 변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씩씩한 것은 물론이다.

<사례 49> 아내와 내가 자주 가는 사무실 근처 식당 아주머니에게 경찰이 와서는 “저기 사무실에는 아저씨도 자주 나오시나? 저기에 몇 명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례 48> 외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기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 사람에게 길 안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손님이 오기로 한 바로 전 날, 그 이웃이 “내

일 함께 못 다니겠다. 경찰이 여러 번 전화해서는 당신과 만나고 다니느냐며, 어제도 함께 장에 갔다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마도 당신을 감시하나보다. 그래서 나보고 당신을 만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협박했다”며 거절한 적이 있다.

<사례 24> 2회 갱신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불러서 갔더니 경찰 책상 위에 ‘○○○(본인 지칭) 협조자료’ 파일이 있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경찰에게 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들인 것 같다.

<사례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손님들이 있을 때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물론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온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또 뭐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사례 8> 직장을 가지면 항상 직장으로 찾아와서 내 상사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감시하게 했다. 특히 92년 4월,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공사일을 할 때 그곳 경찰서 형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당신 담당경찰이 당신의 소재를 확인하러 와서 파출소장을 만나고 간 적이 있다”고 했다. 또 공사장 관리소장에게 그 형사가 “당신이 ○○○(본인 지칭)에 대해서 보증을 서라”며 종용한 적도 있었다.

<사례 21> 행사에 참석할 때 나와 함께 다녔던 대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아버지가 공무원인 한 학생의 집에 경찰이 찾아가서,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딸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같이 다니는 것을 아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사례 23> 한 번은 담당경찰이 언니집 아파트경비 아저씨께 “○동 ○호에 보안관찰자가 있으니 주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 당시 형부와 언니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꾸 찾아와서 내가 거기에 머물기가 곤란했다.

<사례 40> 직접 내게 물으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은 주변에서 탐문을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때 경찰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자료 가운데는 ○○교회 전도사로부터 나에 대한 동태를 파악코자 경찰이 작성하고 진술한 조서가 있었는데

데, 그 내용에는 출소이후 불순한 언동이나 특이한 방문자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 등이 있었다.

2) 가족 및 친지에게 과도한 동태파악을 한 경우

<사례 48> 담당경찰이 사업을 하시는 형님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서는 “요즘 동생 뭐하냐, 별 일은 없느냐” 등을 물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내가 강연회 등으로 바쁘기도 했고 내게 물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형님께 하는 것 같다. 형님은 그들이 경찰 이니까 “어서 오시라”며 차도 대접하고 묻는 말에 공손히 대답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몹시 상하셨다고 한다.

<사례 41> 가족들에게 전화나 방문할 때 “○○(본인 지칭)가 집회나 모임에 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가지 못하게 말려라”라는 말을 하여 가족들 모두를 심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든다.

<사례 40> 어머니는 경찰들이 집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신다. 경찰이 출소 후에도 전화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

3) 직장까지 찾아와 동태파악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처분자의 직장까지 찾아와 동태파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처분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갖게된다. 특히 자신들의 소재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동태파악을 직장까지 와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처분자로 하여금, 큰 불안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사례 13>의 경우처럼 자신의 직업의 범위를 스스로 한정하는 등 활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고, 위축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례 40> 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경찰이 자주 찾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모임에 나가느냐 등의 일상에 관한 질문을 해서 내가 “이런 일로 경찰을 영업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우니 자주 안 봤으면 좋겠다. 기왕 왔으니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한 적이 있다.

<사례 12>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경찰이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회사 경비실로 찾아왔다. 그가 근무중인 나를 갑자기 불러내어서 굉장히 곤란하고 불쾌했다. 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잘 모르는데 경찰이 다녀가곤 하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

<사례 13> 출소 후에는 경찰의 감시를 의식해서 스스로 친구들과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지도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자꾸 할 일 없이 다니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직업을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초조했다. 직업을 찾을 때에도 경찰이 직장상사에게 내가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화를 걸어 감시할까 봐 '공무원은 물론이고 안정되고 조직적인 기업이나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학원강사 등으로만 직업의 선택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2) 지도 및 조치내역의 문제

보안관찰법상 지도의 내역은 '보안관찰해당범죄자와의 회합통신금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특정장소에의 출석요구'이다. 이는 그 자체로 피보안관찰자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집회나 시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보안관찰자의 기본권을 사법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한계로서 '조치의 취지 설명 및 조치사항의 서면통보 및 조치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에 대한 부당침해 금지' 역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³³⁾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법경찰은 법의 한계를 넘어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에의 참가조차 저지하고 여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 시에 조치의 취지 설명이나 서면 통보를 하기 보다는, 아예 집에 눌러 앉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저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5조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합통신 금지 또는 집회 참석 금지와 과도한 간섭

행사 또는 집회를 참가하는데 있어서도 경찰은 과도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은 사전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사자는 경찰이 금지하는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나, 참가할 의향이 없음에도 경찰은 '집회를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예단만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집회시위 참가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집으로 찾아와 아예 눌러 앉아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8> 1998년 봄,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찾아온 적이 있다. 처음에는 웬일인지 영문을 몰랐는데, 나중에야 대통령이 내가 살고있는 ○○를 방문하는 날이란 걸 알았다. 그날 담당경찰이 오전에 집으로 찾아와서 하루종일 내가 아무 데도 못나가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례 17> 수감 때부터 계속 도움을 주던 ○○교회 교인들이 출소한 장기수 몇 명을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기로 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찰에게 "우리가 선생님들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 당일 아침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여행에 가지마라"며 아예 눌러앉아서 내가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저녁까지 감시를 한 적이 있다. 정치적인 집회도 아닌 여행도 못가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사례 7>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담당경찰이 방해했다. 그는 "그들과 만나면 당신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며 만나지 말라고 내게 말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내 동생도 피보안관찰자이기 때문에,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그와 만나는 것도 피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이 된다는 사실이다.

<사례 4> 1998. 5. 17 아침, 경찰이 전화를 해서 "광주 5.18 집회에 참가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집회에도 못가느냐"고 따진 적이 있다.

<사례 8> 보안관찰 첫 처분을 받은 후,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민가협 집회나, 재야집회 등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례 25> 1996년 3월 말경 서울에서 열리는 한 행사(“조작간첩 사례발표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담당경찰이 행사 전날 집으로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다음 날 새벽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자,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따라 영등포역까지 온 적이 있다. 내가 항의하자, 경찰들은 “우리도 행사장까지 따라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둘러대면서 사라졌다.

<사례 32> 2002년 아시안게임때 “혹시 부산에 가냐? 북측 응원단 만날까봐 전화했다”며 전화를 했고, 8.15때는 아침마다 “서울에 혹시 안가느냐”는 전화가 매일 왔다.

<사례 42> 99년경 북한 공연단이 왔을 때 “안가는게 좋지 않겠냐”, 99년경 “외국인 누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 어디에 가느냐”, 99년 민가협 주최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는 전화가 왔다.

2) 사법경찰의 자의적인 지도와 조치로 인한 침해

사법경찰관리는 회합·통신이나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그 외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까지 깊숙히 개입해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태파악은 피처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기본이고, 인간적인 존엄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안관찰 내용 가운데 피처분자의 의식적인 측면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 <사례 48>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간섭을 받은 경우이다.

<사례 48> 한 번은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알고는 전화해서 “어제는 뭐 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갔냐?”고 따져 물었다. 정말 불쾌했다.

<사례 48> 담당경찰이 “우리 친구하자”며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뭐 하나, 오가피 좀 먹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정말 불편했지만 ‘어쩌겠나. 내가 약자이고 그가 강자인데’라는 생각에 오는 대로 받아주고, 차 대접도 하고 닭도 잡아주고 했다. 그 후로 경찰은 심심하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농담하고 그래서 정말 신경이 쓰였다.

<사례 48> 최근에는 강연회를 다녀오면, 경찰이 전화해서 “강연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 “당신 감옥 갔다온 이야기도 하느냐.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강연의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했다. 너무 기분이 나빴다.

<사례 41>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연애시절이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라는 지극히 사적인 일을 할 때 누군가 감시하고 따라 다니며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심적으로 무척 괴롭고 답답했다.

<사례 15> 집에서 글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경찰이 전화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와 도장 찍을게 있다고 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담당경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또한 <사례 32>는 정치활동 및 모임참가를 과도하게 금지당했다.

<사례 32> 검사는 갱신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민주동맹회 회장이나 개혁신당 추진위원 등 대중활동도 하지 말고 생업에만 종사하라”고 얘기했다. 결국 이것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 이외의 어떤 활동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한편 경찰은 불법적인 도청이나 가택침입 등을 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자신이 도청이나 미행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활동반경을 스스로 제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례 8> 경찰이 도청을 하는 건지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한번은 집에서 아내와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경찰이 “사모님과 싸웠다면 서요”라고 한 적이 있어 부부싸움한 것도 경찰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모든 일상생활이

전화도청과 경찰의 감시 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사례 20> 담당경찰이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계속 미행하면서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인데, 경찰의 동태보고서에는 <△△△△>에서 일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여러 단체가 함께 쓰고 있어서, 사무실 앞에 간판이 여러개 달려있다. 그런데 그 동태보고서에는 다른 단체에서 일한다고 적어놓은 걸 보니 아무래도 미행을 하는 듯 하다.

<사례 32> 경찰의 미행 등을 통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이 심하다. 예컨대 2001년 겨울, 민주동문화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올해 갱신을 위한 경찰 조사시 우연히 보게 된 경찰의 동태보고서에 그날 행사의 식순, 참가자 명단, 내용 등이 다 적혀 있었다.

<사례 4> 빨래터에서 씻고 집에 돌아오니 방의 문고리가 떨어져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이 사람을 시켜 방에 있는 책과 유인물 등을 가져간 것이었다.

아래는 사법경찰이 업무를 방해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직업권을 침해한 경우이다.

<사례 15> 1998년 12월 초 쯤, ○○○○신문에 신문사 기자의 추천으로 2개월간 글을 연재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서 수락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신문사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어렵겠다”면서 전화를 했다. 신문사의 갑작스런 처사가 경찰, 검찰쪽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이 생겼다.

<사례 3> 단식원을 개설하려고 준비할 때, 담당경찰이 전화를 해서 “무슨 회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했다. 또한 단식원을 개설한 후, 거래처 사람들에게 “왜 ○○○와 같이 일하느냐”며 위협한 적도 있다.

<사례 18> 내가 동의보감 일본어판을 2003년 일본에서 출판하는 등 소위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 한다고 보호해 주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발급을 해주지 않아 출국을 어렵게 하고, 여행하면 신고하라

는 등으로 신경 쓰이게 하여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래의 사례는 사법경찰이 보안관찰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 및 주변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대하여 주변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이다.

<사례 38> 처분 이후에는 집회 참가 등과 관련해서, 내가 아닌 부인의 참석여부를 묻는 전화가 온 적이 있다. 부인이 전교조 활동을 하는데, 담당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부인이 어느 모임, 집회에 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래의 사례는 사법경찰이 피보안관찰자의 주변인물들에게 그가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림으로써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일 자리를 잃게 만드는 등의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이다. 특히 사법경찰의 조치로 인해 피보안관찰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경우는 '보안관찰자 및 피보안관찰자의 사회 적응을 원조'한다는 보안관찰제도 본래의 목적 수행을 그를 집행하는 경찰이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4> 담당경찰이 나를 후원해주던 사람들에게 내가 "간첩"이라며 전화를 해서 후원금이 끊긴 적이 있다. 한번은 누가 찾아와서 10만원의 후원금을 주고 간 일이 있었다. 그때 한창 여러 단체들에서 북한 수해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라 나도 바로 그 돈을 수해돕기 운동에 냈다. 그런데 경찰이 그것을 알고, 내 통장 계좌를 추적 해서 내가 출소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1~2만원씩 후원을 해주던 교인들에게 "○○○(본인지칭)이 남파간첩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원금이 다 끊긴 일이 있다.

<사례 7> 한 때는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식당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고 남의 집안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또 경찰이 그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만두라고 했다.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그 곳 주인이 내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조회를 했더니 과거경력이 나왔고 그 곳 담당 경찰이 뒤늦게 내가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일자리를 못 얻도록 방해했다.

<사례 25> 생계를 위한 일에 대해서마저 힘들게 만든 적이 있다. 건강원을 개업했을

때, 원 사건 당시 나를 고문수사했던 수사관이 구청에 개업 허가를 하지 말도록 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구청 위생과 직원이 건강원에 찾아와 둘러보면서 “혹시 ○○○ (수사관 지칭)을 아느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불편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자 위생과 직원이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건강원을 내시면 그 사람과 더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사례 4> 자활후견기관에서 계속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번 달부터 만60세가 넘었으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다른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이 있어도, 자활후견기관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관계기관에서 사람이 찾아와 일을 시키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었다.

아래의 사례는 사법경찰이 피보안관찰자와 접촉하는 다른 인물에 대한 동태파악을 요구한 것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인격을 모독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이다.

<사례 4> ○○○ 선생 1주기 기일에 참가하려고 하자 담당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거기 가서 누구누구가 왔는지, 산소가 어디인지 보고 오면 정보를 줘라. 그러면 술을 사주겠다”는 말을 했다. 기일에 갔다온 다음날, 담당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보를 달라고 했다.

2) 경고 및 조치서

경고 특히 조치서가 당사자에게 날라올 경우, 당사자는 더욱 큰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례 2>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수차례의 출석요구서가 왔다. 출석요구서를 몇번 받다가 수취를 거부하니 “모월 모일 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당하고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계속 왔다.

<사례 27> 정기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담당경찰로부터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에 의

거, 정기신고를 하라. 만일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받게 됨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조치서를 받은 적이 있다.

(3) 피처분자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

1) 정기신고 유형을 통해 본 인권침해 사례

본 조사결과 피처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3개월마다의 정기신고의 경우, 피조사자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의 조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경우, 경찰과의 ‘합의’하에 신고에 응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진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보안관찰제도로 인한 본질적인 인권침해는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이나 위축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자진신고

이 경우는 피보안관찰자가 기간갱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보안관찰처분을 하루빨리 면제받고 싶거나, 담당경찰의 신고의무를 잘 준수하면 다음에는 면제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진해서 정기신고를 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보안관찰자가 자발적으로 정기신고를 하고 다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도 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갱신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안관찰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여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사법경찰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기도 한다.

<사례 50>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는 3개월마다 1회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을 만나 전해주고 있다. 여행 및 변동사항도 되도록 신고하여 다음 처분에서는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 내가 전향서까지 쓰면서 출소를 하려고 한 이유는 가족들과의 단란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싶어서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아, 집으로 경찰이 불쑥 찾아올 때 보여지는 아이의 두려운 눈빛이나 아내의 불안함을 없애주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갱신이 되고 있고, 신고의무를 저항하지 않고 이행하니까 경찰이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 전향서와 맞바꾸면서 얻으려했던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이 파괴될 때 가장 괴롭다.

<사례 11> 첫 처분 결정이후 갱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협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고향에 내려갈 때도 신고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처지가 처량하다고 느끼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아니까 자진해서 신고한다. 그 결과 물리적인 침해는 받지 않았으나 심리적인 패배의식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협조했는데도 2회나 갱신처분을 받은 지금은 울타리를 쳐 놓고 그 안에서 살아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울화가 치민다.

<사례 14> 보안관찰처분에서 의무사항은 하나도 빠지 않고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의견서를 쓸 때는 '반성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쓰는 것 같다.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실제와는 다른 의견서를 낸다. 그런 이유로 소송에서도 지고, 번번히 갱신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을 잘 지켜 어떻게든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나고 싶다.

나) 경찰의 조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담당경찰도 피보안관찰자도 보안관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이다. 담당경찰은 보안관찰법상의 지도와 조치를 하는 것을 단지 반복적인 업무로만 여겨 3달에 1번씩 전화나 방문을 해서 양식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피보안관찰자는 이에 대해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응하게 되는 것이다.

정기신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보안관찰제도가 형식만 남은 빈껍데기의 법이라는 점과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는 의심의 근거로 작용한다.

<사례 1> 담당경찰이 3달에 한번 전화를 해서 일상생활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정기신고를 하고 있다.

<사례 16> 처분결정 후부터 지금까지는 3달에 1번만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 간다. 작성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확인하지는 않고, 안 적겠다고 하면 "그래도 형식이니까 한 두 가지 사항은 적어라"고 한다.

<사례 40> 정기신고는 경찰이 나를 직접 찾아와 몇가지 질문을 통해 동태를 파악한 후, 직접 작성하는 것 같다.

다) 피보안관찰자와의 '합의' 하에 경찰이 알아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경우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법을 의식한채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답답하므로 담당경찰과의 협의 하에, 경찰이 피보안관찰자가 신경쓰지 않도록 알아서 정기신고를 하고, 피보안관찰자는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의 문제점은 피보안관찰자가 자신의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로 제출될 동태파악을 위한 정기신고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과 보안관찰제도로 사생활의 전반을 감시당하고 있는 피보안관찰자가 그것을 일상으로 여겨버리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안관찰법 상의 정기신고가 피보안관찰자들의 알 권리와 사생활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3> 담당경찰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일상에 대한 안부를 묻고 신고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작성한다. 처음에는 양식서를 많이 주며 3개월마다 작성하라고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의미도 없다는 생각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

<사례 49> 보안관찰처분결정이 난 후 결정서를 집으로 가지고 와 전해주면서 정기신고서를 여러 장 주고 갔다. 그후 1~2번은 내가 작성해 놓으니 가져갔고 그 후로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3개월에 1번씩 전화만 하여 안부만 묻는다.

라)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보안관찰법상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보안관찰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사법경찰의 조치서와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체포 및 형벌 등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활 전반을 방해하고 있다.

<사례 39> 내가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에게 또 형을 주는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경찰들도 사문화되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보안관찰을 나만 지켜야 한다는 게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찰들도 신고의무 등을 제때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고, 보안관찰을 적용받는 사람

들만 신고의무 등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례 2>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적 자유로서 자유와 권리의 기본이다. 감옥에서는 사상전향과 준법서약서가, 출소 후에는 보안관찰법이 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신고를 거부한다. 더구나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안관찰법을 인정하고 지킬 수 있겠는가.

<사례 37> 나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안관찰법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감옥살이를 나와서 보안관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쉽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라 이 악법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싶다. 전면불복종을 선언한 이후 언제든지 끌고 가면 끌려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다.

<사례 41> 나는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 출소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소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면에 담긴 의미는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복종 한 것이다.

(4) 보호의 문제

사법경찰의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는 보안관찰법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목적은 제 1항과 제 2항에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방법은 '주거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환경의 개선, 기타 원조'이다.

이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 한다는 보안관찰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 측의 유일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피보안관찰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노력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법경찰의 '보호'는 실제로는 그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측이 제공해 주는 취업이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건강이 약화된 피보안관찰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일이거나, 피보안관찰자의 기존 취업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7> 장기수 선생님들 공동체에서 식사를 준비해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경찰이 “그 곳에서 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모두 피보안관찰자들이므로 그들과 혼합한 사실로 잡혀갈 수 있다”고 했다. 경찰들에게 “나는 이 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일로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취직을 시켜주라”고 했다. 그래서 경찰이 소개시켜 준 일이 지하철 역 청소였는데 월급은 30만원이었다. 그래서 내가 “난 그만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을 주선해 주든지 아니면 내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말리면 이야기 좀 들어라”고 한 적이 있다.

<사례 9>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초반에는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고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지만, 내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경찰이 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 초, 3년간 일을 하던 건설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그만 두기 위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건설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은 커녕 모르는 척 했다. 그때부터 겉으로 경찰들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절대 경찰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사례 14> 출소직후 취직자리를 얻기 위해 경찰서장한테 신원보증을 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범 우려성이 있다”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데 경찰서장이 그런 것을 쓸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사례 46> 출소신고를 하러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일자리 등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사례 24> 담당경찰이 취업알선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일이 ○○ 원전에 가서 노역하고 일당을 받는 것이었다. 거절했다. 친구들 중에 원전 반대운동을 하는 이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일을 하겠는가.

V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

1. 법규해석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 23조)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3조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중 가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4조)

2. 법규의 문제점

(1) 일반행정소송과는 다른 1심 관할법원 및 제소기간

보안관찰법 제23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1심 법원을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소기간 역시 일반 행정사건의 90일보다 30일이나 짧은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먼저 1심 관할법원의 문제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경우 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은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원의 1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차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평등권 위반)

2) 다음으로 제소기간의 문제이다.

현 행정소송법(제 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은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도 없이 제소기간을 축소하고 있다. 이 역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특별5부)³⁴⁾은 2000년 4월 19일, 보안관찰법 제23조에 대해 “이 법규정은 관할이나 제소기간에 관해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배제하고 그보다 짧은 제소기간과 다른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98년3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입법자가 개별행정법규를 정비하면서 불복절차를 거의 통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 했다.

(2)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³⁵⁾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보안관찰자는 그 처분이 부적법 하더라도 판결로 취소되기 전에는 계속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더라도 판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의 금지조치를 무시하였다면

34). 이는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000년 4월 19일 안모씨가 “보안관찰법 제23조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제청신청(2000아106)을 기각하면서 지적한 내용이다.

35). 여기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되며, 보안관찰처분 외에도 보안관찰법 제11조 소정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다투는 소송도 포함된다. 보안관찰법 제23조, 제24조 참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기간 2년이 만료되어 버리면, 사법적 판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2) 이렇듯 행정소송 과정에서 보안관찰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보안관찰법 2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성격이 형사별로서의 제재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본권의 제한정도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잠식되어도 무방하다고 볼 정도로 가볍지가 않다”며 (집행정지 내지 가처분을 원천봉쇄하는 규정은)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성에 치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해 피보안관찰자로서는 사생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상당범위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탈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조항은 피보안관찰자로 하여금 상당범위의 자유제한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피보안관찰자의 기본권 보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³⁶⁾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위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소송 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1) 소송 중에 보안관찰 처분이 지속되었던 사례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9·86, 99헌바36(병합)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등. 2001.4.26. 김선명 씨 등 청구인들(변호인 조용환)은 구 국방경비법 위반죄(간첩 등)로 42년간 복역해 오다 1995년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뒤 법무부가 계속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자 보안관찰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피조사자 50명 가운데 보안관찰처분(또는 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한 이는 12명(소송중 1명 포함)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소송에서 처분자 승소가 8명, 국가 승소가 3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송 중에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을 요구 당했고, 지도나 조치 등을 당하기도 했다.

<사례 2> 2002.2.1에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2002.4.8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 중에도 담당 경찰이 여전히 출소신고를 종용하며 집으로 한번 찾아왔고, 전화도 1~2회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우편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신고 양식을 보내오고 있다.

<사례 29> 취소소송 중에도 한 달에 한번 꼬박 꼬박 전화 연락을 했으며, 두 달에 한번씩 경찰이 찾아와 만났다.

(2) 소송 기간 중 처분정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기일을 넘겨, 결국 각하된 사례

<사례 27> 1996. 2. 28.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뒤 그해 4.10에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년 뒤인 1997. 4. 18. 에서야 법원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1997년 5월 7일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판결을 보안처분의 효력이 만료되는 1998. 2. 27. 까지 하지 않았으며, 결국 1999. 1. 26.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서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당하였다. 그래서 보안관찰법 제24조에 대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사건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금지를 한 보안관찰법 24조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여전히 소송중인 이들에 대해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사례 2>는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중에 법원에 보안관찰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2003.1.). 처분이나 집행을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고, 이는 사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연락하는 사례

아래의 사례는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가 되었음에도 경찰이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한 경우인데, 이로 인해 처분 취소자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41> 취소소송 기간에는 전화로 “소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며 진행상황을 묻거나 안부를 물었다. 그 뒤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처분취소가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그 후로도 2~3차례 더 전화해서 “형사사건(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사건) 항소심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었다. 내가 “직접 알아봐라. 나는 더 이상 피보안관찰자가 아니니 이런 전화를 내게 할 이유도, 내가 대답할 의무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

<사례 23> 기간갱신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담당경찰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하니, “나는 재판한 것도 몰랐다. 판결문 한 부 달라”고 했으며, 그 이후로는 “경찰서와 파출소 수준의 관리는 해제되었다”는 전화를 한 뒤 다른 연락은 없다.

(4) 처분취소자의 의식상태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신분은 다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된다. 즉,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다하더라도 2년의 기간에 대한 처분의 취소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 다시 처분이 내려질지 모르는 신분인 것이다.

따라서 피조사자 가운데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이들 역시 이러한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5> 현재는 처분 취소자이지만 (보안관찰처분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심란해 진다. 또 지금의 남북화해분위기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 건을 빌미삼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극적이다.

<사례 36>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된) 현재도 미행이나 도청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

언제 다시 피보안관찰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다.

<사례 40> 현재는 처분 취소상태이고 경찰과의 접촉도 전혀 없기에 평소에는 보안관찰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 그러나 다시 피보안관찰자의 상태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불안감은 항상 있다. 특히 취소가 되어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다시 피보안관찰자가 된다면 더욱 괴로울 것 같다.

<사례 41> 승소해서 처분취소자인 지금도 여전히 언제든지 다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완전한 승소가 아닌 잠정적 승소 상태'이다. 그래서 승소판결 직후에는 흥가분했으나 지금은 늘 불안감이 남아있다.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 2절 실태조사 보고서

제 2절 보안관찰대상자 실태조사 보고서

본 조사연구는 조사항목을 작성한 후 피조사자 50명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접근하였다.

조사항목은 먼저 보안관찰처분 절차,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 근거, 그리고 보안관찰처분 내용 등 보안관찰처분 전과정에 이르는 내용을 보안관찰법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관련 문헌 연구, 전문가 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완성된 조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피조사자 50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면접 인터뷰와 함께 피조사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 관련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피조사자 50명 전원에 대해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더 사실관계에 기초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보고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피조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많은 피조사자들이 자신의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에 공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칫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에 노출될 경우, 겪게될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조사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신분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조사자 50명에 대한 개별보고서는 조사항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1. 보안관찰처분요건 및 절차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 근거
3. 보안관찰처분 내용
4.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 유형분석
5. 보안관찰법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2 14:00~17: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 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것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

2) 출소 2~3일 후에, 담당경찰관이 전화하여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1달에 1~3번 정도 담당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신고하라고 했고, 그래도 신고를 거부하자 1차례의 경고서를 보냈으며, 결국에는 3명의 형사가 타자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신고양식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름, 나이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하고 나머지 부분과 무인 찍는 것은 거부한 것 같다.

3) 출소 신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아도 경찰서에 가지 않자 검사가 피보안관찰자의 지위부여를 위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 더 보냈다. 그래도 가지 않자 이번에는 형사 3명이 타자기를 들고 집으로 왔다. 본인의 출소신고거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4)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담당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가 청구한 처분 청구서와 법무부장관의 결정문을 전달했다.

5)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에는 3달에 1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일상을 묻고 경찰들이 정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주거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미리 알고 이사한 집으로 방문하여 자신이 담당경찰이라고 이야기 한다.

6) 대규모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경찰이 전화해서 "날씨가 춥고 몸도 안 좋으시니 집에 계시라"는 식으로 은유적으로 집회참석을 말리거나 "오늘 뭐 하나"는 식으로 참석여부를 물어본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보안관찰처분 청구서에 적시된 이유는 "원사건과 관련된 각종 활동 및 보안관찰법·국가보안법·준법서약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용의자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출소후 피보안관찰자들과 계속 회합하면서 재야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함에 상당함"이다.

특히 당시 첨부된 문서인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① 1998.8.23 낙성대 만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보안관찰자 김○○ 등과 회합, ② 1998.9.10 민가협 주최 목요일집회 참석, ③ 1998.11.8 여의도에서 개최된 「98 민중대회」에 참석, ④ 보안관찰 용의자 조사를 위한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수회 불응하며 1998.11.2 경찰관이 주거지로 출장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진술거부, ④ 검사의 용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출소 후 동향과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처분 청구의 근거가 된 듯 하다.

2) 보안관찰 처분 갱신의 근거는 첫 보안관찰처분의 근거와 유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직후에는 담당경찰이 매일 전화를 하고, 1달에 1~2차례 방문했다.

2) 보안관찰처분결정 후에는 3달에 1회 전화를 걸어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에 갔었느냐"는 등 정기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듯 하다. 또 명절 때는 근처를 지나다 들렀다며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

3) 집회가 있을 때는 미리 알고 전화해서 "몸도 안 좋으신데 많이 다니지 마십시오"라는 식의 말을 하며 우회적으로 집회참가를 저지하려한다.

이에 대해 "내가 특별한 경우일지는 모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것이다"며 본인의 소신을 밝히자 그 후로는 1~2명만 방문했다.

4) 검찰이 1회 갱신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았고 2002년에 2회 갱신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또 보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직후부터 보안관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담당경찰이 "출소신고를 거부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줄 알아라. 다른 대상자들은 다 신고했는데 왜 당신만 특별하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하나 없다"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로 대했다.

2) 출소 후 출소신고 거부 문제로 1~2달 동안과 그 후 보안관찰처분 결정 초기에는 경찰의 잦은 전화와 방문으로 늘 귀찮았다. 또 이 당시에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말을 하지 않는 전화가 자주 걸려와 늘 불안하고 기분이 나빴다. 이 일로 인해 경찰에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우리들은 그런 적이 없다. 아마 다른 기관인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3) 첫 처분 결정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끊어버리는 전화뿐만 아니라 자주 걸려오는 전화와 잦은 방문으로 귀찮고 힘들었다.

4) 대규모 집회의 경우 미리 알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몸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날씨가 추운데 외출하기 힘드시겠네요” 등의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지 말기를 권유했다.

5) 보안관찰처분결정 전에는 동태파악을 위해 다른 피보안관찰자를 만나는 것을 미행했다. 출소 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피보안관찰자인 김○○씨 등과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를 경찰이 미행을 통해 알고 있다가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

6) 99년 범민련 해외동포들을 만나기 위해 여권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99년 8월 범민련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 초기에는 담당경찰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신념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첫 처분 결정 후에는 두려움이 커져 다시 신념이 약해지고 존재가 작아지는 무기력감을 받았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원래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감시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을 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되어야만 하는 악법이다. 현재는 보안관찰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경찰관들과도 잘 지낸다. 그러나 처분취소소송이나 면제청구 등이 있다면 보안관찰법을 제대로 알아서 시도해 보고 싶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2 14:00~17: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취소소송중 (2002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현재 취소소송 진행 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하기 몇 일 전, 교도관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나, 작성을 거부했다.

2) 출소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출소신고를 거부했다. 그래서 출소 후 약 2년 동안 (1999년~2001년)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서를 15차례 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2001.11.12에 오전 6시 50분경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법(6조, 27조)위반으로 체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약 36시간 경과후인 11.13 오후 6시경 풀려났다. 그후 기소되어 2001.11.14에 벌금 100만원형의 1심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중이다.

3) 검사가 보안관찰 처분 청구를 위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고지서를 수차례 보냈으나, 수신을 거부했다.

4) 2002년 1월, 광주지검에서 “보안관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니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온 적이 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보안관찰처분 근거는 검사의 청구 내용 및 취소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각종 문서에 따르면, ①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행형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 ② 수감 중 “미체를 이땅에서 몰아내고 옥중에서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등의 언동 등 소란을 피운 사실과 이런저런 이유로 648여식을 불식했다는 것, ③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비 등에 대한 (경찰) 보고서를 보면, 후원자 또는 후원회가 있어 그에 의하여 학비 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후원자 또는 후원회의 정체에 대하여 밝혀진 자료가 없어 활동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보안관찰처분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알려준 적이 없었다.
- 2) 2002년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나고, 두달 후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 중에도 담당 경찰서 순경이 집으로 한번 찾아와서 출소신고를 하라고 한 적이 있고, 전화로도 1~2회 정도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다.
- 3) 정기신고는 경찰이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신고서 양식을 집으로 보내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출소 후 경찰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냐.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이후부터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수차례의 출석요구서가 왔으나, 수취를 거부하니 “○월 ○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당하고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왔다.
- 2) 출소 후 복학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대학의 학생처장을 만나 복학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후에 경찰의 동태파악 기록일지에 이와 관련한 일이 다 적혀 있었다.
- 3) 처분이 결정되기 전, 경찰이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걸 알고 집으로 찾아와서 “아드님은 출소신고를 해야 된다.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작은 형한테는 전화를 해서 “요즘 ○○씨, 뭐하느냐”, “학교는 잘 다니느냐”, “요즘 어디서 지내느냐” 등의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이 불안해한 적이 있다.
- 4) 1999년에 출소하여 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음에도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2년 9개월이 넘는 시점에 체포되었다.
- 5) 출소신고를 거부하고 있을 때 여권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외교 통상부에 왜 여권신청이 안되는지 이유를 물으니 검찰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해놓았다고 했고, 검찰에서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재판중이라서 불허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의무 불이행의 최고형은 벌금 100만원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밖에 안되는데, 이 건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결국 정치보복의 성격을 갖는 과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이 미치는 영향

- 1)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적 자유로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기본이 된다.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감옥에서는 준법서약서가, 출소 후에는 보안관찰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을 때 전향도, 준법서약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안관찰법을 인정하고 지킬 수 있겠는가.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6 14:00~17: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87년에 사회안전법상 주거제한처분, 1989년에 주거제한 갱신, 이후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7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시 교도관으로부터 “보안처분대상자니까 출소 후 20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 출소하는 날, 경찰이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작성해 온 신고서에 무인을 찍으라고 했다. 내가 거부하자, 가족한테 무인을 받아 내가 찍은 것 처럼 가져간 적이 있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사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등을 물어봤다.

4) 1987년에 사회안전법상 주거제한처분 결정이 났고, 결정문은 우편으로 받았다.

※ 1989년에 주거제한 처분이 1차 갱신된 후, 1989년부터는 보안관찰처분으로 계속해서 처분을 받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주거제한 처분의 사유는 고지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다른 갱신사유는 기억이 나지 않고, 최근 갱신을 위한 검사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보안관찰 기간 중 재범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7차 갱신 이후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개선의 정이 없고, ② 단식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피보안관찰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③ 범민련 ○ ○ ○ 부의장, ○ ○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최근까지 각종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 처분 사실이 중하고, ④ 그 기초된 사실이 대부분 상존하고 있으며, ⑤ 그 동안 뚜렷한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처분기간을 갱신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정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찮게 구니까, 그냥 신고하고 있다. 경찰이 3개월에 한번 씩 전화를 해서 근처 찻집에서 만나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2) 집회 참가에 대해 직접적인 방해는 한 적은 없지만, 집회가 있는 날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집회에 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3) 1995.3.11 출소장기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7조(찬양, 고무)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그때 장례 관련 정보를 담당형사가 알고, 경찰서에 알려 주었던 것 같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1991년 4월경, 단식원을 개설하려고 준비할 때, 담당경찰이 전화를 해서 “무슨 회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했다. 또한 단식원을 개설한 후, 거래처 사람들에게 “왜 ○○○와 같이 일하느냐”며 위협한 적도 있다.

2) 1997년 9월경 서울에 가려고 ○○○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가기 전 날 담당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서울에 가느냐? 가지 않는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광범위하게 도청을 하는 것 같다.

3) 1998년, 온양 지역에 집을 구하기 위해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경찰과 온양 지역의 경찰이 함께 찾아온 적이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법을 의식하는 순간, 정말 한순간도 맘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분노스럽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그냥 없어질 법이 아니다. 그 자체로 사람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옥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27 20:00~23: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0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현재 보안관찰처분 6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전 교도관이 보안처분대상자라는 사실과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하라”는 고지를 해 주었다. 그러나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

2) 출소를 하고, 한달 정도가 지나서 출소신고를 했다. 이모님 댁에 있다가 외삼촌택으로 오니까 관할경찰서가 바뀌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사촌동생이 나에게 “이모부가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신고하라고 합디다”라고 하길래 “무슨 신고를 하나”라고 하면서 그냥 있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외삼촌이 계속 신고를 하러 가자고 해서 결국 경찰서에 갔다. 경찰이 하는 말이 “출소 20일이 넘었으니까 재구속해야 되겠네요”(사회안전법상 출소 후 2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해야한다)라고 이야기 해서 “그럼 가자. 나와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다. 계속 경찰들이 따라다니니까 창피하고, 가족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어서 가자”고 했더니, 경찰이 “그럼 20일 이내에 신고한 걸로 하자”고 하면서 출소신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이 출소신고서 양식대로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한 후 무인을 찍었다.

3) 출소 후 계속 여러 곳을 옮겨다녔으나, 신고한 적은 없다.

4)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5) 1990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1992년 1회 갱신후 현재까지 6회 갱신

※ 사회안전법은 1989.6.16.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출소 직후에는 사회안전법에 따라 20일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첫 처분결정은 1990년에 났고, 그 이후로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 처분의 근거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① 대상범정이 중하여 장기복역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③ 단신으로 기거하면서 공원으로 종사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고, ④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연고관계도 불량하며, ⑤ 52세의 나이로 활동능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이라고 적혀있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1차 갱신(1992년)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 "① 처분의 기초가 된 원인 사실이 대부분 상존하고, ② 그 동안 뚜렷이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자료가 없는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기간을 갱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이라고 되어있다.

■ 2차 갱신(1994년)과 3차 갱신(1996년) : 1차 갱신때의 이유와 같다.

■ 4차 갱신(1998년)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① 범정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② 남한에 단신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③ 북한에는 처와 자식 등이 거주하여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④ 가석방 기간중인 점"이 재범방지를 위한 갱신사유가 되었다.

■ 5차 갱신(2000년)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① 단신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② 북한을 동경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③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④ 북한에 처자와 형제들이 거주하여 연고 관계가 취약한 점" 등이 갱신사유가 되었다.

■ 6차 갱신(2002년)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① 남파간첩으로 범죄사실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② 정부의 생활보조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③ 민가협·인권위원회 등 재야단체에 출입하여 문제인사들과 수시 접촉하면서, ④ 북한의 주체사상,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주장을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점, ⑤ 북한에 부모·처·자·형제 등이 있는데 강제로 전향하여 복송되지 못하였다며 불만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로 삼고, 기간을 갱신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일주일 후, 담당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때 이모님댁에 있었는데 전화나 아무런 기척도 없이 집으로 불쑥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족들이 불안한데 집에까지 찾아오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고 따진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왔다.

2) 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3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3) 정기신고는 초반에는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고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해주고, 다 끝나면 무인을 찍어줬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집으로 찾아 오지 말고 너희들이 도장을 파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요즘은 찾아오지 않고 경찰이 알아서 하고 있는 듯 하다.

4) 1989년 가을, 고 김○○ 선생(전 남로당 간부) 1주기 기일에 참가하려고 하자 담당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거기 가서 누구누구가 왔는지, 산소가 어디인지 보고 와서 정보를 줘라. 그러면 술을 사주겠다”는 말을 했다. 기일에 갔다온 다음날, 담당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보를 달라고 했다.

5) 1998.5.17 아침, 경찰이 전화를 해서 “광주 5.18 집회에 참가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1990년, ○○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경찰이 통장한테 “누구 생질이 이북에 있다가 내려와서 간첩으로 징역을 살았다”는 말을 동네 이발소 손님들을 통해 온 동네에 소문을 내서 나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피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찾아와서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겠냐”며 울기도 하셨다.

2) 1990년, 공동빨랫터에서 씻고 집에 돌아오니 방의 문고리가 떨어져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이 사람을 시켜 방에 있는 책과 유인물 등을 가져간 것이었다.

3) 1991년, 부산의 당면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 출두서가 회사로 날아와 회사 사람들에게 곤혹스러움을 당했다.

4) 1992년 초, 출소장기수 고 박○○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하자 집 주인이 자기도 그쪽에 불일이 있다며 함께 동승을 했다. 결국 집 주인이 장지까지 따라와서 내가 “통일 애국인사 박○○ 선생 정신이어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담당경찰한테 보고를 해 준 적이 있다. 그 일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장례식에 왜 갔어요?”라고 말하며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다.

5) 1992년, ○○ ○○면에 있는 농장에서 소와 오리를 키우는 일을 했다. 그때 경찰이 주인을 자주 찾아와 “○○○씨 골치 아프니까 다른 데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그냥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6) 1993년 초, 이인모 선생 송환을 앞두고 부산에 한 달정도 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 담당경찰이 전화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얼굴

이 TV 뉴스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병실에 있었는데, 경찰이 1층 접수대에 가서 내 입원날짜와 입원 이유, 그리고 나중에는 퇴원까지 체크를 해 갔다고 한다.

7) 1997.12월경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경찰이 옆집 아주머니에게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우리집 열쇠의 상황을 보고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알고, 너무나 화가 나서 열쇠를 뽑아버리기도 했다. 거기서 두 달만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가면서 놔두고 간 전화기를 다음날 가지러 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왔다. 경찰이 “이사를 가면 얘기를 해야지, 왜 그냥 가시냐”고 뭐라고 했다.

8) 1998.2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경찰이 옆집 아주머니를 시켜서 우리집에 나와의 다른 사람이 자고 가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9) 1998년, 담당경찰이 나를 후원해주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후원금이 끊긴 적이 있다. 한번은 ○○○ 사무실에 갔는데, 누가 찾아와서 10만원 후원금을 주고 가서 그 돈을 복한 수해돕기 운동에 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수상히 여겨 내 통장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통장내역을 통해 내가 출소한 이후부터 꾸준히 1~2만원씩 후원을 해주던 교회 교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김○○이 남파간첩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원금이 다 끊겨 버렸다.

10) 자활후견기관에서 계속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2001.7.1. 갑자기 만 60세가 넘었으니까 7월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다른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이 있어도, 자활후견기관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기관에서 사람이 나와 나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 8월 20일경부터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남에 연고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적응을 하기도 어려운데, 또다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초반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관찰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너무 분노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외삼촌이 화를 내고, 경찰이 가족들을 괴롭혀서 나중에는 그냥 신고를 했다.

2)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고, 행동을 억압하는 보안관찰법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된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5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7 11:00~14: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시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니까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 2) 출소 2~3일 후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고, 그 이후 집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은 「출소사실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과정에서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
- 4)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을 위한 검사의 청구서는 받은 적이 없고, 1쪽짜리 처분 결정문은 받았으나 거기에는 처분 근거가 써 있지 않아 모르겠다.
- 2)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갱신근거를 고지받은 적은 없으나, 갱신을 위한 검찰 조사시 “왜 전향을 안했냐, 요즘은 어떤 단체 활동을 하느냐, 같은 사건 관련자를 만나냐, 반정부집회에 참여했냐, 국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갱신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처분 결정 후 7일이내에 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2) 정기신고는 3개월마다 한번씩 경찰이 찾아오면 질문에 답을 해준다.
- 3)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 ① “8.15 대회 등 통일행사에 가지마라”, ② “범민련 중앙위원 총회 등 범민련 행사에 가지마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출소신고를 했음에도, 보안관찰처분 결정 전에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하니까 참 짜증이 났다. 그렇지 않아도 내 구속으로 인해서 부인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자식들이 내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출소 이후 또다시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하자, 자식들이나 또 뭔가 하는게 아닌가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 경찰의 전화로 인해서 가족들의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질 때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안관찰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정신을 움아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가장 큰 인권침해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국가의 입법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전혀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인권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후진적인지 모른다. 군사 정권때의 사고로, 보안관찰대상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6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8:30~21: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89년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처분 결정, 1991년 보안관찰 1회 갱신, 현재 보안관찰처분 6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교도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출소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알았다. 출소 전 교도소에서 「보안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이 없으며, “출소후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해야한다”는 고지를 들은 적도 없다.

2) 출소 2~3일 뒤에 경찰이 무슨 문서를 가지고 와서 무인을 찍어 달라기에, 찍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출소신고였던 것 같다. 내용은 직접 쓰지 않고, 자세히 보지않아 잘 모르겠다. 신고 뒤 신고필증을 주지 않았다.

3) 출소 후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담당경찰한테 신고를 했다.

4)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 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조사내용은 원 사건에 대한 확인과 “북에 있는 가족이 보고싶으나?”는 등의 질문을 했다.

5) 1989년에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결정문은 우편으로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호관찰처분의 근거

: 보호관찰처분 결정이 난 사유에 대해 일러준 적이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북에 가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월북할 수 있다는 것 등 인 것 같다.

2) 보안관찰 첫 처분 갱신 사유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처분 결정 후 3일 안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2) 정기신고는 3달에 한번씩 경찰이 정기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오면 간단히 작성한다.

3)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진 후,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에 갔다왔냐”고 물은 적이 있다. 특히 ① 2002.5월 중순에 “광주 5.18 행사에 갔다왔냐”, ② 남북축구대회가 열린날 다음날인 9.8에 “혹시 어제 서울 갔었냐”, ③ 10월 초에 “부산 아시아게임때 경기장에 간

적이 있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결혼 초기(89년 12월 초), 정복을 입은 경찰이 내가 없을 때 집으로 찾아와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 부인은 내가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이 처한테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부인이 매우 놀랐으며, 그로인해 마음이 불편했다.

2) 여행을 방해받은 적도 있다. 1996년경이었는데, 수감 때부터 계속 도움을 주던 ○○교회 교인들이 출소한 장기수 몇 명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 준다고 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찰에 사전에 보고를 했음에도, 여행 당일 아침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여행에 가지마라”며 아예 눌러앉아서 나를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저녁까지 감시를 했다.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손님들이 있을 때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물론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온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또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경찰이 통장을 통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동태파악을 하라고 해서, 통장이 항상 내가 뭐를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출소 초기 경찰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의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거의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정기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귀찮게 하니까 그냥 한다.

2) 보안관찰법이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법이니까 지키고 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7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15 15:30~6:3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면제자 (1985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87년 1회 갱신 후 2000년까지 6회 갱신, 2000년에 면제 결정)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전, 교도관이 출소후에 출소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무슨 서류를 작성하고 나왔는데, 그게 대상자신고서 인 것 같다. 보안관찰법에 대한 이야기는 출소 후에 경찰이 알려줘서 정확히 알았다.

2) 출소 후, 경찰서로 직접 가서 출소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신고필증은 받지 않았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 및 결정고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적은 없고, 그냥 경찰이 알려줬던 것 같다. 갱신처분 청구 및 결정 고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

4) 원시신고의무를 보안관찰처분결정 후 경찰이 알려주었고 경찰서에 가서 한 것 같다.

5) 정기신고는 3달에 1번씩 경찰이 양식서를 가지고 오면 사인해 주거나 경찰서에 가서 내가 사인했다.

6) 주거지 및 기타 변동사항은 경찰서로 전화해서 알렸다. 그러나 몇해전 부터는 신고하지 않았다. 여행 신고는 고향이나 친척집을 방문하면 경찰에 알리고 갔다. 해외여행 등은 생각도 안 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기억나지 않는다.

2) 갱신 이유 : 잘 기억나지 않고 자료가 없다. 이번 면제되면서 받은 고지서 밖에 없다. 그 전에는 주지 않았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신고 후에도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서 일상을 묻거나 이런 저런일(보안관찰법상의 규정사항)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 누굴 만났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의 자질구레한 일상부터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등의 사상적인 내용까지를 물었다.

2) 검찰로부터는 갱신 때마다 조사를 받았다. 매 조사때 마다 “왜 면제 안 시켜주는

냐?”고 물으면 서기가 “누구랑 사냐?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면제시킬 수가 없다”, “한 달에 얼마 버느냐? 경제력이 없어서 면제 안 된다”고 했다. 2001년도에 면제 받기 전 조사에서는 검사가 오라고 전화했으나 내가 “안 간다. 가도 면제도 안 해 주니까 이제는 가지 않겠다. 이번에 사면복권도 받았는데 왜 면제가 안 되느냐?”고 따졌다. 그 후 경찰이 와서 사면복권증을 복사해서 검사에게 주었고, 그 뒤에 면제결정이 내려졌다.

3) 면제 이후에도 경찰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작년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잘 지내느냐”고 했으며 가끔 딸 집으로도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 있는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등을 묻는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친척집에 방문하면 그 곳 경찰이 친척집으로 방문해서 일상을 묻곤해서 굉장히 귀찮았다. 고향에 가면 시장에서 친척이나 알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아는 척을 하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잡아갈까 무서워서 아는 척을 못하겠다”며 피한다. 한 번은 친척 고모를 만났길래 반가워서 손을 잡았더니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살기가 힘들었다.

2) 3~4년 전, 밤 11시 30분에 경찰이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전화했다. 내일 서울대에서 행사가 있으니 가지말라”고 했다. 내가 “나는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려주었으니까 가야겠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 가냐’하는 오기가 생기기도 했다.

3) 아버님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형당하셨고 어머니도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받으셨으며 남동생들 역시 옥살이와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우리 가족의 형을 모두 합하면 100년이 넘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내렸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켜 버렸으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전반적인 삶이 눈물로 점철되어 있다.

4) 석방되고부터 원사건으로 인해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혼을 해서 아이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식당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주인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그 곳 주인이 내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조회를 했더니 과거경력이 나왔고, 그 곳 담당 경찰이 뒤늦게 내가 피보안관찰자라는 것을 알고는 일자리를 못 얻도록 방해했다. 6~7년 전에는 다시 생계를 위해 ○○○○에 찾아갔는데 담당형사가 신원보증을 썼는데도 인정이 안 되어서 파출부자리도 얻지 못했다.

5) 몇 년전에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장기수 선생님들 식사를 준비해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경찰이 와서는 “하지 마라. 잡혀간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나는 이 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일로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취직을 시켜줘라. 그러면 이 일 안 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소개시켜 준 일은 지하철 역 청소였는데 월급은 30만원이었다. 그래서 내가 “난 그만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을 주선해 주든지 아니면 내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말리면 이야기 좀 들어라”고 했다.

6) 보안처분결정 전부터 “집회에 나가지 말라, 안 지키면 다시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것이 무서워서 옳지도 않은데 따르고 했던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 지금 같으면 따져 묻고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고 말을 했을텐데 정말 너무도 억울하다. 나중에는 내가 민가협 집회에 나가니까 “그러면 동생이 감옥에서 빨리 안 나온다”고 협박하거나 “자꾸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고 으박질렀다.

7)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피보안관찰자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내 동생도 피보안관찰자인데, 그러면 동생 만나는 것도 회합이 된다는 것이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이혼한 후로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왔다. 그 과정에서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어렵게 구한 파출부 일이나 식당일도 자꾸 찾아오는 경찰로 인해 오래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뽀뽀이 친척집에 맡겨져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자라왔고 어머니로서 나는 참 많이 괴로웠다. 원사건으로 인해 고향에서도 친척과 친구들이 외면하고 하나 둘 떠날 때의 심정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 보안관찰은 본인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경찰과 검사의 색안경으로 우리를 재단하는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 검사가 우리 어머니를 가리켜 “마음 속은 시뻘게 가지고...”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예이다. 어떻게 경찰이 사람을 쫓아다니며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말만 좋게 “보호해 주고 생계를 유지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도 잃게 만들고, 국민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러울 뿐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8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3 13:00~17: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 면제자 (1991년에 보안관찰처분 결정, 보안관찰처분 3회 갱신-1993년, 1995년, 1997년-된 후, 1999년에 면제결정)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시 교도관이 “7일이내에 출소신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은 출소하는 날, 담당경찰이 교도소 정문 앞으로 찾아와서 “당신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기 때문에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해야되고, 앞으로도 경찰서에 변경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

2) 출소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출소신고를 계속 거부하다가 아이들이 내가 또 잡혀갈까봐 불안해하는 등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처와 상의를 했다. 그래서 출소 3개월 후에 부인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출소신고 양식에 있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 후 무인을 찍어서 출소신고를 했다. 신고필증은 받은 적이 없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은 받은 적이 없다.

4)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사의 조사내용은 “왜 초반에 출소신고를 거부했느냐”와 원 사건에 대한 확인, 교우관계를 비롯한 기본 인적사항 등이다.

5) 1991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②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노동수입으로 생계유지, 하류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③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수회 불식한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④ 부 김○○이 여순반란사건에 가담하여 처형당하고, 형이 일본 거주중 자진월북하는 등 연고관계도 불량하며, ⑤ 40대의 젊은 나이로 활동능력이 왕성한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는 통지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첫 처분시

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후 3~4개월이 지난 후에 출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출소신고를 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새벽 5시반이나 밤 12시 등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받았다.

2) 처분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3) 정기신고는 경찰이 3개월이 되는 전날, 집으로 찾아와서 신고서 양식을 주면 모든 칸에 “해당사항 이상 무”라고 적은 후, 무인을 찍어줬다. 또한 직장관계로 지방을 가게되면 갔다온 후에 신고를 했다.

4) 보안관찰 첫 처분을 받은 후,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민가협 집회나, 재야집회 등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5) 1998년 봄,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찾아온 적이 있다. 처음에는 웬일인지 영문을 몰랐는데, 나중에야 대통령이 내가 살고 있는 ○○를 방문하는 날이란 걸 알았다. 그날 담당경찰이 오전에 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아무데도 못나가게 하루종일 집에 와 있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본인 외의 가족들이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은 없지만 경찰이 출소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수시로 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2학년 딸아이가 “아빠, 또 들어가?”, “아빠, 무슨 일 있어?”라고 물으며,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 했다.

2)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가 온 적이 있다. 특히 민가협 집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내가 감옥 살 때 처가 열심히 활동한 곳이어서 경찰에서는 처가 민가협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았다.

3) 94년 7월에 원 사건때 나를 고문했던 ○○○ 보안대 수사관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뒤늦게 이를 안 담당 경찰이 “고소건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며 고소장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 뒤로 더욱 더 심하게 괴롭혔다. 위 고소건으로 담당경찰이 질책을 당했는지 그 뒤로는 감시와 통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고소장 내용이 뭐냐, 취하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혔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후에 고소장을 한 부 복사해 주었다.

4) 직장을 갖게되면 항상 직장으로 찾아와서 내 상사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감시하게 했다. 특히 92년 4월 ○○에서 공사 일을 할 때 그곳 관할 경찰서에서 일하는 곳

으로 찾아와서 “당신의 담당형사가 당신 소재를 확인하러 왔었다. 와서 파출소장을 만나고 갔다”고 했다. 또 공사장 관리소장에게 담당 경찰이 “당신이 김○○(본인지칭)에 대해서 보증을 서라”며 종용한 적도 있었다. 또한 93년 ○○ 공사현장에도 경찰이 찾아와서 “그냥 한번 나왔다”며 두 차례 왔다 간 적이 있었다.

5) 경찰이 도청을 하는 건지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한번은 집에서 아내와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경찰이 “사모님과 싸웠다면서요”라고 한 적이 있어 부부 싸운 것도 경찰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모든 일상생활이 전화도청과 경찰의 감시하에 노출되어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출소하면서 이제 고생은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교도소 문을 나오자마자 담당경찰이라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신고하라며 너무나 심하게 대했다. 신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 생활을 간섭하는 것 같았다. 일하러 다닐 때마다 경찰이 나타나니까 그 불쾌감과 불안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고통스런 것이었다. 그리고 첫 처분결정이 나오니까, 정말 이제 내 손발이 묶여있다는 강박관념이 들었다.

그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면제 받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전화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 등은 없어졌지만 나름대로 미행 등 동태파악을 하고 있을꺼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심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9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7 13:00~16: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0년에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2년 1회 갱신, 현재 5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 후에 ○○군에 있는 빗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이 일하는 것을 계속 훑훑훑 보고가면서도 나에게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냥 내 원사건 때문에 사찰을 하는가보다 했다. 출소 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여기 저기를 돌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전에 살았던 수양관 사람들 안부가 궁금해서 그 곳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 수양관 원장이 “당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경찰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수배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는 해서 바로 수양관으로 달려갔다.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서야 내가 보안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보안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도, 출소 후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신고하라는 고지를 들은 적도 없다.

2) 출소뒤 담당경찰관이 출소신고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아마 경찰들이 알아서 했는지도 모른다.

3) 출소 뒤 주거지 등 변동사항 신고는 직접 신고한 적은 없고, 내가 일하면서 있던 곳의 주인들이 경찰에게 연락을 해 주었던 것 같다.

4) 보안관찰 처분 과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5) 1990년에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 후, 보안관찰처분 결정문을 담당경찰이 가져다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자세한 기억은 안나지만, 대략 기억나는 것은 ① 원 사건이 중하고, ② 북에 가족이 있고, ③ 생활이 불안정한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1차 갱신(1992년) : ① 원 사건이 엄중하고, ②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등 생활이 불

안정하고, ③ 현 체제에 불만이 있고, ④ 북에 가족이 있다는 것 등이었던 것 같다.

■ 다른 갱신사유는 현재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 갱신(2002년)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 청구서의 청구원인 사실은 ① 범정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② 출소 후 일정한 직업없이 막노동에 종사하며 건축현장 노동일, 고물수입일, 배발 관리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고, ③ 2001.1. ○○종교인협의회 주관 양심선언에서 고문과 구타에 의한 강제전향으로 자신은 비전향자라고 주장하고, ④ 주거지를 서울로 옮긴 후 현재까지 “장기수복 송송환추진위원회”모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에 참가하는 등 현 시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로, ⑤ 북한에 처와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유사시 재북 가족 및 배후 인물과 접선하여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후, 경찰이 거의 3~4일에 한번씩 내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일하는 것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공장의 주인을 만나고 갔다.

※ 한번은 경찰이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한테 수양관을 소개시켜주면서 “거기에 가는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때 경찰의 소개로 수양관에 가서 요양을 했다. (출소 후 ○○군에 있는 빛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일을 하니깐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담당경찰이 와서 ○○군에 있는 수양관을 소개해 주어서 거기로 갔다. -1989.11.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거소를 제공 받음-)

2)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2002.3경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있다.

4) 2001년 1월 29일 ○○교회에서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한동안 경찰이 더 자주 전화를 해서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다.

5) 정기신고는 ① 초기 : 경찰이 한달에 한번, 보고서를 쓰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다.

② 요즘은 그냥 경찰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경찰들이 알아서 작성, 제출하고 있는 같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수양관에 있을 때, 비어있는 공터에 꽃을 심고 가꾸었다. 그런데 수양관 원장이 심

어놓은 꽃의 모양과 색깔이 이북의 인공기의 오각별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나는 그냥 예쁘게 꾸미려는 마음으로 한 것 뿐인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니 너무 황당했다. 내 마음이 버선이라면 뒤집어서 보여주기라도 할텐데, 그럴 수 없어서 답답했다.

2)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남쪽에 가족이 없으니까 경찰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주거지를 옮기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또한 출소 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경찰이 찾아와서 참 싫었다.

3) 작년(2002년) 8월말경에 금강산 관광 신청을 한 후, 당일 속초항에 갔더니 갑자기 불허통지가 나서 결국 여행을 하지 못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보안관찰을 받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형식적인 부분을 억누르는 것보다 의식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더욱 힘들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내가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초반에는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고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지만, 내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담당경찰이 보호의 차원에서 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초, 3년간 일을 하던 건설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니까, 내가 그 일을 그만 두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담당경찰이 도움은 커녕 모른 척을 했다. 그때부터 겉으로 경찰들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절대 경찰을 믿지 않게 되었다.

2) 보안관찰법은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기구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을 짓누르는 법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0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6:00~18: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전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양식에 따라 작성했다.
- 2) 출소 2~3일 후 관할경찰서 경찰이 집으로 전화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다음날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출소사실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과정에서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 근거는 청구이유서를 받은 적이 없고, 결정근거도 고지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 2) 1, 2차 갱신 때도 갱신 사유를 고지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2차 갱신때 검찰조사시 “왜 공안사건에 연루되었나, 수감 중일 때 왜 단식투쟁을 했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이 갱신처분의 원인이 된 듯 하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처분결정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아무한테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
- 2) 정기신고와 주거지 변동신고, 여행신고는 계속 하고 있다. 정기신고는 3개월에 한번 씩 경찰과 커피숍에서 만나서 경찰이 주는 정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99년 여름 “민가협 수련회에 참여할꺼냐” 등의 말을 했다.
- 2) 경찰에서 말하길 “어머니나 누나 등 직계 가족을 만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외 사건에 관련된 친척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여,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 1) 1979년 원 사건 발생 당시 어머니도 함께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사망하신 뒤에도 계속 보안관찰대상자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누나는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고문으로 인한 조작간첩 사건으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형을 살았는데 또 다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2) 담당경찰이 특별히 어떤 것을 막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뭔가가 내 행동을 가로막는다. 결국 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므로 스스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보안관찰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형이 다 끝났으면 자유로와야 할텐데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 수감 중 일 때도,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

2) 보안관찰법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다. 정말 너무 황당하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1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 14:00~17: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면제자 (1997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9년 첫 갱신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면제)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시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되었으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출소 직후 담당경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양식을 가지고 와서 작성하게 한 후 3부를 받아가고, 몇일 후에 다시 찾아와서 2부를 더 작성하게 하여 가지고 갔다.

2) 그 뒤 3~4일 후에 담당경찰이 “경찰서로 나오라”고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 원사건 내용과 기본 인적 사항을 적은 「출소신고서」를 작성, 제출했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3) 출소 후에 검찰로부터 소환장이 와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 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나자, 경찰이 보안관찰처분 결정문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 이유 : 검사가 제출한 보안관찰처분 청구취지서를 보면 “① 대상범죄의 죄질이 중하여 재소중 전향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처벌받은 점과 또다시 보안관찰법으로 제재를 받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 ② 교도소내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전향 후 가석방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등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불식투쟁을 벌이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③ 출소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부를 접촉하였다. ④ 주거가 불안정하며 생업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2) 보안관찰처분 면제 이유 :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을 했다. 본인은 서약서, 2인의 신원보증서, 주거지와 생업이 확실하다는 증서를 내서 면제결정을 받았다.

면제 이유는 ① 복역 중 사상전향을 했고, ② 출소 후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제생활이 안정되며, ③ 다른 보안관찰자와의 교류가 없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처분 후부터 면제되기까지 경찰이 “경찰서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곧 신고다”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경찰서에 들렀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신고 후에도 경찰이 한달에 한번 정도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지 물어보거나 미행을 하는 것 같았다. 특히 출소 후 97.8. 민가협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갔다온 후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전화가 온 적이 있다.

2) 한번은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보수적인 동네인데 마을사람들이 경찰이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걸 알고, 나를 보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되도록 동네사람들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경찰들의 동태파악을 하는 것도 싫지만 그로 인해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힘들었다.

3) 면제결정 이후에도 1년에 4~5차례 정도 담당경찰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마을에 왔다고 하면서 가끔 집에 들렀다. 2002년 봄에는 “수배자를 잡으러 왔다”면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고, 또 2002.8.15경에는 경찰서에서 “태풍피해가 없느냐”, “농사는 어떠냐”를 묻는 전화가 왔었는데, 8월 통일집회를 염두에 두고 확인전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징역을 살고 나오면 끝이지 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보안관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내 성격 자체가 변했다.

2) 현재 면제상태이지만 언제 또 처분을 받을까 불안하다. 또한 면제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담당경찰관이 찾아와서 부담스럽다. 또한 관할경찰서 내에서 담당경찰관만이 내 생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과도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3) 면제결정을 받은 이후 혹여 면제 취소의 빌미가 될까봐 예전에 활동했던 노동단체에도 나가지 못한다. 또한 만약 면제가 취소되어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다면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뿐이다.

6. 보안관찰법에 관한 의견

경찰은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매일 감시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생활이 안정될 수 없는 이유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2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28 12:00~14: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은 출소 전에 교도관이 알려줬고 대상자신고서도 작성하고 나왔다. 출소신고에 대한 고지도 받았다.
- 2) 출소 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출소신고를 했다.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 3)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에 대한 청구 및 결정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원사건과 관련된 언급과 "...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등이었던 것 같다.
- 2) 갱신 이유 : 이유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고 독신이다..."는 것으로 기억된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첫 처분결정이 난 후, 내가 기거하고 있던 누님댁으로 경찰이 찾아와서는 "제가 담당형사입니다"라고 인사하러 왔었다. 그 후에는 "정기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를 해서 처음 1~2번은 경찰서로 가서 정기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후에는 3개월마다 1번씩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주면 내가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경찰이 방문했을 때 전달해 준다.
- 2) 주거지를 바꿀 때마다 담당경찰과 만나서 인적사항과 최근 동향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묻고 답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찰이 알고 찾아왔다.
- 3) 집회 시 경찰이 전화해서 "오늘 안 바쁘시면 저랑 만날까요?" 라고 돌려서 집회에 참가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출소 후 1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출소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원사건에 대한 것을 자꾸 물어서 굉장히 불쾌했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가 그 사건으로 고문까지 받아서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도 너희들이 그걸로 또 이렇게 괴롭히느냐”며 호통을 쳤다.

2) 누님 집으로 담당경찰이 인사하러 왔을 때, 누님과 자형이 많이 불쾌해했다. 나 역시 불쾌했기에, “나는 이 악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도록 하지 말고 하려면 모르게 관찰하던지 해라”라고 주장했다.

3) 집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받지 않고 가족이 받으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친군데요, ○○이 있습니까...”라며 둘러대고 끊는다. 떳떳하게 담당경찰임을 밝힐 것이지 나와 나이 차도 많은 젊은 경찰이 내 친구라고 둘러대는 것은 너무 우습다.

4) 2001년 2월~2002년 7월까지 ○○회사에 근무했을 때 경찰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회사 경비실로 찾아왔다. 나를 불러내어서 굉장히 곤란하고 불쾌했다. 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잘 모르는데 경찰이 다녀가곤 하니까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른다.

5) 내 사생활을 통제 받는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서 경찰이 까다롭게 굴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경찰들을 내가 왜 보고 살아야 하는가?

6) 1998년 4월경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갔는데 검사서기가 또 원사건에 대해 물어서 화를 냈다. 내가 “이미 끝난 사건을 들먹여서 나를 다시 죄인취급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은 나를 고문하는 것과 같다”고 했더니, 검사가 서기를 불러서 “원사건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7)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적은 없다. 그래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얼 하는지를 그들이 미행과 감시를 통해서 알고 있다.

8)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통역이 필요해 내가 통역인으로 2001년 2월 하순에 2박 3일 일본에 다녀왔다. 그 때 단수여권이 나왔는데, 담당자가 “다음에는 복수여권으로 주겠다”고 했다. 2002년 8월 다시 일본에 가려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또 단수여권이 나왔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아예 포기했다. 복수여권 받지 않으면 귀찮은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지 않고 만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검찰 등 관계기관에게도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이다. 옥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와 생존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하는 법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3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4 16:00~19: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7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9년 1회 갱신, 2001년 2회 갱신 후 현재 3회 갱신을 위한 조사 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 교도소 담당관으로부터 출소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2) 출소 2~3일 후 경찰이 전화로 출소신고 하러 경찰서로 나오라고 해서 직접 경찰서로 가서 출소신고를 했다.
- 3) 정기신고는 담당경찰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일상에 대한 안부를 묻고, 신고서는 경찰이 알아서 작성한다. 처음에는 담당경찰이 양식서를 많이 주며 3개월마다 작성하라고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의미도 없다는 생각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97년 결정 고지서를 받았고 처분의 이유는 원사건과 교도소 복역 중 '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며 수회 불식 등의 농성을 했다는 것이었다.
- 2) 갱신 이유 : 99년 고지서를 받았고 1회 갱신의 이유는 "원사건의 위협성과 복역 중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주장 및 불식, 그리고 출소 후 주거지에 거주하며 ○○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과거 장기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 북한공산당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했던 자로서, 함께 했던 ○○○이 출소하는 등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동종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이었고 2회의 갱신사유도 같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신고 후, 1달에 1~2번 집으로 찾아오거나 집 근처 지나는 길에 전화했다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 전화는 담당경찰이 1주일에 1~2번 했고, 밥이나 같이 먹으며 잘 지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협조를 구했다.
- 2) 1997.1월에 검찰에서 보안관찰처분결정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전화를 했고 이에 응해 검사실로 갔다. 검사는 형식적인 질문만 했고 주사가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현재 친구들과 만나는가 등을 물었다. 1회 갱신을 위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회 갱신 때에는 내가 왜 자꾸 갱신되는지 모르겠으니 재판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주사가 나도 이해가 안 가니 다음에는 갱신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3) 첫 처분결정이 난 이후에는 담당경찰이 내게 불쑥 전화를 하거나 집 근처 가는 길에 들렀다며 집으로 찾아오곤 한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직후에는 경찰의 감시를 의식해서 스스로 친구들과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지도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자꾸 할 일 없이 다니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직업을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초조했다. 직업을 찾을 때에도 경찰이 직장상사에게 내가 보안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화를 걸어 감시하고 할까 봐 '공무원은 물론이고 안정되고 조직적인 기업이나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학원강사 등으로만 직업의 선택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2) 출소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의 전화를 받으신 적이 많이 있다. 그 때마다 놀라시고 두려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전화가 오면 불안해 하셔서 죄송하고 안스럽다.

3)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난 후인 1997년 여름, 집을 옮기려고 밤에 집주인 아주머니와 상의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담당경찰이 전화해서는 "왜 말도 안하고 이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그 때 집주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저 사람도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만 보여줘야지 다 보여주면 안 되겠다'며 계산하며 사람을 만났다. 집 주인 및 주변 사람들이 내가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동태를 파악해서 경찰에게 알려주었을 때의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을 겪고나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렇게 변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씩씩한 것은 물론이다.

4) 출소 후 내가 모임이나 집회에 나간 적이 없는데 보안관찰을 의식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기도 했고 '일상인으로 성실히 살면 보안관찰이 있다한들 피해보는 일은 없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97년부터 2000까지는 8.15 행사 때만 되면 전화해서 "뭐했고 어디에 갔었느냐"며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궁했다. 아마도 8.15 시기에 일어나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우리 피보안관찰자들을 주목하고 있으면서 행동반경을 좁히고 일일이 감시하려는 느낌이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내가 99.9

월부터 ○○○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갱신을 위한 조사 목적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가면 “○○○에 가입했느냐, 왜 했느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매번 해대서 마음이 불편했다.

5) 여권을 발급받고 싶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아예 신청을 안 한다. 다만 2년 전에 결혼했을 때 아내가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자고 했는데 못 간다고 말했고 요즘도 해외 나가고 싶어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은 뭐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결혼 전에 자세히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거야”라며 화를 내면 기분이 정말 착잡하고 서글퍼진다.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6) 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피해는 우선 어머니가 나로 인해 늘 불안해하신다는 점이 아들로서 너무나 걸린다. 또 부인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결혼한 것이 아니어서 보안관찰과 관련해서 여행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여권 발급이 안되는 것, 경찰들이 전화하는 것 등에 대해 민감하다. 가끔 속상하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텐데..”라는 말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또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들이 나나 자신을 쳐다보면 괜히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고 신경이 쓰여 신경성 질병을 앓기도 한다.

7) 검찰에서 보안관찰처분과 갱신을 위한 조사를 3회 받았다. 괴로운 것은, 분명히 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2회 갱신을 위한 조사에서도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물어서 나의 과거를 들춰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과거 사상에 대해 물으며 “지금의 생각은 어떠냐”, “함께 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하는가?” 등을 묻고 이에 “그 때의 내 생각에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이제는 꺼내기 싫은 대답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무척이나 싫다. 또 “친구들이 뭐하는지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캐어 묻는다. 사람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빨갱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어놓고 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출소 후 나는 과거의 일을 잊고 일상적인 삶을 하면서 지내는데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만 가면 과거의 사람이다. 그것이 정말 싫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출소하고는 내가 스스로 보안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행동을 조심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이 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사람의 사상을 묶어 두는 것은 정권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세계화라는 흐름이나 발전된 정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피보안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 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은 검찰은 물론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국가예산 면에서도 낭비다.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이런 것 말고도 많은데 말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사상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다만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젊은이로서 해 봤을 뿐이다. 그런데 나에게 '사상범, 전과자, 피보안관찰자'라는 큰 타이틀을 씌우고 평생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상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살아야 한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4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30 18:00~21: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교도소 보안과 담당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출소할 때 고지해 주었다.
- 2) 98년 8.15때 가석방으로 나온 뒤 서울에서 며칠 지내고 집으로 가니, 담당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나와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다. 경찰서에 갔더니 사건내용을 물어 보기도 하고 “어디가면 얘기해야 하고, 집회, 인권단체에 가지말라, 출소한 사람들 만나 지도 말라, 전화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과정에서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담당 검사가 “보안관찰법을 잘 지키라”는 말을 했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① 범정이 중하여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② 수감생활 중 비록 전향서와 준범서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십여회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부친이 남파간첩이어서 북한에 친척들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출소 후 가족들과 함께 비교적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으나 고정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처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2)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기각당했다.

3)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1차 갱신 : 보안관찰처분 갱신청구서(검사)에 따르면 ‘이복에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치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요지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주장은 사건 재판때 검찰 쪽 주장이어서 살아있다면 남북이산가족상봉때 나를 포함시켜 만나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

- 2차 갱신 : 1차 갱신 사유와 같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1) 출소자들을 만나지 말고 집회에도 가지 말라고 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가족에게 전화와 방문을 한다. 3개월마다 내는 정기보고서는 담당경찰관이 직접 집으로 가지고 오면 작성해 준다.

2)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보안관찰법을 이행 하지 않으면 재수감한다고 말했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달라진 점은 없고,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화로 하고 방문해서도 한다.

3) 출소 후 취직자리를 얻기 위해 경찰서장한테 신원보증을 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안관찰까지 받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그런 것을 쓸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한번 국가보안법으로 살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길들여왔으니까 보안관찰법이 일상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정기보고서 작성시 경찰이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의견서를 낼 때는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하고 있다. 이 사실을 취소소송 때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검사의 갱신청구이유와 비슷하다. 결국 일선 형사의 의견이 처분이 떨어질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2) 98년 첫 처분결정시에는 담당형사가 중학교 1년 선배였는데 일상에서 만날때는 “○○(본인 지칭)이가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게 할려고 애쓴다, 잘해줘야 한다”고 사람들(문중, 학교선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99년 취소소송 당시 제출된 자료에서 그가 쓴 의견서를 보니 그동안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었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위험하다고 쓰고 심지어 아내가 하는 가게도 시내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요주의 대상이 되고 위험한 사람들도 섞여 드나들 수 있다고 쓰기도 했다. 그 배신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3) 경찰관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하니 가족들이 제일 고생이 많다.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는 척을 하려들지 않는다. 이웃들이 빨갱이라고 보는 것 같아 힘들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어버렸다. 원 사건이 억울하게 조작된 것만 밝혀지면 어떻게든 보안관찰은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원 사건 해결마저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 보안관찰처분은 국가보안법 울타리처럼 서서 내

가 간첩이라는 확인을 해주는 것 같다.

보안관찰처분에서 의무사항은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내가 쓴 행적 보고서를 보고 내 행동들을 다 보면서 의견서를 쓸 때는 '반성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의견서를 쓰는 것 같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을 잘 지켜 어떻게든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나고 싶다.

보안관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구속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이 위축되고 있다. 옥 중 아닌 옥중생활이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없어져야만 한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인데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한테 검찰이나 경찰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행동을 판단하면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징역도 다 살고 나왔는데, 경찰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주변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직도 간첩이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간첩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사는 것도 어렵게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제재를 당하게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취직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첫 처분결정이 났을 때, 나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전향도 했고, 준법서약도 했고. 그리고 생활도 안정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에게 대한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에게 '반사회성의 징표'가 많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엇이 반사회성인가. 왜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자꾸 과거를 들추어서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함께 감옥을 살았던 동료들을 만나고 싶지만, 피해가 갈까봐 안 만나고 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5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5:00~18: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시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2) 출소 후, 한달이 지나서 담당경찰이 “출소신고를 해야하니까 한번 만나자”며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원 사건내용과 기본 인적사항을 적은 「출소사실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 필증을 받았다.

3) 출소 3개월 후에 살고 있던 집에서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들이 먼저 알고 “이사했냐”며 전화를 한 적이 있다.

4)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사의 조사내용은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 ‘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수감 중 단식을 4차례 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이다.

5)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① 원 사건에 대한 부분, 즉 북한을 다녀왔다. ② 수감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4차례 단식을 한 사실이 있다. ③ 출소 후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북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첫 처분때 경찰이 반성문을 쓸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 후에 경찰이 “나는 생업에 전념하고 있고, 처와 딸을 위해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써 가지고 와서 이 문서를 검찰에 올리자고 했으나, 거부했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1차 갱신(2000년) : 원 처분때의 근거와 똑같다. 특히 경찰조사 중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혹 공작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 북이나 일본에서 사람(공작원)

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등을 물어봤다.

- 2차 갱신(2002년) : 원 처분, 1차 갱신 근거와 같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처분 결정 후 7일 안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2) 정기신고는 처음 3번 정도는 담당경찰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서는 그냥 안부정도를 물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담당경찰을 만나지 않았고, 연락이 오면 “신고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나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라고 이야기했다.
- 3) 출소 초기에 경찰이 찾아와서 구청 소식지 편집인 등 직업을 알선해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
- 4) 조사과정에서 공안기관의 고문에 의해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담당형사가 ‘의료보호증’을 만들어줘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했다. 그러나 6개월 후 쯤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도 함께 해야만 의료보호 혜택도 된다고 해서 “나는 당신들의 고문으로 인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받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98년 12월초, ○○○○신문사에서 신문사 기자의 추천으로 2개월간 글을 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수락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신문사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어렵겠다”면서 전화를 해왔다. 신문사의 갑작스런 처사가 아무래도 경찰, 검찰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과 전화가 도청 당한 것 같아서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가두려면 가둬라”라고 항의했다.
- 2) 보안관찰 처분 청구시 검찰조사를 갔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놓아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
- 3) 하루는 집에서 글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경찰이 전화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와 도장을 찍을게 있다고 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담당경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오지마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별로 안하고 찾아오더라도 만나기 싫다고 하면, 집 앞에 수박 등만 사놓고 그냥 간다.
- 4) 보안관찰 처분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경찰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전화를 내가 받든지 가족들이 받든지 집안의 분위기가 짝 가라앉는다. 어떤 때는 하루종일 안 좋을 때도 있다. 경찰과 나의 관계는 법으로 연결된

관계이므로,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경찰에서는 “아직도 한총련 학생들한테 강연하러 다니느냐? 학생들을 만나냐?” 등 특히 한총련 관련 이야기를 많이 묻는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처분 후,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다. 특히 작년에 ○○대에 특강을 갔을 때 경찰이 날 미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예전에 나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전화번호와 집 위치도 다 알고있고, 너무 뵙고 싶은 데도 뵙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선생님도 보안관찰대상자이기 때문이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처음 출소신고를 한 것을 후회한다. 담당경찰이 시키는 대로 신고서를 쓰든, 안쓰든 경찰의 간섭을 받는다면 굳이 출소신고서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앓다.

2) 보안관찰법과 국가보안법은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것 같다. 형과 아우의 관계처럼 하나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풀릴 수 없는 것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6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5 13:00~16: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4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6년 1회 갱신, 1998년 2회 갱신, 2000년 3회 갱신, 2002년 4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에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몰랐고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지 못했다.
- 2) 출소일에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를 마중하러 왔는데, 담당경찰이 교도소 앞으로 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에게 항의하며 자신이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 3) 정기신고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작성하라고 신고서를 주고 가거나 직접 방문하여 받아간다. 작성 시에 경찰은 그래도 형식이니까 한두가지 사항은 적어달라고 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고지서를 받은 것 같으나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원 사건이 중한데, 개선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일반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 2) 갱신의 이유 : 고지서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 갱신 이후 검사의 갱신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매번 응했다. 갱신의 이유를 물으니 “갱신하고 안 하고는 내 능력밖이다. 보안관찰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원사건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고 계속 갱신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 직후에는 1일에 1~2번 정도 전화하고 매일 방문하여 동태를 파악하려 했다. 목사님이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을 왜 그리 못 믿고 귀찮게 하느냐”고 하니 그 후로는 1달에 1~2번 전화했다.
- 2) 처분결정 후부터 지금까지는 3달에 1번만 방문해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간다. 그러나 “어디에 갔었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등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해서 귀찮게 한다. 전화는 자주 한다. 담당경찰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그 담당경찰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97.2월에 중국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목사님이 따져묻자 단수 여권을 발급해 주며 단, 경찰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고 했다. 내가 “여행이 아니

라 감시가 아니냐. 그럴 바에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은 목사님과 동행하는 조건을 내세웠고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1주일동안 여행했다. 여행 전에 경찰에 여행일정과 묵을 곳 등을 모두 밝히고 떠났다. 그런데도 경찰이 여행지의 숙소로 전화하며 꼬치꼬치 캐물어 너무나 불편했다.

2) 97년 3박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매일 1회 경찰서로 전화해달라고 했다. 전화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전화를 해서 일일이 여행의 일정을 물어봤고, 돌아온 후에도 경찰이 찾아와서 신고서를 작성했다. 2002년 10월에는 지리산을 가려는데, 경찰이 미리 알고 전화를 해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부산에 들려 북한 쪽 사람들과 접촉할 일정은 없느냐, 언제 어디서 묵느냐” 등을 캐물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았을 때 “형을 마치고 나왔지만 좁은 교도소에서 넓은 교도소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97년 중국여행에서 경험했듯이 50년만의 고향방문인데도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감시로 인해 서글픔을 느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함께 여행을 하자고 해도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도 여행을 갈 수가 없다. 무언가를 하려할 때의 심정적 괴로움과 실질적 피해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피보안관찰자로서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는 일반 국민과 동등한 여행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과 현재의 죄가 아닌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서 구속을 당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고,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감시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힌다. 보안관찰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을 만나 피를 토하며 내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심정이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처분결정 이후에는 보안관찰법을 운용하는 형사와 검사들과 개인 대 개인으로는 크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이기에 그들도 요령이 생겼고 피보안관찰자들의 심정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법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오늘 날, 보안관찰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소수 특권층과 지배층의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7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6:00~18: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85년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처분 결정, 1987년 1회 갱신, 현재까지 보안관찰처분 8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교도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라는 사실과 「보안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해야한다”는 고지만 들었다.

2) 출소하는 날,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출소신고서에 무인을 찍게 했다.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경찰이 내가 앞으로 살 곳을 주선한 교인이랑 이야기를 해서 문서를 작성한 후 나는 무인만 찍었다. 그러나 출소 신고후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3) 주거지가 변동된 적이 있으나, 집 주인이 먼저 경찰에 알려줬다. 그런데 먼저 담당 형사가 내가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곳의 주인들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무슨 변동사항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먼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4) 보호관찰처분 청구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원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물은 것이었다.

5) 1985년에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 첫 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처분 결정문은 경찰이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호관찰처분의 근거

① 북에 가족이 있고, ② 원 사건이 중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1987년까지는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을 받다가 1989년에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바뀌면서 이어서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첫 처분때의 이유와 같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 담당경찰이 내가 있는 곳의 주인들을 만나러 오거나 전화를 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했다.

- 2) 처분을 받은 초반에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다.
- 3) 정기신고는 처음에는 경찰이 작성해온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으나, 요즘에는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무인을 찍는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후 예전부터 나를 후원해주던 이의 소개로 어떤 목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달이 채 안되었을 때 담당형사가 목장으로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람은 사상이 불순하고, 독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해서 그곳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2) 1996년경, 수감때부터 계속 도움을 주던 ○○교회 교인들이 출소한 장기수 몇 명을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찰한테 우리가 선생님들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 당일 아침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여행에 가지마라”며 아예 눌러앉아서 내가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저녁까지 감시를 했다.

3) 집회나 행사가 있기 전에는 연락이 없지만, 행사 후 집회 참석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온다.

① 담당형사가 “2002년 2차 송환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때 갔었나”는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몰라서 가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② 약 3년전쯤, ○○교회에서 전향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그때도 “참석했었나”는 전화가 온 적이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처분을 받은 초반에는 거의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2) 부당한 법이지만, 귀찮기도 하고 법은 법이니까 그냥 정기신고를 하면서 살고 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또 사회의 울타리에 가두는 법인 것 같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8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23 14:00~17: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은 출소 전에는 몰랐고, 출소 후 출소신고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 담당경찰에게 들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도소에서 대상자신고서를 작성했고 출소신고의무에 대해서도 들었다.

2) 출소 후 내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교도관에게 들은 대로 출소신고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 경찰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 및 결정과 갱신처분 청구 및 결정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4) 출소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이 보안관찰법과 원시신고에 대해 알려 주었다.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5) 정기신고는 3달에 1번씩 경찰이 전화해서 일상을 묻고 그가 알아서 작성한다. 98년 이사를 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 이사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6) 원 사건을 담당할 검사실의 주사가 검찰청에 있었다. 그에게서 “이익진술권이 있으니 청구이유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의서를 제출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 형의 소식을 알고 싶었던 것이 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자들과의 만남에서 학담을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이 처벌받은 것이 마치 강압수사에 의해서 허위자백을 하였기에 처벌을 받고 있다는 식의 항변을 하는 점 등과 생활의 불안정(의원을 하는 형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98년 혼인한 처와 함께 살 형편이 못되어 따로 살고 있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형집행정지 중이며, 재복가족이 있어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본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형의 도움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안관찰

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이다.

2) 갱신 이유 : 갱신결정서만 받았고 거기에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후 1~2주 후에 청량리 경찰서로 자진출두하여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고 양식서에 도장을 찍었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거주지 이전시 신고할 것, 모임 등에 신고하고 나갈 것 등을 말해 주었다.

2) 직접 가서 출소신고한 후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그 후 보안관찰처분 받기 전에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경찰에게 조사 받았고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2~3개월마다 1번씩 전화하여 정기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일과 관련해서는 <동의보감> 일본어판을 2003년 일본에서 출판하는 등 소위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도 잘 한다고 보호해 주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량한 국민을 신경 쓰이게 하여 일도 더 못하게 하고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항상 쇠사슬과 노끈이 발목에 걸려있는 것 같다. 잊고 살다가도 경찰이 2~3개월마다 전화하거나 하면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하고 놓아주질 않는데, 직업이 없으시거나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 참 답답하다. 너무 소모적인 행정이다, 하는 사람에게도 당하는 사람에게도.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조항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 보안관찰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재정적 안정, 직업 등-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계속 갱신 당하고 있다. 관찰을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보안관찰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두지 뭐, 혹은 대강 관찰하지 뭐’라고 할거면 뭐하러 이법을 실행하는가.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19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3:00~16: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 면제자 (검사가 처분을 청구했으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법무부장관이 기각결정하여 1999년 면제결정됨)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교도관이 출소 이틀 전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나, 작성을 거부했다.

2) 출소하고 3주정도 지나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출소신고 하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나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출소 뒤 이사를 한 적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3) 계속 출소신고를 하지 않자 경찰서에서 ‘보안관찰처분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4번 보냈고, 그 후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보안관찰법 6, 27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백만원, 2심에서는 2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에서 벌금을 내지 않아 1999.9.2부터 10일동안의 노역장을 살았다.

특히 1999.6 처분이 면제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어서 불복종했다.

4) 검찰에서 보안관찰처분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한다며 1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를 심의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면제결정을 받았다.

2)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청구 이유는 ① 출소후 기간이 일천하고, ②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 기각 이유는 ① 출소후 기간이 일천하고, ②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 관련하여 활동상황이 노출되어 따로 관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③ 99.2.25 사면복권된 점으로 비추어볼 때, 현재로서는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다.

4) 첫 처분청구가 기각되고 난 다음,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① 준범서약서를 제출했고, ② 99.2.25 사면복권이 된 점등 현재로서는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3.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직접적으로 경찰로부터 전화나 방문, 또는 미행 등의 동태파악을 당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동태파악문서'라는 것이 써 있는 걸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내 일거수 일투족을 미행한다는 것,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참 기분이 나빴다.

2) 보안관찰 처분 청구 후 면제 되기 전에 대만 엠네스티의 초청으로 대만에 가려고 여권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었다.

신원조회에서 D급으로 분류되어 여권을 내주기가 어렵다고 하여 경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니 출소 직후 직업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4.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뼈저린 내면의 괴로움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산 것 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다. 그래서 면제되기까지 힘든 싸움을 진행했다. 사실 면제되기까지 법과의 싸움은 힘들지 않았으나,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2) 현재 나는 너무나 큰 강박관념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물론 현재는 면제결정을 받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국가보안법 원 사건과 그로 인한 보안관찰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정신적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에게 법을 지킬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커녕, 보안관찰법을 위반하는 또다른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과 똑같다.

2)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7년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 보안관찰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원사건을 인정하라는 것이기에 결코 지킬 수 없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0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0 11:30~14: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교도소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들은 적은 없고, 스스로 인지했다. 또한 출소전 교도관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제출했다.
- 2) 출소한지 7일후 경찰이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경찰이 작성해 온 신고서 양식에 무인만 찍었다. 출소신고 뒤 신고필증은 받은 적은 없다.
- 3) 처분 과정에서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 출석 요구서가 2~3번 왔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 4)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 근거는 ① 안정된 직업이 없고, ② 98년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2) 보안관찰처분 갱신 근거는 고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처분결정 후 7일 이내에 원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
- 2) 정기신고는 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이 3개월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본다. 통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그것이 신고처럼 되는 것 같다.
- 3) 2001년 말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경찰서에서 미리 알고 전화가 왔다.
- 4) 처분 이후에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처분 전에 한달에 한번 정도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봤고, 응대를 안하면 몇 일에 한번씩 전화를 하기도 했다. 전화를 해서 “결혼은 안하냐”, “직장 알아봐 줄까”등

현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했다. 또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신 적이 많았고, 그 전화를 받으시면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이 났는가 하며 불안해하셨다.

2) 처분 이후부터 계속 미행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우연히 보게된 경찰의 동태보고서 일지에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적혀 있었다. 그래서 다른 보안관찰자와의 만남을 특별히 금지당한 적은 없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3) 담당경찰이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계속 미행하면서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인데, 경찰의 동태보고서에는 <△△△△△△>에서 일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여러 단체가 함께 쓰고 있어서 사무실 앞에 간판이 여러 개 달려있다. 그런데 경찰의 동태보고서에는 다른 단체에서 일한다고 적어놓은 걸 보니 아무래도 미행을 하는 듯 하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경찰을 만나면 체포 및 연행당시의 기억(고문 등 경찰에게 당한 고통)이 생각나서 너무 싫은데, 보안관찰로 인해 경찰이 찾아오니 무척 힘들다. 또한 내 내면에 대해 뭔가 물어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 같아 무척 싫다.

2) 내가 만나는 사람(상대방)의 의식 속에 나를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느껴지면 상처가 된다.

3) 몸을 가두는 것 보다 의식을 옥죄는 것이 더 무섭다.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하지 못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서글프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법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약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고, 원칙도 없는 것이라면 누가 그 법을 지키고 싶겠는가.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1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0:00~13: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1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2년 1회 갱신, 현재까지 보안관찰처분 5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할 때 교도관으로부터 “출소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2) 출소 2~3일 후 담당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출소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출소신고서를 작성한 후, 무인을 찍었다. 출소 신고 뒤 신고필증을 받았다.

3) 출소 뒤 이사를 한 적이 있으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를 한 며칠 뒤에 정복을 입은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4) 보안관찰 처분 청구 과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5) 1991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담당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 결정문 1쪽을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은 본 적이 없고, 결정문에도 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아서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북에 가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이유가 된 듯 싶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① 북에 가족이 있고, 남에는 새로 가족을 꾸리지 않아서 생활이 불안정, ② 출소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검사는 “자신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상이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처분이 떨어지고 5일쯤 후에 담당형사가 문서를 써가지고 와서 이름만 써주었다.

2) 출소신고를 한 뒤, 94년까지는 그냥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니 경찰서에서 계속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는 경찰이 작성해오는 서류에 이름 등을 써서 제출하고 있다.

3) 경찰이 집회나 행사가 있는 전날이나 당일에 전화를 해서 “8.15 등 통일집회 가실 겁니까”는 등 주로 통일관련 집회의 참석여부를 물어본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경찰이 자주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생활하는데 심적인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 계속 혼선이 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도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2) 내가 행사에 참석할 때 나와 함께 다녔던 대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아버지가 공무원인 한 학생의 집에 경찰이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딸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같이 다니는 것을 아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계속 미행하다가 한번은 그 학생들을 불러세워 “○○○ 선생으로부터 학습은 뭘 받았냐”, “어떤 임무를 줬냐”, “함께 어디를 갔었냐”등을 물어본 적도 있었다.

3) 60세에 출소를 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도 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내를 통해 나에게 대한 동태파악을 하고, 괴롭힐까봐 그냥 혼자 살고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처음에는 정기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귀찮아서 2001년부터는 신고를 하고 있다.

2)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것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많은 사람들이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시대부터 사상범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악법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2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4 11:30~14: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에 보안관찰법과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2) 출소 직후 경찰서에 내가 직접 방문하여 이름, 나이 등의 출소신고를 했다.
- 3) 1998년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경찰이 주고 간 신고서 양식에 정기 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여행 신고 등 보안관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을 적은 뒤 경찰서로 찾아가거나 경찰이 정기적으로 3개월에 1회 집으로 방문할 때 담당경찰에게 전해주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고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간첩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이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관찰의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 2) 갱신의 이유 : 고지서를 받았고 “개전의 정이 없음”(내 원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음)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더니 보안관찰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며 북한관련 행사나 집회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 2) 본인이 보안관찰에 협조적인 것을 알기에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3달에 한 번 정기신고 사항을 기재할 양식서를 주러 오거나, 명절에 인사하러 와서 앞으로의 일정이나 여행계획 등을 묻는다.
- 3) 북한관련행사가 있는 날은 전화하여 우회적으로 집회참가를 저지한다.
- 4) 경찰 선에서 문제들이 마무리 되어서 검찰과 부딪힌 적은 없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여권을 신청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기간의 여행은 계획하지도 않고 여권신청도 하지 않는다.

2) 고향에 가기 위해서도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3) 갱신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의 구분이 아닌 보안관찰법 상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가끔 억울함을 느낀다.

4) 취소소송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근거로 갱신처분이 내려질까 두려워 소송을 할 엄두를 못 낸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출소 후에는 법이라는 것은 악법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보안관찰법의 집행에 협조했다. 고향에 내려갈 때도 신고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처지가 처량하다고 느끼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아니까 자진해서 신고한다. 그 결과 물리적인 침해는 받지 않았으나 심리적인 패배의식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보안관찰처분 결정 직후에는 “갱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이 많이 상했다. 협조했는데도 2회나 갱신처분을 받은 지금은 울타리를 쳐 놓고 그 안에서 살아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 그러나 일상을 이어 나가야 하므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직업에만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다. 어서 빨리 원사건의 진상이 규명 되어서 누명도 벗고 보안관찰제도 안에서의 무형적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억울하게 구속되어 그 형을 마쳤는데도 사회에 나오니 또 다시 감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또한 법 자체가 단단한 울가미라서 처분소송이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그에 따라 신청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다시 갱신처분을 내리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의 권리라는 것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어서 빨리 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입증되어 누명을 벗고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저절로 보안관찰이라는 무형적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이 내 목숨이 다 하기 전에 오기만을 바란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3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26 17:00~19: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취소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1년 기간갱신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9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전에 교도소에서 출소신고 의무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했다. 대상자신고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2) 출소 다음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출소신고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경찰이 보안관찰법이 적혀 있는 수첩을 보여주며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3) 그 이후 몇일이 지나서, 내가 출소한 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이 집으로 찾아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우편으로 대상자 신고서를 보냈는데 반송시켰다. 그 교도관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재차 강요를 하자 내가 “나를 신고하라는 이런 보고서는 작성할 수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8시간 정도를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갔다.

4) 출소신고는 1년동안 하지 않다가 1년 후에 담당경찰관이 바뀌면서 “절차는 절차니까,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자”고 반년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신고했다. 경찰서에 갔더니 이미 담당경찰이 다 작성해 두어서 나는 도장만 찍었다. 출소사실 신고필증은 우편으로 받았고 정기신고서는 담당경찰이 와서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주거나 내가 파출소로 직접 가서 작성하고 받았다.

5) 보안관찰처분 및 결정과 갱신처분 청구 및 결정 고지서를 모두 우편으로 받았다.

6) 출소신고 후 경찰을 통해 원시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로 직접 가서 원시신고를 했다. 그래도 갱신되면 소송을 할 생각으로 신고의무를 잘 지켰다. 담당경찰과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7) 정기신고는 처음에는 담당경찰이 가지고 온 양식서를 내가 작성해서 가져다 주면 신고필증을 주었고, 후반 5회 정도는 내가 직접 파출소로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주거지 변화는 없었고 변동사항은 경찰과 통화 중 자연스럽게 알리게 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내용이 중대하고, 전향을 거부하였으며, 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와 장기수석방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였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소식을 듣고 애도의 표시를 하였으며,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고, 보안관찰법 6조 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간첩침투가 용이한 곳에 살고 있으며, 고정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점 등”이 이유로 적혀 있었다.

2) 갱신 이유 : 처분의 근거와 같다.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찰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이다.

3) 취소과정 및 이유 : 2001.2. 갱신결정에 대해 기간갱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00.2.에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에 불과한 점, 출소 후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자와 회합했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진신고를 거부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늦었어도 신고했고 정기신고도 한 점, 아버지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충분한 이유도 없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충분치 않다”가 이유이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후, 경찰이 수습 차례 전화하고 방문해서 출소신고 하라고 했다.

2) 그 후 담당경찰이 바뀌었고 그는 지킬 것은 서로 지켜가며 일을 진행시키자고 반년 동안 설득했고 그래서 출소신고를 했다.

3) 3개월마다 경찰이 정기신고서를 가지고 오면 작성해주거나 정기신고를 하러 직접 경찰서로 갔다. 경찰이 전화해서 “이달 말까지 정기신고서를 작성해달라”거나 “한 번 만나자” 등의 이야기를 했다.

4) 갱신취소 소송 확정 후에는 내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승소했다”고 하자 “나는 재판한 것도 몰랐다. 판결문 한 부 부쳐줄 수 있느냐? 피보안관찰자와 관련된 실제 업무는 우리가 했지만 진행상황은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 후 다시 경찰이 내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로 전화했더니 거기서도 재판한지 몰랐다면 판결문 있으면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래서 판결문을 한 부 복사해서 담당경찰에게 전해 주

었다. 그 후에 담당경찰이 내게 전화해서는 “이제 경찰과 파출소 수준에서의 관리는 해제되었다”고 알려주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다.

5) 검찰이 출소신고거부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전부터 언니와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출소하면 어디서 누구와 같이 머물거냐”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가족들이 “왜 당사자도 아닌 가족들을 괴롭히냐”며 항의를 했다고 한다.

2) 출소 후, 경찰이 수십 차례 전화하고 방문해서 출소신고하라고 했다. 한 번은 언니 집 아파트경비 아저씨께 “○동 ○호에 보안관찰자가 있으니 주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 당시 형부와 언니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꾸 찾아와서 “또 법을 안 지킬 것이냐”라고 으박지르기도 했다. 그 후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도 경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3) 보안관찰처분 후, 북한관련행사-평양대축전 등-가 있을 때 전화해서 “혹시 초청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일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북측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지는 않느냐?” 등을 물었다. 무척 성가시고 귀찮았다.

4) 남이 나의 사생활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인권침해이다. 담당경찰과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도 생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에게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처음 보안처분결정 후 취소소송을 생각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보안관찰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나의 일상에 대한 일지를 쓰며 창문에 붙어서서 나를 늘 지켜본다는 사실이 나를 감옥생활의 연장에 살게 했다. 보안관찰법의 규정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누구를 만나는 만남 그 자체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 끔찍했다. 내가 거기에 묶여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나 컸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4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6 14:00~16: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전 교도소에서 대상자신고서를 작성한 적도, 출소신고하라는 것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출소 후 1주일 후 담당경찰이 집으로 방문해서 알려주었다.
- 2) 경찰서로 자진출두하여 이미 작성된 양식서에 도장을 찍어서 출소신고를 했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 및 결정 고지와 1회 갱신처분 청구 및 결정 고지 모두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2회 갱신 결정은 고지서를 받았다.
- 4) 원시신고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으며 알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정기신고는 3개월마다 1번씩 경찰이 신고서를 가지고 집으로 오거나, 전화를 하면 내가 경찰서로 가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 5) 주거지 및 기타 변동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알고 전화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통지서가 없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 2) 갱신 이유 : 1회 갱신때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2회 갱신 때만 청구이유서와 함께 받았다. 이유서에 따르면, "...출소 후 특이한 동향없이 주거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전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현 주거지는 민가와 떨어져 있어 인적이 드물고 경북 ○○○ 소재 ○○산 자연휴양림에서 강원도 ○○시 방면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간첩 접선 및 침투 간첩 은신, 우회침투 간첩 거점 확보 등이 용이하고, 현 거주지 인근에 유사종교를 신봉하는 ○○○○○가 있어 동 단체에 좌경의식화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원래 경찰이 주시하고 있던 단체다. 그 단체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 짐작되는 것이 있다면 그 집단이 동네에서 농업종자와 기구 등을 파는데 그 가게에 필요한 것을 사러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1회 갱신을 위한 검찰조사에 응해 갔더니 검찰이 어떤 단체의 이름을 대며 내게 그 단체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번 2회 갱신조사 때에도 물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집단의 이름과 달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 단체의 이름이 두 개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경찰과 검찰은 내가 그 단체를 사상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단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1주일 후 담당경찰이 내가 묵고 있던 서울 딸 집으로 전화를 해서 “파출소에서 만나자”고 해서 직접 가서 미리 준비해 둔 출소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라”며 여행시 신고할 것, 모임 등에 신고하고 나갈 것 등을 말해 주었다.

2) 98.10.인가 경찰이 “보안관찰처분결정이 되었으니 경찰서로 오라”고 전화해서 직접 경찰서로 갔고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의 의무에 대해 들었다. 정기신고는 경찰이 3개월마다 신고서를 가지고 집으로 오거나 전화하면 내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작성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현재 나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매우 깐깐하다. 집 주변을 조사하기도 하고 자주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도 묻고 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동네 주민에게 “○○○(본인 지칭)이란 사람 어떡냐?”고 물었다고 주민이 알려 주었다. 이번 2회 갱신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불러서 갔더니 경찰 책상 위에 ‘○○○ 협조자 자료’ 파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2) 집회나 모임이 있으면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 한다. 북한에서 예술단이나 공연팀이 오면 경찰이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 한다.

3) 휴양하러 시골로 내려왔는데도 경찰이 항상 감시하니까 신경쓰이고 내가 누구랑 만났는지, 마을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참 답답하고 어이없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경찰과 접촉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성가셨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나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무시해오면서 하고 싶은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내 신분으로 인해 되도록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5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27 12:00~15: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 면제자 (1995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7년 1회 갱신, 2000년 면제결정)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을 들은 적은 없으나,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출소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 2) 출소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 2명이 타자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서 출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갔다. 경찰이 원 사건에 대한 확인,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면 답을 해 줬고, 다 끝난 후 무인을 찍었다. 그러나 출소신고 뒤 신고필증은 받은 적이 없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원 사건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4) 1995년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① 출소 후, 처 명의로 된 13평 주공임대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처가 생활비를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②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활이 극히 어려우며, ③ 특히 장기복역 출소자로 사회적응이 곤란하고, ④ 현재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상 불만을 표시하는 등 표면상 위해활동은 발견되지 않으나, 유사시 자진하여 위해활동을 하거나 위해분자의 활동에 동조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해야한다.
-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첫 처분때의 근거와 같다.
- 3) 보안관찰처분 면제의 근거 : 면제사유는 수감시 전향을 한 것과 1999.2.25 사면복권된 것 등인 것 같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 후, 경찰이 2~3일에 한번씩 전화를 하거나,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서 일상생활

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모임에 나가는지를 알려고 했다.

2) 첫 처분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어서, 신고를 한 적이 없다.

3) 정기신고는 3개월에 한번정도 경찰이 찾아와서 그냥 질문을 하고 갔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생계를 위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힘들게 한 적이 있다.

1995년 9월말경 개업했을 때, 원 사건 당시 나를 고문수사했던 경찰이 구청에 개업 허가를 하지 말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구청 위생과 직원이 찾아와 그 경찰을 아느냐고 물어와서 내가 그를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으니, 그 직원이 “개업을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좀 시간을 늦추긴 했으나, 허가를 내주었다.

2) 1996년 3월 말경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조작간첩 사례발표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담당경찰이 행사 전날 집으로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다음 날 새벽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자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따라 기차를 탔다. 내가 경찰들에게 항의하자, 경찰이 “우리도 행사장까지 따라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둘러대면서 기차역에서 내려 사라졌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처분 결정 직후, 원 사건도 조작으로 억울한데 또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 보안관찰처분 면제이후에는 심리적으로도 예전보다 편하고, 외형적으로는 경찰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서 좋다. 다만 면제가 되었다해도 원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을 받음으로 신체, 행동의 자유도 억압당할 뿐 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도 억압당하는 것 같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6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15 11:00~13: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8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1년 1회 갱신, 1993년 2회 갱신, 199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정지, 1999년 석방되면서 다시 진행되어 2001년 3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하기 전에 교도소의 담당관으로부터 보안관찰법과 출소신고의무에 대해 들었고 대상자신고서도 5부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왔다.
- 2) 출소한지 15일 후 2명의 경찰관이 집으로 출소신고 양식서를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하기에 읽어보고 사인을 해 주었다.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 및 결정과 갱신처분 청구 및 결정은 고지서를 받았다.
- 4) 원시신고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 경찰이 알려주었다. 경찰이 양식서를 가져와서 사인해 주었다.
- 5) 198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난 후, 경찰이 3개월마다 양식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읽어보고 사인해 주고 있다. 변동사항은 없었고 신고할 생각도 없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보안관찰처분의 이유와 갱신 이유가 다 기억나지 않는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처분 결정 직후에는 3개월마다 집으로 방문하여 누굴 만났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거기서 무슨 연설을 하였는지 등 일상생활 등을 물었다.
- 2) 갱신을 위한 조사시에는 활동이나 모임참가 등을 하지 않겠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 3) 검찰로부터는 매 갱신 때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경찰이 검찰로 출두해야한다고 전화했으나 가지 않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보안관찰에 일일이 신경을 쓰면 하루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그리 큰 불편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탄압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포괄적인 인권침해인가.

2)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있으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발급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없다.

3) 경찰이 집회나 모임 참가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적은 없으나 “모임에 나갈 때는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으므로 그 자체가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4) 경찰의 동태과악으로 인한 구체적인 큰 어려움은 없으나 경찰이 나를 감시한다는 것, 나의 일상에 대해 묻고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출소 후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어려운 감옥살이를 끝나고 나왔는데 또 경찰들과 영터리 법과 상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질리도록 싫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사상과 이념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을 당하는 것, 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다시 보안관찰로 일상을 제한하고 사상을 재단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이므로 보안관찰제도 하에서의 생활은 “밖에서 사는 감옥”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는 사람이라 사회적 활동이 별로 없지만 보안관찰 하에 있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겠는가. 이런 일은 절대 안 된다. 보안관찰법과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 모두가 영터리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일상을 제한한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들도 말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다. 내가 출소 후에도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해봤자 그것이 드러나서 경찰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찰들도 알고 있기에 내게 경고장을 보낸 적도 없고 나도 젊은 경찰들이 안되어 보여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반인권적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7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8 14:00~17: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6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7년 1회 갱신, 1999년 2회 갱신, 2001년 3회 갱신이 됨)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하는 날, 교도관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2) 출소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다.
- 3) 출소 후 7일째에 관할경찰서 과장이 직접 출소신고서를 써서 집으로 찾아와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나는 이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거부했다. 그러나 형님이 대신 신고했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신고내용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 4) 주거지 변동이 생긴 적은 있으나 변동사항을 신고한 적은 없다.
- 5) 보안관찰처분 청구과정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과정에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검사 서기가 “나가서 사먹고 오던지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 6) 1996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① 수감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 ② 남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음, ③ 출소 후 “출소는 단지 작은 감방에서 큰 감방으로 넘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기함, ④ 출소후 직업도 없이 장기출소자 환영 집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큼.

※ 1996년에 보안관찰 첫 처분을 받고, 그해 4.10에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의 상고판결을 소송의 대상이 된 보안처분의 효력이 만료되는 1998.2.27까지 하지 않았기에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재판이 지연됨으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보안관찰법 제24조)

2) 보안관찰처분 갱신 이유

- 첫 갱신때(1997년) : 사상전향 하지 않고, 다른 보안관찰자와의 만남 등 재범 우려
- 갱신때(2002년) : 1999년에 갱신되고 취소소송을 하고, 인권강좌에 갔다는 등 재범 우려. ※ 1차 갱신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했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2) 정기신고는 하고 있지 않고 3개월에 한번 정도 담당 경찰한테 “잘 지내느냐”며 전화가 온다.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1996년 7월에 담당경찰서로부터 “보안관찰법 18조 2항에 의거, 정기신고를 하라. 만일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받게 됨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조치서를 받은 적이 있다.
- 3) 집회나 모임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당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 “~집회 갔다오셨냐”, “누구에게 전화가 왔었냐”는 등 전화가 온 적이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출소 전에 경찰이 가족들을 만나 “다른 일을 절대 못하게 하라”고 협박을 한 것 같다. 출소신고부터 형님이 대신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 가족과 경찰, 양쪽에서 나를 감시해서 힘들었다.
- 2) 출소 후인 1995.9경 잠시 머물던 조카집에서 과천에 있는 김○○ 선생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날 과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가 도청이 되었는지 다음 날 담당경찰 2명이 과천으로 찾아와서 구인장도 없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보안관찰로 인해 큰 어려움도 없고, 크게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출소 초기 가족들을 협박해서 가족들과 나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또한 그것이 크던 작던 내가 행동하는데 심적 부담을 갖게 만들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8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0 15:30~19: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현재는 처분을 위한 조사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98년 검사가 준법서약서 문제로 교도소로 찾아왔을 때, 형을 다 살고 나가면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서 알았다.

2) 출소 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3) 출소신고에 대해서 출소 전 경찰이 이미 가족에게 “보안관찰대상자니까 신고해야 할 것, 안 할 경우 사법처리가 된다”는 등의 고지를 해서 출소하자마자 가족들이 신고를 하러 가자고 했다. 그래서 출소 2~3일 후에 가족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원 사건내용과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필증은 받은 적이 없다.

4) 이사 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알고 이사한 집으로 찾아왔다.

5) 보안관찰처분 청구과정에서 원 사건에 대한 내용확인을 하는 검찰조사를 받았다.

6)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담당경찰이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가져다주었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① 죄질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가석방 기간 중
- ② 40세로 활동능력이 왕성
- ③ 공범들이 출소하여 재범우려

2) 갱신 이유

인터넷 사용을 잘하기 때문에 복과 연락을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우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1) 원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2) 정기신고와 변동사항 신고, 주거지 이전 신고 등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처분결정 전에 오랫동안 살다가 나와서 사회적응도 잘 안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씩 연락을 해서 “~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모임은 가면 안됩니다” 등 내 생활을 억압하니까 참 힘들었다. 처음에는 두렵기조차 했다. 민가협 주최의 집회나 모임에 대해서도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또한 그 억압으로 인해 몸 뿐 아니라 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

2) 보안관찰 갱신 사유가 인터넷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났었다.

경찰이 문서(갱신결정서)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받았는데, 방에 가서 혼자 뜯어보니, “인터넷을 잘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담당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이 문서를 수령할 수 없으니까 다시와서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사유가 인터넷을 잘 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갱신처분을 내린다면,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당신들의 행위를 폭로하겠다.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credit카드도 발급 받았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냐. 정부가 민간 은행만도 못하다. 나는 오전 8시반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바쁘게 하루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겨를이 어디 있으며,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어디 있냐.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니고 있던 성당에 찾아와서 신자들한테까지 “요즘 뭐 하고 지낸다고 하더냐?,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더냐”등의 이야기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경찰들은 편하게 안부만 묻는 전화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전화받은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는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계속 감시를 하면 그것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3)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이익을 있을까봐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정기신고서를 그냥 써 준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내면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피보안관찰자로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써야한다는 것이 치욕스럽고, 불쾌하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29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23 13:20~14:4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처분취소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00년 처분취소 결정)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 교도소에서 교무과 전담반을 통해 보안관찰대상자신분임을 공지 받았고, 7일이내 신고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재구속의 우려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 2) 출소 후 4~5일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출소신고를 하였다. 신고시 경찰관이 질문하는 내용(출소한 교도소, 사건명, 현거주지 주소 등)에 답을 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신고서에 서명을 한 후 바로 신고필증을 받았다.
- 3) 보안관찰처분 전, 경찰관이 먼저 만나지는 전화를 걸어와 경찰서 주변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한 달에 한번정도 만났다. 만나서 나눈 내용은 주로 생활적인 면, 생활에 지장은 없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현재 정치에 대한 생각, 현재 만나는 사람, 집회참석 여부 등 이었다.
- 4) 첫 처분 청구 전, 검사의 소환을 받아 검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후 경찰조사를 한번 더 받았다.
- 5)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경찰서에서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해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이유 : 문서에 따르면 “① 죄질이 중하고 ② 출소후 기간이 일천하며 ③ 가석방 기간중이고 ④ 39세로 활동능력이 왕성하며, ⑤ 처의 이혼요구 등으로 가족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점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2) 처분의 근거 : 1998. 7.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석방되었으나,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북한과 직접 연계된 활동을 한 전력에 비추어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3) 취소소송 승소 : 첫 처분결정 때부터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왔으며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99년 5월 7일,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이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집단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안관찰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 “①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출소한 이후에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②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는 점이나 가석방기간중이라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소 후 1년 9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유는 원고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③ 새로운 직업을 얻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처분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원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다.
- 2) 정기신고는 한달에 한번 정도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담당경찰관이 하는 질문-생활, 집회참석, 만나는 사람 등에 대한 얘길 했었다. 그동안 직접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신고필증을 받은 적도 없었다.
- 3) 주소지 이전, 해외여행, 기타 변경사항 등 신고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 4) 미리 특정집회에 대해 금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후 전화로 집회 참석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8·15 전후의 집회 참석여부를 확인하였다.
- 5) 취소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 전화 연락을 하고 두 달에 한번 만났다.
- 6) 첫 처분 결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갱신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담당경찰관이 연락을 하여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피보안관찰자 갱신기간이 1년 인 줄 알고 있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기위해 담당경찰을 처음 만났을 때, 담당 경찰관이 “처음 이 업무를 맡아서 자신도 보안관찰법을 잘 모른다”, “생활을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 후 경찰과 서로 마찰은 없었다.

2) 담당경찰과 만나면 주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내용은 생활에 곤란은 없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현 정치에 대한 의견과 만나는 사람, 집회 참여여부 등을 꼬치꼬치 물었다.

3)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경찰이 소송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서류를 제출한 이후 연락이 없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보안관찰법의 법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법 집행에는 동의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2) 그러나 보안관찰법 자체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데-특히 같은 사건 동료들을 만나는 경우 등- 가려 만나게 되고 자기 행동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집회참석을 결정할 때에도 참여해야한다는 것 보다 참여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였다.

3) 사업적으로는 피보안관찰자임에 앞서 가석방상태이므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법인자격은 없고 개인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처지가 알려져서 사업상 지장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사회재적응을 돕는 것과 안보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느슨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안보의 측면만이 남아 있다.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울에서는 형식화 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받은 일은 없으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의 부담, 긴장감을 준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걸 제기하고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지금도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0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8 11:00~15: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1년 1회 갱신, 현재 2회 갱신처분을 위한 조사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법과 관련한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
- 2) 출소 직후, 담당경찰이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 3) 정기신고는 3개월마다 담당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일상생활을 물어 작성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999년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원사건이 중하다”는 일반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 2) 보안관찰 처분 갱신의 근거 : 2001년 고지서를 받았으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 직후에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고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그 후로는 잘 방문하지도 전화하지도 않았다.
- 2) 결정 후에는 담당경찰의 전화나 방문이 별로 없으나 대규모 집회나 북한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화해서 ‘날씨도 쌀쌀한데 집에 계시라’는 식의 권유를 한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일상생활에서는 경찰과 되도록 부딪치지 않으려고 한다.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면 일상의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보안관찰제도 아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 2) 다른 피보안관찰자들로부터 여권을 신청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있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 출소 직후에는 보안관찰법을 무시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 출소 한 1999년 당시에는 경찰관들도 그 이전처럼 고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안관찰자들의 개인적인 자세에 따라 보안관찰로 인한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는 해도 보안관찰법 그 자체는 악법이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1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15 15:00~18: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5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1997년 1회 갱신, 현재까지 보안관찰처분 3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시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니까 신고서를 작성하라", "출소 후 7일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는 작성하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2) 출소신고를 하지 않다가 한달 반쯤 지나서 출소신고를 했다. 경찰이 부모님택으로 전화를 해서 "아드님이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빨리 출소신고 하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이 사회 생활 하기 힘들단다. 그거 하나만 쓰라"고 애원을 하셔서 출소신고를 했다. 다방에서 경찰을 만나 출소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필증을 받았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가 물어봤던 것은 ① 왜 전향하지 않았느냐, ②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③ 우리나라의 현 체제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이었다.

4) 첫 처분과정에서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과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그러나 갱신 과정에서는 문서를 거의 받지 못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보안관찰처분 결정근거를 통지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물어본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① 왜 전향하지 않았냐 ②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2) 보안관찰 갱신의 근거 : 원 처분의 근거와 같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2~3일 후에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 이후부터 5일에 한번정도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왜 출소신고를 안하느냐, 요즘 뭐하고

지내냐”, “장거리 출타를 할 때, 외국여행 등을 갈 때 꼭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2)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고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원시신고는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

3) 정기신고는 ① 초반에는 경찰이 3개월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서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만 해줬다. ② 최근 약 2번 정도 담당경찰을 만난 적이 있다. 둘 다 카톨릭 신자라서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성당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 요즘은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 우리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친한 척을 한다.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받고 만나기도 한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후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다. 그러나 혹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까봐 많이 신경이 쓰였다. 특히 92년 9월 연행되고 난 후, 동생이 ○○고시를 볼 때 면접과정에서 “형이 빨갱이여서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출소 이후에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보다 나 스스로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2) 보안관찰을 받는 것 자체가 꼭 별레가 몸에 기어가는 느낌과 같다. 담당경찰이 굉장히 친한 것처럼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는게 너무 당황스럽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1년 가을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다. 특히 아들이라면 보안관찰을 받는 아버지로 인해(요즘은 연좌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혹 직업군인 등의 꿈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군대에 가더라도 “요시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웠다. 그런 사실로 인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욕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원정 출산이라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가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폐해를 느낀 때였던 것 같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궁극적으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보안관찰법과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걸림돌이고, 인권실현의 걸림돌이므로 통일운동이 대중화될수록 더욱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은 법리적인 논쟁과 국민들의 대중적인 지지가 더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2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4 14:00~17: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2000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2년 1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전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 2) 출소신고는 담당경찰이 출소 5~6일 후 집으로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나와서 출소 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 가족관계, 친분관계 등을 적은 「출소사실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 4) 2000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는 ① 수감 중 양심수 석방, 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공안사범 동일사동 수용 등을 요구하며 식사 및 입실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②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③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협의회 모 기자)을 10여회 접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 자료가 없는 등 유사시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는 갱신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민중동문회 회장이나 개혁신당 추진위원등 대중활동도 하지 말고 생업에만 종사하라”고 얘기했다. 결국 이것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 이외의 어떤 활동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원시신고, 정기신고, 변동사항 신고, 주거지 이전 신고 등 모든 신고를 다 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처분 전에 경찰한테 내 핸드폰으로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가족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한번은 일부러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내 안부를 물은 일이 있는데, 부인이 짜증을 내면서 불안해 했다.

2) 집회 관련해서 경찰이 전화를 한 적이 있다.

① 올해 아시안게임때 “혹시 부산에 가냐? 북측 응원단 만날까봐 전화했다”며 전화를 했고, ② 올 8.15때는 아침마다 “서울에 혹시 가느냐”는 전화가 매일 왔다.

3) 경찰의 미행 등을 통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이 심하다. 예컨대 2001년 겨울, 민주동문회에서 겨울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날 마침 폭설이 내려, 오던 사람들도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어쨌든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올해 갱신을 위한 경찰 조사시 우연히 보게된 경찰의 동태보고서에 그날 행사의 식순, 참가자 명단, 내용 등이 다 적혀있었다. 이런 걸로 봐서 계속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늘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내 생각을 검열을 하게 되므로 힘들다.

2) 예전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직업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피보안관찰자’라는 내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위축감이 드는데, 그런 심적인 불안함이 힘들다.

3) 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개인이 평생 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끔은 이 나라를 등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법은 형식적으로는 별 내용이 없지만, 합법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3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9 13:00~16: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직전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을 들었으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 2) 출소 2~3일 후,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 원 사건 내용, 인적사항을 적은 「출소사실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필증은 받은 적이 없다.
- 3) 처분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4) 1999년 1월경에 첫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검찰에 가서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직접 수령, 서명하라고 하였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 사유는 미혼이고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 2) 보안관찰처분 갱신 사유는 ① 미혼이라는 점, ②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원시신고, 정기신고 등 모든 신고를 규정대로 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현상적으로 해외여행의 부자유에 대한 부담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통제 및 규제에 묶여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겉으로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내면의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법이기에 보안관찰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보니 보안관찰의 문제를 크게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러나 문득 내가 무엇인가에 감시 통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4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6:00~18: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현재 기간 갱신을 위한 조사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하기 며칠 전 교도소 보안계장이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것 아느냐”고 물어봐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작성하려고 했으나, 거부했다.

2) 출소신고는 담당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출소신고해라”, “우리 만나자. 내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왔으니까 도장만 찍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후 계속 연락이 와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담당경찰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내 도장을 파서 찍은 다음 제출한 것 같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 사유를 고지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사유 또한 잘 모르겠으나, 현재 정기신고 등 신고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갱신의 사유가 된 것 같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1) 나 스스로는 원 사건에 대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들이 “신고하라”며 하도 괴롭혀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아마도 자기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내 도장을 파서 찍은 다음 제출하는 것 같다.

2) 계속 정기신고 등을 하지 않으니까 경고서가 날아온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일 때, 경찰이 전화도 없이 내가 없는 집에 찾아와서 시부모님을 만난 적이 2번 있다. 그때 담당 경찰이 시부모님께 “당신 며느리가 보안관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계속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해서 시부모님이 위협적으로 느끼셨다.

2) 처분 전이었는데, 5월이 되어서 민주열사를 기리고 참배하기 위해 망월동 묘역에 갔

다오자 경찰이 전화를 걸어 “왜 망월동에 갔느냐?”, “누구와 만났느냐?”, “누가 왔었느냐”며 꼬치꼬치 물어보았다.

3) 처분 결정 후 담당경찰이 직접적으로 집회참가를 금지하는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집회 전에 전화를 해서 “오늘 ~ 집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냐”, “오늘 집회 식순이 어떻게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집회 후에는 “오늘 ~ 집회 오셨던데요...”라고 전화를 한다. 농민대회, 민중대회, 통일집회 등 거의 모든 집회가 열리는 날에는 확인하듯이 전화가 꼭 온다. 그러나 최근 6개월 사이에는 경찰로부터 전화 오는 것이 약간 줄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

4) 계속 정기신고 등을 하지 않으니까 경고서가 날아온 것 같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나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이 힘들고, 특히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곤란한 적이 있었다.

2) 나는 시의원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사회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게 제약되고(내 의지에 의해서건,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건),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 또한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낄 때는 너무 서글프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1) 보안관찰법은 대상자인 개인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가족 및 주변의 사람들의 머릿속도 제약하는 법인 것 같다.

2) 내가 보안관찰법을 불복종하는 이유는 내 사건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보안관찰법 자체가 사람들의 심적, 외적 행동을 가로막는 악법이기 때문에 불복종하고 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5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6 12:00~14: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취소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취소소송 제기. 1999년 승소판결)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전 대상자신고서를 작성한 적도, 출소신고에 대해 고지받은 적도 없다. 출소 당일 날 출소증명서를 주면서 그것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

2) 출소 직후에도 내가 출소신고를 한 적은 없다. 출소 전 이미 집에 다녀간 경찰이 부모님께 “출소신고를 하라”고 내게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출소신고를 하지 않자, 경찰이 부모님에게 “다시 구속될 수 있다”며 위협하였으며, 결국 내 대신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셔서 출소사실을 알리고 진술서를 작성하셨다. 이를 알고 97년 7월 경 내가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집으로 전화하여 부모님을 괴롭히지 말라, 내게는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내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들끼리 서로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서울에 가야하니까 경찰서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집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부모님을 괴롭히는 바람에 그 해 12월, 내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하고 출소신고를 했다.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받지 못했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서만 받았다.

4) 원시신고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경찰이 방문해서 몇 가지 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안다.

5) 정기신고는 경찰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누구를 만나느냐,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등의 질문으로 동태파악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보안처분결정 전, 주거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한다고 경찰에게 들었지만 이사했을 때 신고하지 않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같은 사건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동거중

이다,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불식한 사실이 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혁명 사상에 몰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되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형기간 중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하며 교도소 내 소란행위를 한 바 있고, 수형기간 이후에도 관할경찰서에 출소사실신고를 미루는 등 6개월동안 용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를 고의로 불응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2) 처분취소의 과정 및 이유: 첫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 취소소송을 했는데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뚜렷한 생업이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을 받을만한 충분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복역 중 단식으로써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등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다거나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거나 또는 출소 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 신고를 해태하였다거나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일 뿐...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전부터 경찰이 집에 와서 부모님께 내가 출소하면 출소신고를 시키라고 했다. 출소 후부터 나는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아서 경찰과 직접 마주친 적은 없다. 그러나 집으로는 2일에 1회꼴로 전화를 해서 “딸이 어디 갔느냐, 경찰서로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왜 가족인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느냐”며 괴롭혔다. 그로 인해 부모님들이 너무 괴로워하셔서 내가 집으로 내려간 7월 경에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찰서로 직접 전화한 적이 있다. 그래도 계속 집으로 전화하고 방문하였기에 12월에는 내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경찰의 조사에 응했다.

2) 서울로 이사온 후, 당시 운영하던 식당으로 경찰이 찾아온 후, 그 후로 3개월마다 2~3회 더 들러서 일상에 관한 것을 묻곤 했고,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보안관찰대상자이니까 1년 정도 관찰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보안관찰처분청구서가 왔길래 “그 동안은 처분자도 아닌데 왜 찾아와서 귀찮게 했느냐”며 화가 나서 따져 물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전에도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출소 후 6개월 동안은 내가 집에 없으니 이렇게 전화하고 방문해서 부모님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안부를 물어 귀찮게 하고 심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까다롭게 굴어 부모님을 괴롭혔던 것이 가장 화가 난다.

2) 서울로 이사와서 아파트에 살 때 이웃 사람들로 부터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법무부 측 자료를 보니 이웃사람들로부터 탐문수사를 한 기록이 있다.

3) 보안관찰처분 결정 전, 사건 관련 동료들을 만나러 목포와 대전 교도소에 갔는데 내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당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출소하면 설사 그들이 몰래 감시를 할지언정 겉으로는 일상생활이 정상인과 같을 줄 알았는데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대상자로서 그 전보다 더욱 불안정한 신분을 지니고 있으니 나는 물론 가족들이 너무나 불안해 했으며, 어머니와의 원치 않은 불화도 있었다.

2) 사생활을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활동과 사상이 많이 위축되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출소 후에 예전의 친구들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뵙는 것이 사라진 도리인데 이것도 못하게 하니 스스로 인간다운 도리를 못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괴로웠다.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기분으로 생활했다.

3)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침해다. 보안관찰은 내면으로 자기를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법이기에 더욱 무서운 억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배상을 해야한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현재 처분 취소자이지만 다시 청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심란하다. 또 지금의 남북화해분위기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 건이 빌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극적이다. 보안관찰에 대해 많이 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분단체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많은 억압을 가하고 있어서 북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배척하며 처벌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 법은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6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6:00~19: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취소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 1999년 취소소송 제기, 처분취소 판결)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 전, 출소신고나 의무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 다만 출소 다음 날, 교도소 보안주임이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 있다”는 말만 해 주었고 부모님은 신고하자고 했으나 나는 거부했다.

2) 7일이 지난 후 아버지가 경찰서에 나의 출소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하셨다. 그런데 경찰은 그제서야 출소신고하라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나는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내가 출소했다는 것을 알렸으므로 출소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물론 신고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거부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출소신고의무 불이행으로 1998.11. 아침에 체포당했다.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소사실 미신고로 불구속입건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 벌금 100만원형을 내린다”는 약식명령서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형식상 서면신고만 신고로 인정한다”며,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3) 1999년에 보안관찰 처분 결정서를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동안에도 경찰이 3개월마다 집으로 전화를 했고, 어머니의 대답으로 정기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청구서에 따르면, “재소중에도 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출범식 보장 및 이적단체 지정 철회 등을 주장하며 2회 단식농성을 한 바 있고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출소신고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입건된데 대해서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알릴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사회로 의식주에 있어 평등한 것이 좋은 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보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음”이고 결정서의 이유도 같다.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 곧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취소이유는 “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소 후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② 출소 후 그 사실의 신고를 거부한 것은 따로 보안관찰법에 의해 약식 명령이 청구되었고, 그 밖에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범할 개연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고, ③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극히 추상적인데다가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 등과 어울려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을 넘어서서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집회 참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복역 중 단식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원고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 내에 속하고, 복역 중 또는 출소 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거나 또는 검사 앞에서 북한은 의식주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거나,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의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징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안관찰법 2조 3호의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8.15행사나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에는 집으로 전화해서 “이번에 참가하느냐, 그 날 무엇 하느냐”등을 물어보았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내가 직접 전화받은 적은 없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신고거부로 체포당할 때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아침에 평소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체포하는데 ‘이 나라가 결국 이 정도구나. 범치국가라면서도 보안관찰법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을 가지고 실제로 한 행동도 없는데 잡혀가는구나’라는 생각에 힘이 빠지고 우울했다.

2) 취소결정이 났지만 언제 또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될 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젊은 시절의 시간, 정신, 노력, 돈 등 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소비했다. 가족들이 수감 생활등 때문에도 많은 신경을 쓰셨을텐데 만기로 출소한 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고, 나도 이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 법이 아니다. 처분하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으로 증거없이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에 근거해 위법성을 따져 그에 맞게 처벌한다’는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7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30 18:00~21: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의무불이행으로 2001년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남)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시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 2) 출소 후 관할파출소에서 집으로 찾아왔으나,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출소 후 1주일 정도 뒤에 관할파출소 경찰관(2명)이 와서 신고할 것을 권유했으나 거부했으며,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1주일에 한 통씩 우편배달 되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
- 3) 계속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1년 4월 23일 경찰서로 연행되어 이튿날 풀려났다. 이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2002년 12월 14일 교도소에서 8일동안 수감되었다. ※ 12월 13일 밤, 파출소 순경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보안관찰 처분대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서 벌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벌금납부를 거부할 뜻을 밝히자 바로 아파트로 올라와서 함께 동행할 것을 강요해 “출두기한이 12월27일까지이므로 그 때까지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말에 한참동안 싸우다가 출두를 해서 결국, 교도소에서 노역장을 살았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보안관찰법 불복종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수령을 거부해 보안관찰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아서, 보안관찰처분 사유를 잘 모르겠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1999년에 출소하고 나서 1주일 정도 후에 파출소에서 첫 방문했으나, 아예 만나지 않았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나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보안관찰법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는 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 파출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한다. 출소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경

찰서 보안계 2반장이, 그 이후는 파출소 경찰들이 두 사람씩 왔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파출소에서 한 달에 두 번꼴로 계속 전화를 하니까 중2인 딸이 파출소에서 온 전화 인지 금방 알아서 불쾌해 했고, 또한 집으로 경찰이 자꾸 찾아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고 했다.

2) 경찰이 신고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한밤중에도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다른 집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 집만 경찰이 와서 “아빠 어디 가셨냐” 자꾸 묻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불까 걱정되고, 아이들이 기죽을까 걱정이 된다. 집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경비실로 전화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낸다.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했다. 한번은 아이들하고 함께 외출하려고 나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들과 마주친 적이 왔다. 그때 딸애가 나를 막아서면서 경찰한테 “우리 아빠 또 잡으러 왔냐”고 소리치며 식은땀을 흘렸다.

3) 경찰들이 자주 와서 경비실을 통해 뭔가 알아내려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경계하기도 한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출소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일상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할뿐더러 신경 쓰느라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한다. 이번 기소 건도 판사가 내 형편을 고려해서 소액의(내 형편에서는 큰 돈이지만) 벌금형을 내린 듯 한데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

2) 나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안관찰법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감옥살이를 나와서 보안관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쉽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라 이 악법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싶다. 전면불복종을 선언한 이후 언제든지 끌고 가면 끌려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 보안관찰법을 국가보안법의 아류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이 법이 존재할 것인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바뀌면서 글자 몇 구가 바뀌어졌다. 부친이 사회안전법 피해자라서 어릴 적부터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거기에 굴종을 시작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날을 세우는가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무조건 강하게 막아야지 내 자유가 확보되지 그냥 대충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8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8 16:30~19: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1 1회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 직전에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은 들었으나,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

2) 「출소사실신고서」는 출소 2~3일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같이 다방에 가서 원 사건내용,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 인적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3) 보안관찰처분 과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4)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는데, 담당경찰이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가져와서 보여줬다가 다시 가져갔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아무도 공지해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1) 첫 처분이 내려지고 원시신고는 알려주지 않아서 신고한 적이 없다.

2) 정기신고는 3개월에 한번씩 인터넷에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여 파출소에 갖다준다. 그 외 주거지 이전 등의 신고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담당경찰한테 전화로 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한달 뒤에 출소신고를 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그로인해 크게 어려움은 느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부담스럽다.

2) 집회 참가와 관련하여 담당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아닌 부인의 참석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전교조 회원인데 무슨 모임, 집회에 갔느냐고 물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평생 따라다닐 법인데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안관찰법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많이 불편하지만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귀찮아도 그냥 신고한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 보안관찰법은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담당 형사가 고향선배라서 편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지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39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10 13:00~16: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2002년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 선고, 현재 항소 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 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출소 후 집으로 '출소신고하라'는 등기우편이 와서 알게 되었다. 물론, 출소전 날 공안담당 교도관이 무슨 양식을 쓰라고 해서 그걸 작성한 적이 있다. 나중에 법을 통해 그것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경찰이 부모님이 계시는 집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출소신고서를 쓰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2) 출소 후 약 9개월 정도가 지난 2002년 4월경 오전 9시에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3시간 후에 풀려난 적이 있다. 이 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담당형사가 내가 살고 있는 자취집으로 찾아와서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 집에 (나에 대한 설명)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에는 잘 들어오나" 등을 물어보며 동태파악을 한 적이 있다.

2) 출소신고를 하지 않으니 경찰이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찾아가서 "아들에게 빨리 출소신고를 하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집으로 전화를 해서는 동생에게 "오빠한테 빨리 출소신고를 하라고 해라"고 해서 가족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3. 보안관찰법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내가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에게 또 형을 주는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경찰들도 사문화되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보안관찰을 나만 지켜야 한다는 게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찰들도 신고의무 등을 제때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고, 보안관찰을 적용받는 사람들만 신고의무 등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것 같다.

2) 경찰이 자꾸 연락을 하니깐 원만하던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0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3.1.6 14:00~16: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취소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처분 취소소송, 1999년 승소 판결)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보안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은 출소 전에는 몰랐고, 출소 후 담당경찰이 집으로 방문했을 때 이야기 해줘서 알았다. 교도소 내에서 대상자신고서를 작성한 적도 출소신고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

2) 출소 후 집으로 방문한 경찰이 가져온 출소사실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신고필증은 받지 않았던 것 같다.

3) 보안관찰처분 청구 및 결정 사실은 고지서를 받았다.

4) 원시신고에 대해서는 결정처분을 받으며 알았고 잘 기억나지 않으나 경찰이 방문해서 원사건 등 몇 가지 묻고 그것이 그대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안다. 정기신고는 경찰이 3개월에 1~2회 가량 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몇 가지 질문으로 동태파악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중에 경찰이 양식서를 주고 작성해 달라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5) 주거지 및 기타 변동사항, 여행 등을 자진신고한 적은 없다. 안 해도 그들이 알고 전화하거나 찾아온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같은 △△△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원고들이 동거 중이다,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불식한 사실이 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혁명 사상에 물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되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소소송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형기간 중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하며 6회에 걸쳐 불식 등 교도소 내 소란행위를 한 바 있고, 수형기간 이후에도 1997. 강원교도소에서 조직원이었던 ○○○와 접촉하고, 같은 해 7. 박노해 명상수필집 '사람만이

희망이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같은 해 7. 출소자 환영대회에 참석하는 등 △△△ 관계자와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적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은 충분하다"로 되어있다.

2) 취소과정 및 이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직후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뚜렷한 생업이 있으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을만한 충분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 출소 후 ○○○와 만난 것은 그가 출소할 날짜를 알고 찾아간 것 뿐이며, 출판기념회에는 초청장이 와서 참석한 것이며, 출소자 환영대회는 그 동안의 수감생활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술 한잔 나누기 위해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복역 중 단식으로써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등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다거나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거나 또는 출소 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 신고를 해태하였다거나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일 뿐이며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며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97년 9월경 가게를 열었다. 자진신고한 적은 없었는데 경찰이 알고 찾아와서는 자신이 담당경찰이라고 말했다.

2) 취소소송 도중에도 담당경찰이 3개월마다 1회 정도 연락했다.

3) 보안관찰처분취소 이후에는 경찰의 전화도 방문도 없다. 드러내놓고 감시하거나 동태파악을 하지는 않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모임에 나가느냐 등의 일상에 관한 질문을 해서 내가 "이런 일로 경찰을 영업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우니 자주 안 봤으면 좋겠다. 기왕 왔으니 식사나 하고 가고 앞으로 장사나 잘 되게 도와줘라"고 말하기도 했다.

2) 방문해서는 친한 척 하면서 "요즘 예전 분들은 자주 만나십니까"라고 간접적으로 묻곤 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다 실태보고서, 진술서가 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직접 내게 물으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은 주

변에도 탐문을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때 경찰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자료 가운데는 ○○교회 전도사로부터 나에 대한 동태를 파악코자 경찰이 작성하고 진술한 조서가 있었다. 그 내용에는 출소이후 불순한 언동이나 특이한 방문자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 등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의 동태파악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못 견디게 싫은 것이다.

3) 처음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경찰들이 집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신다. 이 때문에 나도 괴롭다. 경찰이 출소 후에도 전화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 나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컸다.

4) 1~2회 경찰이 집으로 전화해서는 “오늘 집회와 모임에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5) 2002년 여름에 여권신청을 했다. 그 당시에 ‘피보안관찰자였는데 여권이 나올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사업상 해외에 갈 일이 있어도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면복권이 되었어도 여권이 쉽게 나오지 않을텐데...’ 라며 스스로 제약했다.

6) 경찰이 직접 집회나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한 적은 없으나 스스로 잘 나가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큰 인권침해는 자기 검열과 불안감, 불쾌감 등이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출소 전에도 ‘나가게 되면 계속 동태파악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게 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불안감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출소 후에도 상당기간은 자유나 사상 등에 대해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일 때부터 ‘보안관찰에 대해 뭔가 대응을 해야할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현재는 취소자이고 경찰이 찾아오지 않기에 평소에는 보안관찰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 그러나 다시 피보안관찰자의 상태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감은 항상 있다. 특히 취소가 되어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다시 피보안관찰자가 된다면 더욱 괴로울 것 같다. 보안관찰법은 이제는 현실에서는 무력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활동과 사상을 검열하게 만들고 있다. 법의 존재여부 및 실질적인 힘과 상관없이 적용받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게 만드는 법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1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26 17:00~19:0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 처분 취소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 소송 제기하여 2000년 승소)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은 출소 직전에 담당 교도관이 말해 주었고 교도소에서 출소대상자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출소신고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했다.

2) 출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담당경찰관에게 들으니, 그가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서 내 출소사실을 확인하려고 와 있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 경찰관으로부터 신고하라는 전화가 왔다. 그러나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 출소신고라는 것은 출소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면에 담긴 의미는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3) 1998.12. 출소신고를 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6조, 27조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1심에서 1백만원 벌금형이 나왔고 현재 항소중이다.

4) 보안관찰 청구 및 결정은 고지서를 받았다.

5) 출소신고거부로 소송준비 하면서 원시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하지 않았다.

6) 정기신고는 취소소송 중이었으므로 경찰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복역 중 안기부법 폐지를 주장하며 수 회 단식을 한 사실이 있고, 출소사실의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재판 중에 있으며, 보안관찰처분관련진술을 거부함과 함께 검찰소환에 불응하며,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공범인 ○○○이 보안관찰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 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 취소과정 및 이유: 첫 처분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2.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취소이유를 “복역 중 안기부법 폐지를 주장하며 수회 단식한 것은 원고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 내에 속하고... 출소신고를 거부한 것은 따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경찰과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출소 후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폐지를 주장한 것은 원고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거나... 공범이 보안관찰 중에 있다는 점은 더더욱 원고의 재범 개연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정...(판결문)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담당경찰이 1차례 바뀌었다. 처음 담당은 출소신고거부를 문제삼아 집으로 자주 방문하고 강압적으로 대했으나 나중 담당과는 큰 문제는 없었다.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라며 2달동안 수 차례 집으로 전화와 방문을 했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 보안관찰처분결정 후 취소소송 기간에는 전화로 소송 진행상황을 물었다. 처분취소가 된 후에도 2~3차례 더 전화해서 “형사사건(신고의무 불이행 기소건) 항소심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었다. 내가 “나는 더 이상 피보안관찰자가 아니니 이런 전화를 내게 할 이유도, 내가 대답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 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

3) 검사의 출석요구에는 스스로 응한 적은 없고 출소신고를 하지 않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99.12. 강제 연행된 후 검찰로 넘겨져서 조사를 받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이후 출소신고 거부를 이유로 두 달 동안 경찰관이 여러 차례 집으로 전화하고 방문하여 가족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했다. 특히 어머니는 그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내 일로 괴로움을 당하셔서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신 것 같아 늘 마음에 사무친다.

2) 출소신고거부로 늦은 밤, 집 앞에서 연행되었을 때는 당황스러웠다. 정당하지 못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중죄인을 다루듯 작은 체구의 여성인 나 하나를 상대로 형사 두 명이 양 팔을 붙들고 이웃들이 다 보는데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다.

3) 내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두 번이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검사는 매우 고압적인 자세였다. 첫 조사시에는 아직 피보안관찰자도 아닌데 젊은 담당검사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대했다. 심지어는 “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다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의무를 어겼어”라며 격하고 심한 표현들을 썼으며 두 번째에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신고의무를 어긴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중죄를 저지른 것처럼 함부로 대해서 ‘3~4년 전 원사건으로 조사받던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4) 내가 둔한 편이어서 직접 눈치를 채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자료를 보니 7~8cm정도 되는 자료집에 출소 후 내가 누구와 만났고 무엇을 했으며 어디에 갔다가 몇시에 돌아왔는지가 나도 기억 못할 정도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탐문수사를 해 얻어낸 내용들도 있었다. 그를 통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면 건너편 벤치에 사복경찰이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곤 했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제야 일어나 갔다.

5)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연애시절이었다. 물론 남자친구도 나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테이트라는 지극히 사적인 일을 할 때 누군가 감시하고 따라 다니며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답답했다. 특히 결혼단계에 이르자 이미 형을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로 인해 그것이 연장되고 있으니 시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불안했고 막막했다.

6) 현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보안관찰처분도 취소 되었지만 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 단란한 생활을 지키려면 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안 될테고, 그러자니 하고싶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괴롭다. 이처럼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안관찰법이다. 형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도 늘 마음에 남아 뒷덜미를 잡고 있다.

7) 집회나 모임 참가에 대해 내게 직접 방해한 적은 없으나 가족들에게 전화나 방문시 “○○가 집회나 모임에 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가지 못하게 말려라”라는 말을 하여 심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든다. 내가 의지가 있으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지라는 것에 보안관찰법이 미리 제동을 걸고 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처분결정을 받고 난 뒤에는 취소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또 다시 이 피곤한 과정을 되풀이 해야하는구나. 3년형을 받고 만기출소를 했으므로 그 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실컷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기도 전에 지쳐 버리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펐고 의욕도 나지 않았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승소해서 처분취소자인 지금도 여전히 언제든 다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완전한 승소 아닌 잠정적 승소 상태’이다. 그래서 승소판결 직후에는 흥가분했으나 지금은 불안감이 남아있다. 보안관찰법은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을 외부적으로 검증하여 사회 전체의 일률적인 잣대에 맞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법이다. 즉, 국가권력이 인정한 사상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사살한 후 평생동안 쫓아다니며 확인사살 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2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8 12:30~16:00
현 신분 상태	처분 취소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처분 취소소송 제기, 승소하여 처분취소)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했다.
- 2) 출소 일주일 후에, 스스로 관할경찰서에 찾아가서 원 사건 경위, 인적사항, 전향 여부 등을 적은 「출소사실신고서」를 작성했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 3) 출소 뒤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 전에 관할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 4) 보안관찰처분 과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사 내용은 원 사건 내용을 기본으로 “공범인 ○○○를 존경하느냐”는 등의 질문이었다.

2.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1) 처분 근거를 고지받은 적은 없으나, 검찰의 청구사유가 그대로 처분 이유가 된 듯하다. 검찰의 청구이유는 “① 전향을 거부하였고, ② 죄질이 중하고, ③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며, 가석방 기간 중이고, ④ 34세로 활동능력이 왕성하며, ⑤ 일정한 직업없이 처의 수입 등으로 생활하고, ⑥ 반성하지 않으며, ⑦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첫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했는데, 2000.11. 대법원에서 처분취소 최종 결정이 났다. 취소소송 승소 사유는 판결문에 따르면 “① 원 사건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출소한 이후에도 준법서약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만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④ 출소후 기간이 일천하고, 가석방기간이라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소후부터 지금까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⑤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점은 극히 추상적인데다가 다른 피보안관찰자들과 어울려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을 넘어서서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집회 참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⑥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수입 등으로 생활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출소 직후 부모의 도움과 처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1999년 1학기부터 ○○○대에 적을 두고 학업을 재개하였고, ⑦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미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에도 다시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이 생각되고, 국가보안법은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으로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견해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로써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3. 보안관찰처분 내용

- 1)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2) 정기신고는 3개월마다 한번씩 갖다준 양식을 복사해서 간단하게 작성한 후, 우편으로 경찰서에 보냈다.
- 3)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도중에도 경찰이 정기신고를 요구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갖다준 양식을 복사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경찰서로 보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처분 전에 한달에 한번정도 전화가 와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한번은 경찰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로 찾아와 약간 불안해 하신 적이 있다. 집회나 모임 참가는 특별히 방해한 적은 없지만, 집회 후에 전화를 해서 집회에 참석했는지 물어봤다.
- 2) 처분 후에 검사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집회참가와 관련한 전화를 3번 받았다. ① 99년경 북한공연단이 왔을 때 “안가는게 좋지 않겠냐”, ② 99년경 “외국인 누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 어디에 가느냐”, ③ 99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는 전화가 왔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 처분 결정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결정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출소 전부터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취소 소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 출소신고와 정기신고 등의 불편함을 받아들였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3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27 16:30~19: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86년 사회안전법상 주거제한 처분, 1988년 주거제한 기간갱신 결정, 1990년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8회 기간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전 교도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라는 사실과 “출소후 관할경찰서에 출소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보안처분 대상자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

2) 출소하는 날, 경찰이 교도소 정문 앞으로 찾아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출소신고를 했다. 경찰이 질문을 하면 답하는 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고, 나중에 무인을 찍었다. 신고 필증을 받지 못했다.

3) 보안처분 청구과정에서 검찰조사는 한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4) 1986년 사회안전법상 주거제한 처분 결정을 받았고, 결정문은 우편으로 받았다.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바뀐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사회안전법상 주거제한 처분의 사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보안처분 주거제한 기간 갱신결정(1988년) 사유는 고지받지 못하여 잘 모르겠다.

- ※ 89년 6월 16일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연속해서 갱신됨.

- 보안관찰처분 2차 갱신(1990년) 사유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초가 된 원인이 사실이 대부분 상존하고, ② 그 동안 뚜렷이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속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기간을 갱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3차 갱신(1992년) 사유 : 2차 갱신때의 근거와 같다.

- 4차 갱신(1994년) 사유 : ① 북한 대남공작원에 포섭되어 월북을 기도하는 등 대상

범죄의 죄질이 극히 중하고, ② 교도소 복역시 전향을 거부하다가 형기종료일이 임박하여 전향을 하였고, ③ 이 건으로 복역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④ 사업, 동업 등으로 타 보안관찰자와 수시접촉하는 등으로 미루어 유사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교육개선을 위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갱신함이 상당함.

■ 5차 갱신(1996년) 사유 : 사유를 고지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 6차 갱신(1998년) 사유 : 일본인 무역회사 한국지사 대표로 근무하며 본인과 처의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나 ① 수시 일본으로 여행하여 불순분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고, ② 재야 인사, 장기수협회 회원, 보안관찰대상자들과의 접촉이 있는 등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기간을 갱신함이 상당함.

■ 7차 갱신(2000년) 사유 : 보안관찰처분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 8차 갱신(2002년) 사유 : 보안관찰처분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 1999.2.25 복권 되었음에도 계속 갱신이 되고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보안처분 결정 후 3일 이내에 하는 원시신고는 고지받지 못했다.

2) 정기신고는 경찰에게 도장을 파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출소 이후 담당경찰이 장인어른을 만나 내 상황을 다 이야기해서 처가댁으로부터 부인과의 이혼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결국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의 자유까지도 앗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 친지나 친구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 나를 만나면 경찰에게 동태과악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많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나는 보안관찰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보안관찰법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일제식민지 시대때 일제의 만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4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8 18:00~21: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초 보안관찰처분, 현재 2회째 기간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 전, 담당 검사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자세히 일러 주었고 교도소 내에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출소 직후, 경찰이 거처로 전화하여 이름, 나이, 사건 등을 물었고 이에 응해서 답했다. 변동사항은 직접 경찰에 알렸고 정기신고는 경찰이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 묻는 것에 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고지서를 받았으나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처분 전에는 1주일에 1~2번씩 방문하고 매일 전화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경찰서 형사는 집 주인에게 “이 사람은 지독한 사상범이라서 내가 전부 말할 수 없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감시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집주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2) 담당경찰이 예고도 없이 방문하여 불편하다. 한번은 일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갔더니 형사가 쫓아온 적도 있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2000년 사면복권되어 여권을 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담당경찰이 여행 시에 신고를 하고 가도록 강요하여 그렇게 한다.

2) 가족이 있지만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내가 먼저 가족을 만나지 않는다.

3) 집주인에게 담당경찰이 나의 전과를 밝히고 보안관찰 중이라는 것을 알려 거처에서 쫓겨난 적이 2~3회 있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를 통한 활동 능력의 향상 및 자신의 행동방식과 신념에 대한 확신 획득 등에서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제한을 당하고 있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나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 다른 이들의 의견과 감시의 눈길을 신경써야 한다는 보안관찰의 논리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5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1 16:00~18:30
현 신분 상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2002년 출소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만원 선고, 현재 항소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1) 출소전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과 출소 7일 후에 출소신고를 하라는 고지를 들었으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다.

2) 출소 직후 경찰이 전화를 해서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3) 출소 후 8개월여가 지난 후였다. 하루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벌금을 내기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이 갑자기 나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며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곧 관할경찰서로 넘겨져 47시간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6조, 27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중이다.

2.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출소신고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5차례 받았다.

3.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출소 뒤 5~6일 후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경찰이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출소신고를 해라”, “한번 만나자”고 했다.

4. 보안관찰법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나는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소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되는 것도 감수했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일제시대 사상범에 대해 적용했던 법을 현재에 내가 왜 적용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왜 또 보안관찰법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6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14 14:00~16: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2001년 1회 갱신, 2002년 2회 기간 갱신)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쓰라고 한 적이 없다.
- 2) 출소 2~3일 후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경찰서에 와서 출소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가서 원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을 적은 출소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신고필증은 받지 못했다.
- 3) 변동신고는, 이사 하기 전 경찰이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다.
- 4) 첫 처분시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기간 갱신을 위한 조사시에는 조사를 받았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처분의 이유는 ① 죄질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②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며, ③ 가석방기간 중이고, ④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⑤ 처의 수입에 의존하여 하류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근거

■ 1차 갱신(2001년)의 근거 : 보안관찰처분 결정이유를 고지받은 적은 없으나, 갱신을 위한 검찰의 청구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검찰의 고문수사에 의하여 간첩으로 몰려 평생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면서 재심청구를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② 1999.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③ 처의 수입에 의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및 과거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할 때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기간을 갱신한다.

■ 2차 갱신(2002년)의 근거 : ① 원 처분 범죄사실이 중하여 장기복역하였고, ②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선의 정이 없으며, ③ 보안관찰 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처분한 점,

④ 위장 귀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재범한 전력이 있고, ⑤ 복역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회 불식하였으며, ⑥ 가석방기간 중으로 출소후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기간을 갱신함이 상당하다.

3)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기각 : 첫 처분결정 직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① 범정이 중하여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② 비록 수감 생활 중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회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였고, ③ 출소한 후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출생지가 북한이어서 친척들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수입에 의존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반 행장으로 미루어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원시신고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2) 처분 이후 3~4개월마다 한번씩 경찰이 전화로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그것이 정기신고로 되는 것 같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처분결정 이전에 경찰에게 특별히 연락이 온 적은 없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처음 출소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일자리 등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처분 결정 후 불쾌했다. 특히 원 사건도 조작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는데... 창살없는 감옥이나 똑같다.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똑같은 이유로도 누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재범의 위험성이라고도 하고. 또한 기간갱신 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취소소송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원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보안관찰처분도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7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9 13:30~15:30
현 신분 상태	처분취소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후 취소 소송 제기, 2000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음)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보안관찰에 대해서는 출소 전 교도소에서 동료들에 의해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출소하면 취소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출소전, 출소신고서 5부는 작성하지 않았다.
- 2) 출소 후, 출소신고를 거부하였고 검찰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3) 1999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났고, 원시신고와 정기신고 등은 자진해서 하지 않고 경찰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결정서에 따르면, “북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한 사실이 있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과거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검찰과 경찰의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점 등을 볼 때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받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취소소송시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남한에서 겉으로는 통일이니 민주화니 외치며 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재야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는 보안관찰의 지속적인 실시로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취소소송 과정 및 이유 : 보안관찰처분 결정 직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① 북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하였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② 출소 후 공범과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접촉 이상의 차원에서 회합하거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과거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검찰과 경찰의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고, .. 피고(법무부 지칭)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이유들 이외에, 원고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내용이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출소 이후 생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재야단체 활동을 하는 점 등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직후, 출소신고를 거부하자 담당경찰이 6회의 전화, 1회의 경고서, 2회의 면담 신청 등을 요구하여 2회 만났다. 경찰을 만나 신고를 거부할 것이며, 소송하겠다는 요지를 전했다.

2) 검찰이 출소신고거부와 관련하여 2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보안관찰법 자체와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출소신고, 즉 자신이 신념에 따라 한 행동으로 이유로 '나는 위험한 인물이니 경찰에서 관찰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와 자유인으로서 일상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요, 인간을 무시하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법의 취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인물을 관찰하겠다'는 것인데 국가로부터 위험인물이라고 낙인 찍힌 내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나를 관찰해달라'고 신고하라는 노예시스템으로 특권층을 위한 안전망이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과 관행이 사라지려면 첫째는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비상식적인 것이 함께 사라지는 것과 둘째 비상식적인 제도의 희생자인 피보안관찰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행동을 해야 한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피보안관찰자들은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클 것이고 또 소송을 근거로 갱신처분이 내려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원 사건이 아닌 현재의 활동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므로, 당사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의외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8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2.10 16:00~18: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2000년 1회 갱신, 현재 2회 기간갱신을 위한 조사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보안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은 출소 전, 담당교도관이 말해 주었고 대상자신고서는 교도관이 작성해 놓은 것에 도장만 찍었다.
- 2) 출소 다음 날, 자진해서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 경찰서로 직접 가서 이미 작성된 양식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출소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았다.
- 3) 보안관찰처분 청구, 결정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갖고 있지는 않다. 갱신청구서는 받지 못한 것 같고 2000년에 1회 갱신고지서가 왔을 때는 내가 외국에 있어서 받지를 못했고, 2회 갱신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 4)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난 후, 원시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알았고 직접 경찰서로 가서 원시신고를 했다.
- 5) 정기신고는 경찰이 전화로 동태파악해서 직접 작성하거나, 경찰이 집으로 방문해서 양식서를 작성한다.
- 6) 출소 5개월 후, 시골로 이사했을 때는 내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그곳 경찰서 경찰이 미리 알고 내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주거지 변동신고' 하러 오라고 했고, 경찰서로 가서 변동신고를 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처분청구서에 따르면 "...①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아 부모집에 기거하여 생활하고 있고, 이혼한 후 아직 재혼하지 않고 있으며, ②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사회 적응이 부진한 채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③ 자신의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고 나아가 북한체제에 대하여 순수성과 주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회라며 동경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등 불순세력과의 접촉 가능성 및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

는 점을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삼았다.

2) 갱신 이유 : 경찰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내가 받지를 못해서 모르겠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1) 출소 직후에는 담당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내가 직접 파출소로 가서 출소신고를 했고 그 후에는 담당경찰로부터 별 다른 연락은 없었다.

2) 출소 5개월 후, 농장을 하려고 시골로 내려갔다. 나는 아무런 연락도 안 했는데 시골에 도착하자 그 곳 경찰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는 “왜 옮겼으면서도 연락 안 했느냐? 빨리 경찰서로 와서 변동신고하라”고 했다. 그 후 자주 농장으로 찾아와서는 귀찮게 이것 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

3) 2002년 11월경 다시 이사했는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주거지 이동신고를 하니 담당경찰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업무가 줄었으니 반가워하며 “내가 후임경찰에게 이야기 잘 해주마”라고 이야기했다. 며칠 후에 후임경찰이 전화해서는 “제가 후임입니다. 조만간에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고, 그후로 아직은 경찰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농장으로 이사했을 때, 그 담당경찰은 무척 간간했다. 그 당시 외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기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 사람에게 길 안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손님이 오기로 한 바로 전 날, 그 이웃이 “내일 함께 못 다니겠다. 경찰이 여러 번 전화해서는 당신과 만나고 다니느냐며, 어제도 함께 장에 갔다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마도 당신을 감시하나보다. 그래서 나보고 당신을 만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협박했다”며 거절했다. 겨우 간청해서 길안내 도움을 받았고, 외국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없는 산 속을 그들과 함께 가는데 사복 경찰들이 5~6명 계속 뒤를 쫓아다녔다. 이 때가 내가 경찰을 직접적으로 만난 처음이었고 그 다음 날 ‘어차피 내가 여기 있는 것 다들 아니까, 또 낯선 시골에서 살려면 경찰과 부딪혀서 좋을 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경찰서로 가서 변동신고를 했다. 그 후에는 경찰이 정기신고서를 들고 2회 정도 집으로 찾아왔다.

2) 담당경찰이 “우리 친구하자”며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뭐 하나, 오가피 좀 먹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정말 귀찮았지만 ‘어쩌겠나. 내가 약자이고 그가 강자인데’라는 생각에 오는 대로 받아주고 차 대접도 하고 닭도 잡아주고 했다. 그 후에 나도 경찰서로 3회 정도 갔고, 경찰도 자주 찾아왔고 심심하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농담하고

그래서 정말 신경이 쓰였다.

3) 1999.8 외국에 갔다가 2001.10. 귀국했는데 시골집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서 기거했다. 이 후가 여태까지의 보안관찰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그 때 바뀐 ○○○경찰서 담당경찰이(귀국했다는 신고도 경찰서에 하지 않았는데 알고 찾아왔다. 아마 유학 중 자료수집 차 2001.6에 잠시 한국에 왔었고 그 때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그것이 전달되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에도 담당경찰이 일시귀국한 것을 알고는 15일 동안 3~4회 전화해서는 “왜 귀국신고를 안 했냐? 뭐했냐? 어디 갔었냐?” 등등을 기분 나쁜 투로 물었다.) 집으로 찾아와서는 “ 나는 보안관찰담당만 20년 동안이나 한 베테랑이다. 그러니 알아서 잘 하고 잘 지내보자”며 겁을 주었다. 그는 1주일에 1~2회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등을 물었는데 그 고압적인 자세와 마치 나를 자기 죄인 다루듯 하는 태도에 기분이 몹시 상했다. 직접 집으로도 방문해서 지금까지 2회 만났다. 그 때도 일상생활을 묻는데 몹시 불쾌했다.

4) 한 번은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알고는 전화해서 “어제는 뭐 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갔냐?”고 따져 물었다. 말투를 들으니 ‘내가 너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아서 화가 났다.

5) 담당경찰이 사업을 하시는 형님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서는 “요즘 동생 뭐하냐, 별 일은 없느냐” 등을 물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내가 책 출간 이후 강연회 등으로 바쁘기도 했고 내게 물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형님께 하는 것 같다. 형님은 그들이 경찰이니까 “어서 오시라”며 차도 대접하고 묻는 말에 공손히 대답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몹시 상하셨다고 한다.

6) 시골에 있을 때는 친구가 반핵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는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았다. 괜히 내가 가면 경찰이 거기까지 사찰을 하고 복잡해 질까봐 그랬다. 지난 번 미국고위관리가 한국에 왔을 때 전화를 걸어서는 “반미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정기적으로 전화할 때도 늘 “집회나 모임 등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7) 책 발간 이후 강연회 나갔더니 경찰이 전화해서는 “강연회에서 무슨 이야기하냐”, “당신 감옥 갔다온 이야기도 하느냐.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내 강연의 내용에까지 일일이 간섭했다. 너무 기분이 나빴다.

8) 집회 시 경찰이 전화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거나 정기적으로 전화할 때도 한 번 씩 규정을 상기시킨다.

9) 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하는 담당경찰을 대면하는 일이 얼마나 불쾌하고 피곤한 일인지 모른다. 친하고 싶지도 않은데 와서는 “친하게 지내자. 몸에 좋은 오가피술 좀 얻어먹자”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른다. 내가 보기 싫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럴 수도 없고... 경찰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내 경우에는 ○○경찰서 경찰이 정말 지독했는데 그의 고압적인 자세와 사람을 감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의 태도 등이 아직도 생각나 진저리가 난다.

5. 보안관찰법이 본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담당경찰이 일상생활 전 부분에서 아주 못살게 군다. 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간섭한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늘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거기서 오는 피해의식은 엄청나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이 언제, 어디서 내게 가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할 수조차 없다. 출소 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 아무 것도 할 줄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다른 피보안관찰자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있다”며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그 분은 20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고 계시는 분이였다. 상상해보라. 20년 동안 감시당하고 전화받고 3달에 1번씩 경찰서로 와서 보기싫은 경찰들 마주하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내보내기만 했지 완전 감옥살이다.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은 법이다. 또 실제로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도 다시 처벌하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일시적 처벌이 아닌 무제한 갇신이 가능한 지속적 처벌이다.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다. 정말 인권후진국이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장기투옥과 고문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잃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 있는 분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는 더욱 고립되어가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 외국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시급히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49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1.5 14:00~16:3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후 현재 2회째 기간 갱신을 위한 조사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 교도소 담당자가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고, 출소 직전 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2) 1998년 출소 5일 후에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출소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 3) 1998년 보안관찰처분결정 후에는 경찰이 결정서를 가져다 주면서, 정기신고서를 주었고 1회 작성 후 신고필증을 받았다.
- 4) 정기신고서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고, 경찰이 알아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보안관찰처분의 이유 : 검사의 청구서를 보니 “원사건과 출소 후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처 역시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청구자는 수감 당시 자신의 자서전을 발간한 경력이 있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출소자 간담회에 참석하는 점등을 보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충분히 있음”이 이유다.
- 2) 갱신 이유 : 2000년 갱신결정서는 받았으나 자세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자에 대한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만 나와 있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신고 하면서 내가 담당경찰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한 이후로는 담당경찰이 거의 전화하지 않았다.
- 2) 보안처분결정이 난 후 담당경찰이 집에 와서 결정서를 내게 전해주면서 정기신고서를 여러 장 주고 갔다. 1~2번은 내가 작성해 놓으니 가져갔고 그 후로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3개월에 1번씩 전화만 하여 안부만 묻는다.

3) 1999년에 담당경찰이 내게 1회 전화했고, 그 때 “정기신고서를 상부에 올릴 때 모임이나 집회 참가여부에 때 번 공란으로 올리기가 좀 뭐하다. 그러니까 근래에 그런 곳에 갔으면 한 곳만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4) 최근에는 2002.9월 경 관할경찰서가 아닌 파출소에서 순경이 내 핸드폰에 전화하여 “파출소 담당 경사인데, 피보안관찰자의 동태파악을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항의하자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5) 검찰로부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고 대면한 적도 없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1) 내가 워낙 다른 일들을 많이 겪어서 침해 받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지 일상을 침해하지 않기로 담당경찰이 약속했는데 관할서도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불쑥 연락이 오거나, 담당경찰이 주변을 탐문하고 다니거나, 내가 다니는 학교측에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경찰을 통해 들어가는 것 등이 불쾌하다.

2) 2000년 경에 관할경찰서가 아닌 사무실이 있는 ○○경찰서에서 경찰이 사무실 주변 탐문을 한 적이 있다. 나와 아내가 잘 가는 근처 식당아주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저기 사무실에는 아저씨도 자주 나오시나? 몇 명 정도가 있느냐?” 물었고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4) 내가 다니는 ○○○대에 내가 피보안관찰자라는 것을 담당경찰이 말한 것 같다. 2001년 학생 몇 명과 학생처장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내가 이름을 말하자 학생처장이 나를 아는 척을 했다. 아마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이 법은 비록 국가보안법과 모법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안관찰대상자의 입장에서 그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회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그러한 종류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은 명백하다. 안보를 위한 국가의 권능을 벗어난 것이고 사상범에 대해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까지도 다 신경쓰면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모두에 좋지 않다. 그러나 사면, 복권되고 나서도 갱신이 되고, 계속 정기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여권신청을 했는데도 여권이 나오지 않으면 따져 볼 것이다.

보안관찰 실태조사 보고서

사 례	50	인터뷰 일시 및 시간	2002.10.22 17:30~19:00
현 신분 상태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 2000년 1회 갱신, 현재 2회째 기간갱신을 위한 조사중)		

1. 보안관찰처분 요건 및 처분 절차

- 1) 출소 전부터 보안관찰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교도소에서 신고서 5부를 작성했다.
- 2) 출소 직후에 관할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출소신고를 했다.
- 3) 1998년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3개월마다 1회 정기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경찰과 집 밖에서 약속하고 만나 전해준다.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집으로 전화해 나의 일정을 묻는다. 여행 시에는 내가 전화로 담당경찰에게 신고하거나 여행 전에 신고서를 건네 줄 기회가 있으면 직접 보고 신고한다.

2.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의 근거

- 1) 처분의 근거 : 경찰이 고지서를 보여주고는 다시 가져갔다.
- 2) 갱신의 근거 : 갱신고지서도 걸표지만 있고 자세한 이유서는 없다. “가족의 친북성향으로 관찰의 필요가 있음. 원사건으로 볼 때 관찰의 필요가 있음” 정도로 기억한다.

3. 보안관찰처분의 내용

- 1) 출소 후 보안처분결정 전까지는 담당경찰이 1달에 2~3번 전화했고 만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이 전화하면 약속을 정해 외부에서 만났다.
- 2) 2000년, 갱신관련 조사시 면담에서 검사가 형식적인 질문만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검찰주사에게 시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며 대했다.

4. 사법경찰관리 행위 유형 및 인권침해 사례

- 1) 99년10월, 2000년10월 사업상 외국을 방문해야 했다. 당시 가석방 기간이었으므로 여권신청절차가 무척 까다로워 시일이 걸렸고 이로인해 여행일정을 늦춰야 했으므로 사업상 차질이 빚어졌다.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정부가 인정할만한 지위를 가진 보증인 2명과 본인의 각서 및 출국사유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와 안기부에 제출, 이것이 통과되어 법무부장관의 출국허가서가 나왔다. 내 여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기 힘들었다. 또 나로 인해 사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미안했다.

2) 보안관찰처분결정 후에는 담당경찰과 협조를 조건으로 서로의 편의를 봐 주기로 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이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불쑥 집으로 찾아와 불쾌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특히 담당경찰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불쑥 방문하였을 때 경찰을 처음 본 아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아이에게 아빠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할 수도 없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3) 북한(통일) 관련 대규모 행사시에는 담당경찰이 전화로 내 일정을 확인한다.

4) 담당경찰과 만났을 때, 그가 대화 중 다른 피보안관찰자들에 대해 험담을 하며 나의 생각을 떠보려고 한다. 서로 협조하며 인간적으로 잘 지냈어도 갱신 조사시에는 나의 동태를 검찰이나 상부에 보고할 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5) 담당경찰로 인해 다른 피보안관찰자들과의 만남을 금지 당한 적은 없으나, 사람을 만날 때 나와서 만남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 괴롭다.

6) 지금은 내가 회사의 대표로 있으므로 경찰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면 직원들은 '이 사람은 경찰의 감시를 받을 일을 저지른 사람이구나'하고 생각하고 의아해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상사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이들에게 나의 과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도 경찰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면 궁금해 하므로 답답하고 힘들었다.

5.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았을 때는, "2년 안에 빨리 끝내버려야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갱신이 되었다. 스스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려하여 바쁜데 경찰이 간섭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 가족에게 돌아와 성실히 살게 위해 전향서를 썼는데 정부당국이 이를 감안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한 번 순응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굴종적인 태도와 양심고백을 강요한다. 이로 인해 사람이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고 과거에 묶여 살게 된다. 전향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적으로 하자는 규칙을 정해 놓았는데, 담당형사가 바뀌면 이를 모르므로 규칙이 일방적으로 깨져, 예기치 못한 집으로의 방문 등으로 아이들이 겁을 먹기도 하는 등 전향서와 맞바꾸면서까지 얻으려했던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이 파괴될 때가 있고 이럴 때 가장 괴롭다. 이제는 내 정성을 쏟을 가족과 일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보안관찰법은 폐지되던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4장 맺음말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4장 맺음말

제1절 정책제언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안관찰제도는 보안관찰법 그 자체 뿐 아니라, 보안관찰 처분 절차로부터 시작하여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 그리고 보안관찰처분 내용 등 전 과정에 걸쳐 매우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형태로 보안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보안관찰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 연구에 참가한 조사자들은 ‘과연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한 인간의 삶에 이토록 철저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럴 때 이 법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안관찰법은 소위 ‘사상범’을 공식적 통제장치에 가둬두기 위한 법률이다. 그것도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고, 면제결정이나 처분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 처분이 가능한,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한번 보안관찰해당범죄를 행한 이를 평생토록 감시와 통제에 놓여 있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 설령 ‘면제결정’을 받고자 하여도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이라는 요건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보안관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꺼내어 보이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를 통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사상범이나 확산범의 경우, 형벌로써 개선이나 사회방위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사 제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며 “사상범 내지 확산범의 경우 형벌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며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입장 대립의 문제인 것이다³⁷⁾.”

37). 이승호, 위 논문

“확신법은 개선되어야 할 자도 아니고, 응보되어야 할 자도 아니다. 단지 생각이 다른 자이며 그와는 반박하고 논쟁할 수 밖에 없다”(라드브루흐)

사상법에 대한 보안관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불필요하다. 따라서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 현실과 괴리된 법은 존립근거가 없다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할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³⁸⁾.”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언급했듯이 보안관찰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국가보안법 전과자에 대한 사회 재적응을 위한 것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감시하고 생각을 바꾸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럴 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기서 논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보안관찰법이 전제로 하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의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보안관찰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사상통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전제인 북한 및 냉전에 대한 시각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실과 괴리된 법은 비록 그 법이 아직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적으로는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 법과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나라안팎으로부터 대표적인 인권침해 법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고, 그 법이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안관찰법은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8 [합헌 · 각하], 1997. 11. 27.

3. 실효성이 없는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듯 보안관찰법은 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볼 때 과연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가지 더 언급할 점은 이 법이 이미 실효성에 있어서도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 법은 보안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의 일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보안관찰자는 물론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심지어는 면제자 그리고 취소소송 승소자 모두의 의식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본 조사에서 얻은 결론이다. 즉, 대부분의 피조사자들은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보안관찰로 인해 심각한 의식장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복귀'가 촉진되고 있다고 할 만한 점은, 이 법에 순종적이든 불복종을 하든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법의 존재이유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 법의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례 11> 현재 면제상태이지만 언제 또 처분을 받을까 불안하다. 면제결정을 받은 이후 혹여 면제 취소의 빌미가 될까봐, 피처분자 신분일 때 나가곤 했던 노동단체 사무실에도 가지 못한다. 오히려 활동적인 측면에서 더욱 제약이다. 만약 면제가 취소되어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사례 19> 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감옥살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보안관찰 처분으로 인해 너무나 큰 강박관념이 생겨 일주일에 두 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물론 현재는 면제결정을 받았지만, 언제고 다시 결정이 날지도 모르니까 정신적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 법이 존재하는 한, 내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례 28> 경찰들은 편하게 안부만 묻는 전화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전화받은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계속 감시를 하면 그것에 계속 신경이 쓰여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다.

<사례 15> 항상 쇠사슬과 노끈이 발목에 걸려있는 것 같다. 잊고 살다가도 경찰이 2~3개월마다 전화하거나 하면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사례 35>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조차 편하지 않았다. 출소 후에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을 찾아 인사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인데, 이것도 못하게 하니 스스로 인간다운 도리를 못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괴로웠다.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기분으로 생활했다.

<사례 13>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선 어머니가 나로 인해 늘 불안해하신다는 점이 아들로써 너무나 걸린다. 또 부인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결혼한 것이 아니어서 보안관찰과 관련해서 여행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것, 여권 발급이 되지 않는 것, 경찰들이 전화하는 것 등에 대해 민감하다. 또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들이 나나 자신을 쳐다보면 괜히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고 신경이 쓰여 신경성 질병을 앓기도 한다. 가끔 속상하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텐데...”라는 말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착잡해진다.

<사례 50> 사람을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게 한다.

사회안전법이 법원의 재판 없이 사상범을 10년 이상씩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었다면, 보안관찰법은 그를 그의 주거지 속에 감금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날의 보안감호 처분이나 지금의 보안관찰처분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절차와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콘크리트 벽 속의 양심수를 사회 속의 감옥으로 이송한 것에 불과하다³⁹⁾.

결국 그 목적이나 실효성에서나 전혀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 합리적이지 못한 절차와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 현실과 괴리된 법은 어떠한 존립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39). 차병직, “또하나 불리한 감옥”, 한겨레 21, 1998. 11. 19.

위에서 우리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 함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하여, 폐지에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했던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의 사유를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하며, 이에 따라 내려지는 보안관찰처분은 피처분자의 신체 및 거주, 이전 자유 및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권자는 ‘재범의 위험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그 위험성의 객관성, 명확성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 어떤 결과가 수반되며, 왜 그같은 결과가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⁴⁰⁾.”

위 지적은 표현의 자유권 ‘행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할 때, 그 위험성은 ‘행위’의 위험성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사상의 위험성으로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행위의 위험성이라는 점 역시 그것이 빚을 결과가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준다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험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및 법무부에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미 여러 사례들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전향하지 않은 자는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향한 이에 대해서는 전향했으나 범죄를 반성하

40).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가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3/45에 의거하여 한국방문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 E/CN.4/1996/39/Add.1

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보안관찰이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활동능력이 왕성하여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이에게는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이에게는 고령이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오래도록 지니고 있다’는 요건을 달아, 그것이 바로 재범의 위험성의 표지라며 갱신결정이 내려진다. 그야말로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우선하는 현실이고, 반국가적 심정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심정형법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보안관찰법인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처분 시 이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2. 보안관찰 처분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결정과 집행이 모두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체계에서는 보안관찰제도가 객관성, 공정성을 지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시 근거를 엄격히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 개정과 아울러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법에서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법무부장관의 결정, 사법경찰관리 집행이라는 과정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본 조사결과, 대부분의 경우 검사의 청구 원인이 사실 그대로 법무부장관의 결정근거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보안관찰 처분 결정의 사유마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피보안관찰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불복권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그 처분결정과정에서 대상자 본인이나 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보안관찰법은 대상자에게는 처분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법 제13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그 어느 누구도 위 권리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설령 당사자가 위 권리 사실을 알았다 해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 점에서 보안관찰법상의 결정 불복권이라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다름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관찰 처분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준수법적으로 강화하여 판단의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헌법재판소⁴¹⁾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준수법적 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헌재가 준수법적 기관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위원회의 과반수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는 사실은 보안관찰처분에 법적 지식을 가진 이들이 관계한다는 것 외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본질적 성격인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또한 보안관찰처분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와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으로 방어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당사자에게 이익된 사실을 면전에서 직접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3. 보안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진 피보안관찰자에게 부과된 신고의 의무(법 제18조)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앞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고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들은 피처분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어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방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등 이중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보안관찰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구체적인 행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것

41). 헌재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준수법기관으로 결정한 근거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12조제1항, 제3항)” 위 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준수법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므로 처벌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신고위반죄, 조치위반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 내용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처벌 범위 또한 불명확 할 수 밖에 없으며, 금지의 내용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부과된 신고의무(법 제6조) 및 불이행시 형사처벌 가능 조항(법 제27조)은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위법행위로 이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벌을 치룬 이에 대해 그 한 번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법무부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나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결국은 기어이 한 인간의 사상을 교정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현재처럼 무제한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보안관찰법 제5조 2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5.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 등의 지도권한은 19조 1항의 규정으로써 충분하므로, 재범방지조치 규정(법 제 19조 2항)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지도’ 역시 그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지도 조항은 그 운용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해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보안관찰대상자의 사생활을 극심히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피보안관찰자들의 일상은 더욱 불안정하게 되어 사법경찰의 지도와 조치는 보안관찰제도가 표명하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사회정착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한편 지도의 방법 가운데 당사자 외의 가족, 관계인 등과 협의하게 한 점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법경찰의 대상자에 대한 동태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으로, 대상자 및 그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를 불

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저해한다.

6. 면제결정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보안관찰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면제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그런데 현행 법은 면제결정조차도 언제든지 다시 취소할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요건 가운데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안관찰제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한 인간으로서 양심과 사상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박탈함은 물론, 이들의 면제와 취소를 받기 위한 노력을 불안감과 패배감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면제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면제결정 요건 가운데 “법령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할 것이며, 면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7. 소송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삭제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가처분 금지(법 24조 후단)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즉시 삭제하여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가처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소기간을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한 점(법 제23조)에 대해서도 일반 행정소송과 같이 90일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 1심 관할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한 것 역시 행정법원의 1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조사 연구는 보안관찰제도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가장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보안관찰법이 그 입법목적, 처분요건, 처분절차, 처분내용, 갱신 등의 모든 점에 있어서 합목적성, 실효성, 타당성이 심히 의심되는 법이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양심,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 거주 이전,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보안관찰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보안관찰처분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⁴²⁾이 지속될 경우, 보안관찰법에 대한 입체적이고도 근본적인 연구는 먼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그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보안관찰법에 근거한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총괄적인 현황 분석을 하기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조사자들의 처음 의도는 본 조사연구를 통해 보안관찰법이 대상자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깊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본질적 문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연구는 고도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연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니, 보안관찰법 감옥이 기다리더라’는 한 피조사자의 증언, ‘사람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 증언, 처분청구서를 볼 수 있겠냐는

42). 현재까지 피보안관찰자의 현황(인원)은 물론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인원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명예와 관련되고, 현재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과 일부 재야단체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할 경우, 보안관찰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2002 법사위 국감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2001년 7월경, 서울행정법원은 “현황과 예산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 상고중이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자에게 ‘이런 것도 저쪽(경찰 지칭)에서 알면 문제가 될텐데’ 라며 끝내 건네주지 않던 분,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매우 자세히 증언했으나 ‘절대 공개하지는 말아달라’던 분, ‘정말 만나고 싶은 감옥살이 동료가 있는데, 그 이도 피보안관찰자라서 피해가 갈까봐 전화번호만 주머니속에 넣어가지고 다닌다’던 증언,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가도 좋은 곳, 만나서는 안될 사람을 가르게 된다’던 증언들은 마치 온 나라가 감시와 통제속에 있던 지난 시절, 막걸리 보안법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시대가 많이 변하였고,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고들 한다. 어디서나 인권의 가치와 보편성이 이야기 된다. 그러나 이들 보안관찰대상자들에게 이 사회는, “다른” 생각은 없고 오로지 “틀린” 생각만 존재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일 뿐이고, 자신의 깊은 내면의 의식세계는 오직 국가권력의 감시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보안관찰대상자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마땅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 연구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보안관찰제도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던 처음의 계획을 여전히 “계획”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과제를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심리학, 정신학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와 도움을 주고 받으며 향후 풀어나갈 것을 다시 계획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안관찰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주제로 한 본 조사 연구가 보안관찰법을 시급히 폐지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의 방패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부 록

조사항목

보안관찰처분흐름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 신고관련 주요 서식

보안관찰법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항목

I.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

① 출소 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 등 신고유무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 출소 전 교도소에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 출소 전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신고하라”는 고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출소 뒤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소신고를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화, 방문) 또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소사실신고서」양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출소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출소신고를 했다면) 어떠한 사항을 신고하셨습니까? 방법은 전화통화, 신고서 제출 등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출소 뒤 주거지 등 변동사항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 경찰에 신고 뒤 신고필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② 사법경찰관리의 ‘관찰’내역

- 출소 후 담당경찰관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거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출소 후 담당경찰관에게 전화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첫 연락을 받은 시기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담당경찰관이 몇 차례나 전화나 방문을 했습니까?

- 담당 경찰관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관이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담당 경찰관은 어디 소속, 누구입니까? (00서, 00경찰)

③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된 사항 및 재판여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 체포된 적이 있으면 그 사유(체포영장 상 사유)는 무엇입니까?

- 언제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지 얼마(몇 시간 또는 몇 일) 후에 풀려났습니까?

- 기소는 되었습니까?

- 그로 인해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심, 2심, 3심)

- 재판 결과로 벌금 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기 전 담당경찰관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동태파악을 했습니까?
주요방식(전화, 직접 등)과 빈도수(한달에 몇번) 등을 적어주십시오.

- 담당경찰관은 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까?

- 본인은 사법경찰관 등의 공문발송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 본인 외의 가족에게 전화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담당경찰의 동태파악으로 인해 주변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본인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이 알게되어 받은 피해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집회, 모임 등 참가에 대해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 사법경찰관의 동태파악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II. 피보안관찰자

1. 보안관찰처분 과정

① 보안관찰처분 일시 및 과정

- 보안관찰처분을 처음 받는 일시는 언제입니까? 첫 처분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갱신결정을 받았습니까?
- 본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어떻게 고지받았습니까?
- 검찰로부터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현재 그 자료(청구서 등본)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이유는 무엇입니까?
- 검사로부터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출석에 응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보안관찰처분 청구 과정에서 검사의 청구이유서를 보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본인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

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②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등의 조사 여부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③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 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정통지문 내용 등 자세하게)

④ 처분에 대한 불복, 취소소송 유무 및 내역

-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처분취소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도중 사법경찰관이 전화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나 방문을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신고의무 불이행

㉡ 지도

㉢ 조치

- 재판 과정에서 이익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⑤ 면제된 경우

- 면제결정은 누구의 청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본인 또는 검사)

- 면제 신청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면제결정이 났다면 면제 사유와 면제결정 시점을 적어주십시오.

- 면제 이후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면제 이후에 경찰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까?

-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2. 보안관찰처분 집행내역

① 신고사항 이행유무

(원시신고, 정기신고, 변동사항 신고, 주거지 이전, 여행 신고)

이행여부 내 용	있다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없다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원시신고 사실 인지 여부		
원시신고 (결정고지 후 7일 이내) 및 방법		
정기신고 (3개월마다 한번) 및 방법		
변동사항 신고 및 방법		
주거지 이전 신고방법		
국내, 해외 여행 신고		
신고필증 교부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조치내역 및 조치 방법

(전화, 방문/주변인물 탐문/자료수집 등)

- 검사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치사항을 기재한 경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집회 참가금지 등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전화, 방문, 문서)
-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와의 만남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③ 해외여행에 대한 방해 여부

- 해외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여권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권 문제 외에 여행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④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 담당경찰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동태과약을 했습니까?

- 본인 이외의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동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처분 결정이후 경찰이 직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소송제기 실태

① 취소소송 여부 및 내용

-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중이거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심 (서울고법)	2심 (대법)
소송일자		
사유		
결과		
진행방법 (변호사 선임)		

② 취소소송 결과

- 취소소송을 한 결과,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취소소송 대법확정일은 언제입니까?
- 보안관찰처분 승소이후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③ 취소이후 사법경찰관리의 태도(연락유무, 동태파악 여부 등)

- 보안관찰처분 취소 이후에도 담당경찰관에게 전화, 방문 등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담당경찰관 연락없음, 연락 중)
- 보안관찰처분 취소 후 담당형사의 동태파악 방식(전화, 방문)과 빈도수(한달에 몇번)는 어느정도입니까?

4. 보안관찰처분 갱신

① 갱신결정 일자 및 사유

- 보안관찰처분 갱신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갱신결정이 되었다면) 그 사유와 첫 갱신결정일은 언제입니까?
- 첫 갱신 결정 이후 몇 차례의 갱신결정을 받았습니까?
- 각 갱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② 갱신결정시 갱신처분청구서 등본 송달 및 이익사실 진술권 고지 여부

- 보안관찰처분 갱신처분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 또한 갱신처분 청구과정에서 이익사실 진술권에 대해 고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Ⅲ. 기 타

- 출소 이후 첫 처분결정전까지의 어려움이나 피해사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처분 결정 후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 현재도 피보안관찰자라면 보안관찰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 됩니까?
- (피)보안관찰처분(대상자)자로서 겪은 가장 큰 인권침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 본인이 불복종하고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그 외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부록 · 2

보안관찰처분 흐름도

부록 · 3

보안관찰법

전문개정 89. 6.16 법률제4132호

일부개정 91.11.22 법률제439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균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보안관찰처분)

-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8조 (청구의 방법)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조사)

- ① 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

- ①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 ①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준범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인 있을 것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위원회의 운영·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 ①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결정)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의결서등)

- ① 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 ②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제16조 (결정의 취소등)

-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사항)

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

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것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제20조 (보호)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22조 (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3조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기간의 계산)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 ②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또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계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계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계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⑤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계기된 자 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 (벌칙)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⑥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 ⑦ 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적용에 있어

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개정 91.11.22 >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제87조(제86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및 제88조(제86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제17조제4항을 제외한다)·제21조제1항·제25조 및 제28조(제17조제4항·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예비·음모·미수범을 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제1조의 미수범, 예비·음모 및 제5조제2항의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제4항중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탈출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제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제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91.11.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중 사실을 왜곡하여 전과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와 제5항을 제외한다), 제6조(제3항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3항(동항중 제2항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전문개정 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

일부개정 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 (형기계산) 법 제3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제4조 (보안관찰)

- ①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동태보고등)

- ① 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소 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 조·형명·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 ②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한다.

제7조 (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소통보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 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에정일
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 조·형명·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도주한 때
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한 때에는 거소제공 결정연월일 및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제출 요구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주거지의 읍·면·동·리·통·반의 장
 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⑤ 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의결)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직원)

- ①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 (회의록)

- ①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연령·직업·주거·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지휘·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사법경찰관리·교도소등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민등록표등본, 주거지리·통·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피

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및 그 기간갱신일, 집행중지사유, 집행중지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집행중지결정일, 집행중지결정취소사유, 취소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피보안관찰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5항의 취소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지휘 또는 보안관찰처분의 잔기간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관계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 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 가. 이전예정지
 - 나. 이전예정일
 - 다. 이전사유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국외여행의 경우
 - 가. 여행대상국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내여행의 경우

가. 여행목적지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의 방법)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거소제공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중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거소제공이 필요한 자

(이하 "거소제공대상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에 정 일 2월전까지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소제공대상자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소 제공대상자의 성명 기타 거소제공대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거소제공의 필요사유, 행형성 적 또는 최근의 동태를 기재한 신청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 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 등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결정내용 및 결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⑨ 교도소등의 장은 거소제공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은 거소제공 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거소제공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지정 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인계하고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거소변경의 절차)

① 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경 찰서장에게 거소변경 신청서와 거소변경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의견 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의견서와 거 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 변경 청구서와 의견서 및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6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거소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임시거소의 제공)

① 검사는 긴급을 요하여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결정 또는 거소변경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협의하여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거소의 제공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① 법 제20조제4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기거와 침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 (응급구호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1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한다.
- ③ (형기합산)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중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다),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와 제5항을 제외한다), 제6조(제3항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3항(동항중 제2항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제328호 전문개정 1989. 09.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⑦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출소통보)

- ①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소사실신고서등)

- ①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 ①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 ②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의 협조)

①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서류의 작성)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약어·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인명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②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제48조·제50

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안인지)

-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출석요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 (참고인의 진술)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상의 조사) 가료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 (보관조서등)

① 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중에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제출자·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품명·수량·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보관물의 보관등)

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용의자의 성명·보관물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직업·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조사서등)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행장·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사안송치)

-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송치서류)

-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보관물 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용의자 환경조사서·용의자의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 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류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송치연월일·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송치후의 조사등)

-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당해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보안관찰처분 청구등)

① 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33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월수입·가정환경·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문서의 양식)

- ① 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조사등)

- ①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위원회에의 회부등)

- ① 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제38조 (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 ② 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 ①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가족·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여행목적지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한 때
3. 소재불명이 된 때
4. 사망한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3조 (지도의 방법)

-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 (거소제공의 청구등)

- ① 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 (거소변경 신청등)

① 검사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 (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 (장부와 비치서류)

①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6. 보관물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예규철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결과통보서류(경찰관서에 한한다)

13. 잡서류철

-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통첩·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 통보서류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장부 및 서류의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50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 (갱신)

-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2조 (장부·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 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
- 2. 거소제공·변경결정서 준영구
- 3. 사안기록 준영구
- 4.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
13.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
↳ 피 보안 관 찰 자 「 신고서접수부 5년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16.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결과통보서철 1년
20. 잡서류철 1년

제53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사안기록등의 보관·보존)

-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보존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록·4 주요 신고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앞 면)

										경 유		
										년	월	일(관서장) (인)
사 진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출생지											
	원 적											
본 적												
직업 및 직위 (입 소 전)					종 교							
재 산 관 계	월수입	동 산	부동산	자 택 여 부		가족의 재산상황						
				자가·셋집·하숙·기타		동산	부동산					
병 역 관 계	역 중	군 별	군 번	병 과	제 대 구 분		복 무 기 간					
		육·해·공										
가 족 관 계	관계	성 명	연령	학력	직 업	관계	성 명	연령	학력	직 업		
교 우 관 계	성 명	연령	학력	직업 및 직장	주 소		관 계					
학 력					경 력							
기 간	학교명	적 요			기 간	근무처	직 위·직 책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앞 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출 생 지												
원 적												
본 적												
직업 및 직위						직장소재지				전 화		
재산 관계	월수입	동 산	부동산	자 택 여 부				가족의 재산상황				
				자가·셋집·하숙·기타				동산 부동산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교우 관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주 소				관 계			
학 력					경 력							
기 간	학 교 명		적 요		기 간	근 무 처		직 위·직업				
가입한 단 체	단 체 명			직 위	가입일시	탈퇴일시	탈퇴사유					

(뒷면)

국 외 여 행 관 계	대 상 국	여 행 기 간	여 행 목 적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일 및 신고경찰서		년 월 일	경찰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거 소 제 공 (변 경)	결 정 일	시 설 명	소재지 및 전화
신 고 접 수 자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지·파출소장 (인)
본인은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55호 서식]

피보안관찰자 정기신고서

피보안 관찰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일				
신 고 사 항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 관찰처분 대상자의 인 적사항과 그 일시·장 소 및 내용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관할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 및 그 이행여부			
신고 접수 자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지·파출소 (인)	
보안관찰법 제18조제 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56호 서식]

피보안관찰자변동사항신고서

피보안 관찰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일				
변동사항				
신 고 접 수 자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지·파출소 (인)	
보안관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57호 서식]

주거지이전 피보안관찰자 (국외여행 국내여행) 신고서

(앞 면)

피 보 안 관 찰 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보안관찰대상자 신고일 및 신고경찰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일												
	피보안관찰자 신고일												
신 고 사 항	주 거 지 이 전	이전예정지											
		이전예정일					이전예정지 관할경찰서						
		이전사유											
		동거가족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국 외 여 행	대상국											
		경유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동행자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관계	성명	연령	직업			
여권의 종류							여권번호						

(뒷 면)

신고 사항	국내 여행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								
		여행중 숙박할 장소								
		동행자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관계	성명	연령	직업
		여행중 만날 사람	관계	성명	연령	직업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신고 접수자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지·파출소 (인)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찰서장 귀하										